

速記文化

創刊號

1967

大韓速記協會

◆ 卷頭言	會長	李源萬	(7)
◆ 挥毫	國會議長	李孝祥	
◆ 挥毫	國務總理	丁一權	

● 祝辭 大韓速記協會의 創立과 「速記文化」의 創刊을 祝賀함	文教部長官	文鴻柱	(8)
● 祝辭 文化發展의 新轉機을 確信	速記課長	李弼鎔	(9)

速記協會設立의 意義와使命	理事長	金宗煥	(10)
---------------	-----	-----	--------

—法廷速記特輯—

◎ 法廷速記의 展望	法院行政處長	全禹榮	(12)
◎ 法廷速記의 實際問題	서울地方法刑事課	盧元鎬	(14)
◎ 法廷速記의 必要性		楊澈在	(16)

論 說

◦ 官費養成機關이 지닌 問題點	韓奉永	(20)
◦ 速記士法制定의 必要性	金永善	(22)

提 言

□ 速記界에 대한 나의 提言	金震熙	(24)
□ 能率的이고 體系的인 協會運營을 為하여	崔鎮洙	(19)
□ 速記法의 새로운 方案을 摸索하여	崔亨奎	(28)

企業體에 있어서의 速記士의 貢獻	金鉉基	(29)
-------------------	-----	--------

◦ 希望座談會		(32)
---------	--	--------

◆ 속기와 한글타자기 공 병 우 (37)

速記素材論 姜 駿 遠 (38)

三 扑

◎ 速記講習會를 마치고 李 東 根 (44)

◎ 速記講習會設問의 分析 李 康 賢 (46)

◎ APU 總會點描 Y 生 (48)

◎ 外國速記界現況 (日本篇) 梁 源 龍 (50)

◎ 日本速記士給料對比表 (51)

速記의本質과養成問題에關한小考 李 東 根 (52)

◆ 養成所探訪記 東邦速記學院篇 梁 源 龍 (31)

法式紹介

姜駿遠式 (56 上段)	東邦式 (62)
高麗式 (56 下段)	世宗式 (66 上段)
	韓國式 (66 下段)

□ 速記學綱目 K 研 完 生 (70)

□ 陶然明의 田園詩 李 明 奎 (71)

◆ 發言速度變遷狀態 (15)

◆ 現職速記士分布 (49)

◆ 資料=速記關係冊子一覽 (74)

大韓速記協會定款 (75)

任員名單 (76)

會務日誌 (77)

贊助人士一覽(廣告) (26)

編輯後記 (78)

祝創刊

韓國銀行	總裁 金世鍊	韓國商業銀行	總裁 李廷煥	外換銀行	銀行長 洪升軫	國民銀行	銀行長 鄭遇昌	銀行長 林錫春
中小企業銀行	銀行長 徐丙續	朝興銀行	銀行長 文鍾健	第一銀行	銀行長 李寶衡	韓一銀行	銀行長 全信鎔	서울銀行

速記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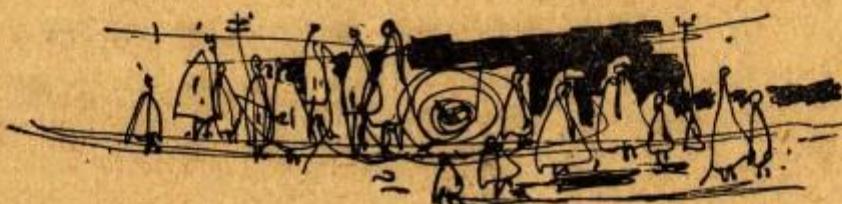
李源万



우리말 速記도 가시덤불을 헤쳐 나오면서 58년의
年輪을 거듭한 셈이다. 1909年「하와이」로 亡命
한 朴如日氏가 儒胞週間誌「신한민보」에 一案을
發表, 燭矢를 놓았고 解放前에 7案, 後에 7案이 發表되어 現在의 實用法式이 8, 그
人員이 200餘, 本會員 資格을 얻은數 130名에 이르니 우리 文化的 조그마한 隊伍
로서 자못 큰 約持를 느끼지 않을수 없으니 速記는 그 民族의 文字이며 이것은 그
民族과 같이 永劫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는 우리나라 初會 國會記錄을 가냘픈 손으로나마 正確히 全言을 남겨
놓고 地方議會를 記錄——後生國家일망정 速記文化度로는 첫째를 손꼽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社會一般의 速記에 關한 모든 認識 不足을 깨우치고
速記學者를 돋고 實務者를 길러 어바란 듯이 質과 量의 面에서 次元을 높여야
할것을 느끼면서 民主社會에는 言論이 盛하여야 하고 言論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는
先進諸國과 같이 事務가 있는 곳에는 速記가 있도록 하여 速記分野에서 “後
進”이란 소리를 제일으로 안 하도록 必死의 誠과 热을 기우릴 것을 다짐하면서
微薄한 第1誌를 發刊함에 江湖諸賢의 아낌 없는 叱正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本協會會長·國會議員)





創刊

大韓速記協會의 創立과 “速記文化”의 創刊을 祝賀함

文教部長官 文 鴻 柱

祖國의 近代化 課業을 完遂하기 위하여 “일하는 해”的 旗幟를 높이 든 오늘의 이時點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무엇보다도 모든 分野의 指導者들이 그 透徹한理念을 國民에게 正確히 傳達함으로써 國民의 自發的인 協力を 얻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즉 指導者는 國民의 念願을 올바르게 理解하여야 하며 한편 自己의 信念과 計劃을 友情 있는 說得을 通하여 認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指導者의 뜻과 國民의 念願이 서로 圓滿하게 傳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歪曲되거나 解釋됨으로써 當初의 意圖를 서로 誤解하는 境遇가 생기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記憶力이 한번 들어만 가지고는 이를 永久히 또한 正確히 머리 속에 그대로 지닐 수 없는 흄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正確한 그리고 迅速한 記錄技術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大韓速記協會가 새로운 意慾과 새로운 陣容으로 發足하고 이어서 보다 正確하고 迅速한 記錄文化의 發展을 위하여 “速記文化”的 創刊을 이룩하게 될에 즈음하여 晚時之感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보다 次元이 높은 陣容과 內容임을 볼때에 實로 美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특히 모든 事物은 첫 印象이 좋아야 하거늘 오늘 “速記文化”創刊號의 內容을 一瞥 전대 그 알차고 重厚한 品位가 넘쳐흐르는 것으로 보이기에 斯界의 門外漢인 本人으로서도 자못 호듯한 感을 禁치 못하는 바입니다.

바라진대 우리나라 速記界의 各法式이 비록 그 記錄方式은 다를 망정 序頭에 사 말씀드린 “忠實한 뜻의 傳達者”로서의 使命을 더욱 銘心하고 合心團結하여 所期의 目的을 훌륭하게 達成하기를 바라며 우리 社會의 記錄文化에 크나큰 貢獻과 보람찬奉仕가 있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會員 여러분의 健勝과 協會 및 “速記文化”的 發展을 美賀합니다.

祝辭



文化發展의
新轉機를 確信

國會事務處 速記課長

李弼鎔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라고 한다. 個體보다 集團이 生을 營爲함에 있어 보다 便利하고 強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宿命의 人類의 變化無常한 離合集散中에서도 나는 大韓速記協會創立을 契機로 우리나라 全體 速記人이 하나의 旗幟아래 굳게 團合하게 됨을 크게 기뻐하며 祝賀해 마지 않는다. 그 理由는 許多하겠지만 晩年に 滿朔童이의 出產을 맞은 家族들의 氣分 같은 것이 앞서기 때문이다.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速記協會는 한때 짧은 歷史나마 前歷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채 피어보지도 못한 한송이의 꽃이 덧 없이 죽다고나 할 뻔지 너무도 빨리 解散되고 이내 곧 再建 했어야 할 協會가 於焉 五個星霜을 지내도록 冬眠狀態에 있었으니 말이다.

民政이 移讓되고 國會를 舞台로 옹기종기 速記人們이 다시 모여들어 陽地바른 봄볕을 즐겨 온지도 벌써 3년이 지난 舊歷, 우리는 또 한해를 無爲로 보낼세라 서둘러서 이제 다시 再建을 하였으니 이 기쁨 어찌 速記人們 뿐이며 이에 關與한 人士들이라고만 할 것인가! 은 계례가 모두 함께 반겨주어야 할 廢事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 速記協會創立은 비록 速記文化의 開發뿐 아니라 우리 社會文化 全般에 寄與할貢獻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祝賀의 義義를 加重시키고자 한다.

速記文化! 이는 言語文化에 그 뿌리를 두었고 速記文化發展의 즐기 위에는 반드시 全體 社會文化開發에 「일」과 「꽃」을 피우기에 보자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社會學者가 現代를 3S時代라고 指摘한 事實을 引用할 必要도 없이 實로 機械文明이 極度로 發展한 現代는 「스피드의 時代」이다. 言語도 記錄도 大衆傳播의 「매스콤」도 모두가 迅速化해 가고 있다.

이웃나라 日本만 해도 各級 議會・裁判所・言論機關・一般企業體等 社會各分野에서 速記는 너무도 繁要하게 널리 貢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아직도 이에 미치지 못함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期必코 이에 따르고 이보다 앞서야 할 큰宿題가 바로 現時點에 處한 우리 速記人们的 거룩한 使命이며 義務가 아니겠는가? 무릇 千里길도 한걸음부터 始作된다고 한다면 우리 協會 發足은 크나큰 課題를 안겨주는 速記人们的 마음의 가다드름이며 힘의 誇示이며 使命의 完遂를 為한 침찬 進軍의 첫걸음이라고 볼때에 나는 이 協會의誕生을 貞實로 祝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祝賀「무드」에만 사로잡히고 現實을 忘却하기에는 너무도 할 일이 많고 잘 길이 멀다는 것을 뉘락서 否認할 것인가 하나도 둘도「創立精神」으로 되돌아가고 둘이켜 생각하여 永世無窮한 發展의 遺產을 後世에 물려주기 為하여 밀거름이 될 거룩한 犀牲精神이 있어 주기를 慎望하면서 祝賀의 글로 가를한다.

速記協會 設立의 意義와 使命



理事長 金 宗 煥

人間社會에 있어서 協同精神의 崇高함을 再論 할것까지도 없이 우리 나라速記人들이 總網羅되어 協會를 構成하기에 이른 것은 所謂 non printed media를 printed media化하는 우리 速記界뿐 아니라 文化界全體를 為하여 鞠躬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間 速記界는 4·19와 미불이 兩院制實施 및 地方議會構成등으로 空前의 需要增加를 보아 速記분을 이루어 바야흐로 速記人们的 社會的活動이 눈부시게 展開되려 할 때 議會事務處의 解體로 前身協會가 瓦解되고 速記人们的 存在마저 稀微

할만큼 沈滯狀態에 있었던 것은 同人們에게 實로 多幸히 民政移譯을 前後하여 速記에 대한 認識이 增加되고 需要가 減增함에 따라 新進養成이 時急하게 됨으로서 速記人们的 團合된 힘이 切實히 要求되어 이에 協會結成을 보게 된것은 그것이 비록 速記人们的 自發的인 出發이 못되고 速記界를 아끼고 理解하는 몇몇 外部人士의 產婆役에 依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過去似而非觀하던 同人們까지 參與한 文字 그대로 速記界總意에 依해서 五個月餘에 걸쳐 真摯하게 論議된 끝에 이루어진 것인만큼 우리 同人們에게는 앞날의 飛躍을 為한 大전의 마련이라고 보고 記錄文化의 誠實한 役軍으로서의 自負를 禁치못하는 바이다. 이제 速記人們은 우리에게 負荷된 責任을 痛感하여 創立總會時 宣言한바와 같이 式閥意識을 排除하고 全體速記人们的 權益擁護는勿論, 나아가서는 假飾과 虛構에 가득찬 現實에서 社會淨化的 旗手로서의 持持를 지니고 活躍할 時期에 이르렀다고 본다.

더욱 우리는 過去의 狹量을 脫皮하여 速記를 理解하고 우리를 積極指導鞭撻할 社會名士를 協會의 領導者로 표시해 둔것은 앞날의 成功을 한층 굳게 하는 것으로 믿어 疑心치 않는다.

다만 協會를 構成한 同人们的 使命이 結코 적지 않음을 想起할때 말만의 式閥意識排除나 協助가 아니라 참다운 協同精神에서 小兒病的인 利害關係를 超越하는 同時に 安易한 現實逃避에서 벗어나 各者 獻身的인 努力이 있으므로서 만이 前身協會에 대한 同人们的 不信을 拂拭하고 새로이 發足한 協會에 대한 疑懼을 一掃하여 所期한바 目的을 成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協會로서 할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新進養成.

둘째 速記法式의 改良.

셋째 速記士의 待遇改善.

넷째 需要의 開拓.

다섯째 同人們의 福祉向上.

등이 干先 協會로서 當面한 課題라 하겠으며 新進養成를 為하여는 急先務가 養成機關의 設置라고 보나, 보다 앞서 速記에 대한 啓蒙과 宣傳으로서 便利一般에게 認識시켜 普及에 힘쓰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速記法式이 現在 協會에 加入된 것 만도 八個法式이타 하지만 나날이 變하는 發言速度와 機械化하는 mass communication에 對備하여 速記術을 改良하여야 함은勿論, 時代潮流에 聰應하여 速記機械化에 대한 研究가 兼해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速記士의 待遇改善問題에 있어서는 우선 自體의 資質向上을 期하는 동시에 精神的으로나 肉體面으로 極甚한 勞動인 速記에 대한 當局의 認識을 充分히 갖도록 하고 先進諸國과 比較하여 應分의 待遇를 받도록 協會가 中心이 되어 強力히 建議하고 推進하여야 할것이며 이를 為하여 速記士가 社會的으로 正當한 位置를 確保할 수 있도록 速記士 또는 速記에 대한 法制化를 圖謀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現在 速記의 需要是 國會를 中心으로 몇個 分野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는 法廷速記을 비롯하여 政府各部處·國營企業體·新聞社·通信社등은勿論, 著述速記라든지 各級學校에서의 記錄등에 常任速記士制度를 探索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速記의 一般化로서 速記開業時代를 맞이하도록 需要開拓에 힘써야 할 것이다.

速記人們에 대한 福祉向上 문제는 現在 各法

式의 創案者인 指導層을 비롯하여 年老한 同人們이 不遇한 環境에서 허역이고 있는 實情인바 이 문제는 速記라는 特殊分野에서 齋來되는 職業病 등에 대한 補償策과 아울러 同人 全體에 대한 福祉問題가 協會로서 當面한 時急한 課題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協會가 正常의 發展을 거듭하여 그 運營이 軌道에 오르고, 위에 例示한 문제들이 하나씩 解決되어 나갈 때 同人們이 그들自身의 將來에 도움을 받게 되고 現職速記士들이 安心하고 그 職에 專念할 수 있는 기들이 마련되리라고 確信하며 그때야 말로 本協會의 設立意義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大韓石炭公社 勵務)

(13面에서繼續)

셋째로 이 글의 主題와는 약간 거리가 멀지만은 마지막 한 方案으로 考慮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錄音機의 使用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 亦是 特殊한 境遇 外에 一律的으로는 할수도 없으니 또 할 必要도 그리 느껴지지 아니한다.

5

이렇게 되자고 보면 裁判에 있어서의 各種調書作成上 生生한 法廷의 모습을 그대로 記錄할 必要是 切感하는 바이지만은 “그러나 各方案을 羅列해 놓고 그 長短點을 檢討해 볼때에 現在로서는 이렇다할 妙案이 없으므로 于先은 現參與書記들에게 可能한 限 速記 技術을 習得도록 勵獎하고 漸次의으로 速記士 制度를 採擇하여 그 人員數를 늘리 나가는 方向을 搜索하는 수 밖에 없겠다.

本人 으로서는 여러모로 그 實現이 可能하고 보다 合理의인 案을 銳意研究 檢討中임을 마지막으로付言 해둔다.

特 輯

[法廷速記篇] ①



法廷速記의 展望

法院行政處長 全 禹 榮

1

法廷速記을 展望하려면 우선 法廷이란 무엇인가 부터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大抵 法廷이라고 称하는 경우에 그릇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通俗의로 말하는 法廷으로서 法院廳舍내에 設置되어 있는 法廷이라고 命名되는 室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法律上으로 말하는 法廷으로서 法官이 民·刑事等 裁判事件을 審理 裁判하는 場所를 말한다. (列事事件外에는 法廷에서 다야한다는 明文 없음) 이 場所는 普通은 法院內에 設置되어 있는 法廷이란 곳이나(法院組織法 第52條 I) 法院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경우는 그 외의 場所인 경우도 있다(同上 條文 II)

法廷에는 그 處理되는 事件의 內容에 따라 民事法廷(民事訴訟法 第124條)·刑事法廷(刑事訴訟法第275條)·家事審判廷(家事審判法 第25條)等으로 區分 할 수도 있고, 또 公開與否에 따라 非公開法廷 公開法廷으로(法院組織法 第53條) 혹은 裁判官의 數에 따라서 合議法廷·單獨法廷으로 區分하는 수도 있다.

民事法廷에는 民事本案事件을 다루는 것(民訴法 第124條)과 行政訴訟의 本案事件을 다루는 것(行訴法 第14條·民訴法124條)이 있으며 家事審判廷과 不同이 다같이 꼭 法廷에서 行하도록 規定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刑事法廷에는 刑事公判事件을 審理裁判하는 法廷(刑訴法 第275條)과 卽決審判廷(即決審判法 第7條)이 있어서 公開된 法廷에서 行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이와 같이 여러 種類의 法廷이 있지만은 그各法廷에 共通된 點은 法院書記나 書記官(以下 書記라 略稱함)이 參與하여 調書를 作成한다는 點이다.

따라서 調書 作成의 한 準備段階로서 法廷에서 速記을 할 必要가 없겠는가? 한번 研究해



볼 만한 問題이다.

이 問題를 研究하려면, 首先 現行制度面을 一旦 考고 外國의 例는 어떠한가를 알아 본 후에 將來 우리가 指向해야 할 方向은 무엇인가를 論하여야 할 것 같다.

2

法院書記의 職務는 여러 가지 있으나 그中에서도 審判 參與는 그의 生된 事務이며(法組法 第10條 V) 또 審判에 參與하여 作成하는 公判調書나 家事審判調書 또는 辩論調書等은 各種 裁判에 있어서 重大한 役割을 擁有 公知의 事實인 바 現行法上의 書記의 調書에 關한 規定等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民事訴訟에 있어서는 準備節次(民訴法 第254條)·證人訊問(同法 第275條)·鑑定(同法 第336條)·檢證(同法 第356條)·和解(同法 第356條)等에는 期日마다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民訴法 第141條)

刑事訴訟에 있어서는 被告人·被疑者·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翻譯人等의 訊問調書(刑訴法 第48條)와 檢證·押收·搜索等調書(刑訴法 第49條)와 公判調書(刑訴法 第51條)等이 있다.

家事審判에 있어서는 調停調書(家事審判規則 第11條)·審判調書(家審法 第9條·人訴法 第13條·民訴法 第141條)等이 있다.

以上 列舉한 外에도 行政訴訟法·競賣法等에 調書를 作成하여야 하는 境遇가 있다.

그러면 法廷等에서 以上의 各種 調書를 參與

書記가 作成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현況을 한번 살펴 보자. 參與書記들은 大概의 境遇 "法廷錄"이라고 하는 白紙로 된 用紙를 繕한 空冊을 가지고 法廷에 立會하며 裁判長의 訊問이나 被告 또는 被告人の 對答, 其他 訴訟關係人의 陳述과 審理 進行 過程等을前述한 法廷錄에 記入하게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文字는 한글 또는 漢字임은 共通되나, 많은 訴訟關係人이 말하는 것들을 일일이 하나도 빠지 않고 記錄할 수 없는 結果 重要한 骨子만을 간추려 記入하거나 또는 自己 나름의 獨特한 略字나 符號를 쓰거나 하는 것이 常例이다. 이렇게 해서 裁判廷의 訴訟進行 狀況을 記錄해 가지고 나와서 이에 根據하여 法律條文의 要求하는 各種 調書를 作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神이 아닌 故로 한 開廷에 數十件式 事件을 가지고 들어 가면 長時間에 걸쳐 많은 事件의 많은 形形 色色의 訴訟關係人들의 陳述이나 訴訟進行 過程을 錄取記錄해야 하는 關係上 어리에 혼동을 이르킬 可能性도 있고, 또 미처 다 記錄을 못하는 境遇도 想定할 수 있으며 잘못 記錄했거나 時日이 經過된 後에 法廷錄을 보면은 境遇에 따라서는 自己가 했으면 서도 무엇인지 잘 모르는 暧昧한 것도 있을 법한 일이다. 重要하고 複雜하고 큰 事件일 수록 그더하리라. 여기에 速記의 必要性을 배배로 느끼게 되며, 따라서 法에도 規定들을 두고 있는 바 예를 들면 民事訴訟法에 있어서 法院은 辨論의 全部나 一部를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하여 錄取할 수 있게 하고 이를 調書의 一部로 하는 規定(民訴法 第148條)을 둔것을 볼 수 있다. (刑事는 刑訴法 第56條의 2 參照) 이것은 書記의 法廷錄 作成의 하나의 补完策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角度를 달리하여 速記의 必要性을 法으로서 規定했다고도 볼 수 있다.

3

事件이 날로 幅廣 해가고, 또 그 內容도 複雜 微妙해 짐에 따라 法廷錄의 速記化 또는 機械化가 要求되는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이 要請을 어떤 方向으로 그 解決策을 摸索할 것인가에 關하여 生覺하는데 있어서 參考로 外國의 例를 한번 살펴 보는 것도決코 無意味하지는 않을 것 같다. 故로 于先 聽邦 日本國 裁判所의 例를 들

어보자. 그 나라는 裁判所 書記官 外에 速記官이라는 職種이 있어 1966年度의 定員은 935名으로 되어 있으며, 그 升進 經路는 速記官→速記官→主任速記官→次席速記官→首席速記官으로 되어 있고, 升任 方法은 각 其職級에 該當하는 升任試驗에 依하여 裁判에 關한 速記 및 이에 關한 事務를 그 職務로 한다. 그런데 그들은 일찌기 1950年に 速記制度를導入하여 同51年に 裁判所 書記官研修所에서 그 雜成을 管掌하게 되었으나翌 52年부터 本格的으로 雜成에着手하였다. 그 對象은 裁判所職員中 高卒者(또는 同等以上者)로서 入所試驗에 合格된 者에 對하여 2年間研修를 行하는바 速記理論·法廷速記·速記技術外에 法律科目과 一般敎養科目까지 가르치고 있다. 1952年以來 速記官의 確保를 為해 每年 100名式 入所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速記의 機械化도 研究하여 相當한 成果를 보고 있다고 한다. 參考할 만한 事實이다.

4

그러나 우리와 現在 處해 있는 諸般 與件은前述과 같은 外國의 制度를 當場導入하여 實踐에 옮기기란 너무나도 여러 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이 境遇의 問題點은 後述 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現在 指向할 수 있는 方向을 몇 가지 提示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생각 나는 것은 現在의 參與書記 390餘名에 對하여 速記技術을 習得시키는 方案이다. 이 方案은 되기만 한다면 理想의 い기는 하다 그러나 職務에 每日 每日 시달리고 있는 職員들인지라 時間의 餘裕가 問題 되겠고, 또 教育施設이나 그 運營도 問題가 되겠으므로各自의 自由意思에 맡기고 되도록 勵獎하는 道理밖에 없겠다.

둘째로 參與書記와는 別途로 速記士를 採用하여 參與書記와 어울어 法廷에 參與케 하는 方法이다. 日本이 그런 方法을 擇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現在의 財政形便으로 봄에서는 거의 實現可能性이 희박한 案이다. 적어도 現 書記數의 半인 300餘名은 採用해야 되겠는데 그런豫算도 없고 또 人的資源도 問題일 것이며, 그 收容亦是 生覺할 問題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런 制度만을 마련해 놓고 1年에 몇 名式 漸次의 으로 늘려 나아가는 問題는 한번쯤 研究해 볼必 要가 있을성 싶다. (11面 下段에 계속)

特輯

[法廷速記篇] ②

法廷速記의 實際 問題

獻元第



速記란 말하는 것을 그대로記錄하는 것이지만 그用途에 따라서는多少 달라지는境遇도 있다. 即議會에서 議員들의發言을 말하는 그대로錄取하여 歷史의 한페이지를記錄하는 것과 座談會席上에서 說性說來되는 것을記錄할 때와는 나의 經驗에 비추어 보아 아무래도 差異가 없다고斷言할 수 없다. 尤구나 外國放送(日本語)을直譯하여記錄할 때勿論文脈은通하지만語句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다.

본인은 5·16後 革命裁判所에서 書記라는本職을 맡아 그當時 社會의 耳目을 끌었던 커다란事件의 公判에 立會하여記錄한 일이 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調書의 樣式도 모르고 그저事實 그대로를錄取하는데만 沒頭한 나머지 裁判에 있어서 가장重要한要素인 證據決定의部分을 바드린 웃지못한 過誤를犯한 일이 있었다.

其後 서울地方法院으로 轉補되어 立會書記로서 調書를作成하게 되었는데 速記術을 利用하여 被告人·檢事·辯護人·相互間의 攻防戰을事實 그대로記錄하여 나중에法官이 判斷할 때에 記憶을 새롭게 하므로서 옮바른 判決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점을 自負하고多少나마自慰하는 바이다.勿論法院의 調書는 어디까지나訴訟法에 依하여 格式에 맞추어作成해야 하므로 가령 裁判長이 먼저 묻고 辯護士가 나중에迅問했다고 하더라도 記錄에는 檢事·辯護人·裁判長의順序로 물은 것같이記載하여야 하며 또한證據調查에 있어서도 被告人이 어찌한部分

을簡單히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平凡한 말로否認했다 하드라도條文에 맞추어 "成立은 認定하나 内容은 否認하고 本件 證據로 함에 同意하지 않는다"는식으로形式化된文句를 使用하게 되므로 처음 資務를 할때에 記錄은 完全히 하고도 調書를作成하는데 障路가 적지 않았다.

前日 大韓速記協會發起人總會 때에도 速記士의 社會進出問題에 있어서 法院의 登用問題가論難되었거나와 法廷速記에對하여 所見을 몇마다 적어보고자 한다.

前에 陸軍本部 法務監室에서 軍法會議에 立會하고 있었던 高麗式의 尹義漢氏와 서울式(姜駿遠式)의 李俊培氏 그리고 本人 등 세사람이 처음革故에서 法院으로 왔다. 그當時 法院行政處長署理이던 廉某氏(現在 辯護士開業中)는大學을 나왔더라도 考試에 合格되지 않았으면 書記補(五級)로任命하는道理밖에 없다면서 前職은全然考慮하지 않고 "書記補로發 승을 받든가 아니면 그만두라"하면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거나와 法院에서는 秘書와 技能職을 除外하고 書記(4級)職은 特採 선競爭試驗이전 莫論하고 外部에서採用하는境遇가全然 없고 書記補를 競爭試驗에 依해서採用하고 書記補甲(5級甲)中에서昇進試驗을보게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 速記士中에서 書記補試驗을 본다면 主로 法律을專攻한他競爭者들을 물리치고 合格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하겠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協會를再建強化한 이매를 利用하여 協會의幹부들과 또한 速記士를 아껴주고 速記를理解하는先輩들이法院行政處當局과接觸하여 速記의必要性을再強調하고認識케하는 동시에 또한 民事訴訟法에 速記錄을 調書의一部로 할 수 있다는條項에 依하여複雜하고 까다로운裁判때만 速記士를外部에서 초빙하여記錄하고 있는 實例의幅을 넓혀于先 다른 技能

職과 마찬가지로 速記士를 採用토록 하고 各級法院에 固定配置하여 記錄을 둡게 하다가 各人의 能力에 따라서 昇進하는 길을 講究하여 주도록 하는것이 철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餘談이거니와 本人등이 처음法院에 왔을때를 回顧하면 會議가 있거나 까다로운 事件이 있을 때마다 呼出을 當하여도 생소한 곳이라 拒絕하기가 困難하고, 履歷書에 “速記”라는 두 글자를 써놓은 것이 원망스러웠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勿論 反文하는데 時開이 얼마나 所要되며 正常執務以外에 한두時間 速記를 하면 그 負擔이 어찌하다는 것을 理解해 주어 多幸한 일이기는 하였다. 그 當時만 하여도 訴訟關係人(檢事·被告人·辯護人)들이 記錄의 正確을 為하여 公判廷에서의 錄音을 許可하여 출것을 종종 裁判部에申請하는 境遇는 있었으나 지금은 錄音을 하자는 例는 枢히 드물고 웬만하면 速記를 하자고 要請하는 것으로 보아서 法曹界 人士들이 速記를 理解하고 그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다.

그리고 裁判 때 速記를 하려는 意圖가 첫째는 어디까지나 記錄의 正確을 期하자는게 있지만 그 裏面에는 利害가 相反되는 關係者들이 或時나 偽證을 하지 않을까 慮慮되어 거짓 말을 못하도록 못을 박자는 點에도 있다. 그 實例로 昨年 여름 서울高等法院 特別部에서 速記를 하여 달라는 連絡을 받고서 急히 가본즉 某前職 高官이 政府를 相對로 하는 行政訴訟이 있는데 審計院 職員 數名이 證人으로 出頭하였고 原告側에서도 前職 某高級官吏 2·3名을 情同하고傾聽하고 있었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 偽證의 罰를 받겠다고 宣誓한 마당이었는지라 線과 點으로 記錄을 하는 곳에서 證人們은 그 雾靄氣에 취말려 거짓 말을 할때야 할수 없었을것이다. 그때의 空氣가 하도 심상치 않아 本人도 그翌日로 錄取한 그 대로를 反文하여 가지고 갔을때 마침原告側代理人이 그자리에 있다가 證人們이 事實대로 證言해 주었으니 簡單히 要點만 적어 주어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全身의 피가 껴꾸로 흐르는 것 같은 感이었다. 이제까지 本人의 經驗談을 적었거니와法院에서의 速記의 必要性을 말한다면 公判調書는 陳述의 要點을 記載한다고 되어 있으나 刑事事件에 있어서 被告人이 警察과 檢察에서의 陳述을 변복하고 事實全體를 否認

하고 나오는때 速記術이 아니고 速筆로 記錄하여 證據로 내세운다는 것은 아무래도 無理라고 본다 또한 民事裁判에 있어서도 複雜하고 利害가 相反되는 證人의 證言內容을 速記術으로 完全히 記錄하여 判決의 資料로 삼는것이 能率의이며 正確을 期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地法刑事課勤務)

發言速度變遷狀態

사람의 發言速度는 年年이 빨라지고 있다. 議政壇上에서의 國會議員의 發言速度를 年代別로 表示하면 아래와 같다.

一分間發言速度

年代別	最遲	最速
制憲	180	346
二代	180	381
三代	200	443
四代	188	468

最高速發言議員

制憲國會	尹致暎	金鳳祚
二代國會	李鍾榮	朴定根
三代國會	金善太	朴永鎮
四代國會	金善太	韓熙錫

最低速發言議員

制憲國會	徐勇錫	徐容吉
二代國會	李鍾郁	梁又正
三代國會	鄭重燮	朴世經
四代國會	朴忠模	



—特輯—

〔法廷速記篇〕③

法廷速記의 必要性



楊澈在

——當事者訊問은 그陳述을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陳述者の請求가 있을 때에는 그陳述에 關한 部分을 읽어주고
 增減變更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本文에서)



筆者는 法廷速記에 대한 廣範闊한 문제를 가지고 論하기 보다는 于先 筆者が 法廷速記를 말아 經驗한 所感과 法廷速記가 왜 必要한가에 主力點을 두고 記述하고자 한다.

本來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速記는 議會速記로 通할 만큼 그普及이 單純化했고 치우쳐 왔다. 그러나 經濟社會의 發達과 더불어 우리는 速記가 議會(地方議會도 包含)에서만이 아니라 經濟界·金融界 即 利害關係가 염친 總會나 理事會 또는 言論界·學術團體에서의 討論 等 구태어 外國의 秘書速記까지 들추지 않더라도 速記의 用度는 多樣一路에 있고, 社會의 複雜性에 反比例하여 人間의 單位時間의 能力이 限定되는 바쁜 世上이 되어 갈수록 速記를 더욱 必要로 한다는 事實을 認識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公認速記士法이라도 制定된다면 速記錄은 그法의 公信力이나 證明力에서 社會에 寄與하는 바 至大할 것이다.

이러한 諸情況을 떠나서 筆者が 本稿에서 法廷速記의 必要性에 關해 云謂하고자 함은 實로 議會速記가 歷史(議會史)의 記錄이며 나아가서는 國事의 事實記錄임에 比하여 法廷速記라는 公判의 正確한 事實記錄인 反面에 個人의 權利擁護의 證據記錄으로서 그比重이 莫重하기 때

문인 것이다.

— ◇ —

그리면 公判速記 即 法廷速記란 무엇인가? 法廷速記는 그字句대로 法廷에서 當事者·鑑定人 또는 證人訊問時에 그陳述을 速記術에 의하여 記錄함을 뜻한다.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現行民事訴訟法 第343條「當事者訊問은 그陳述을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同法 第303條 口述의 原則「證人은 書類에 의하여 陳述하지 못 한다…」에 의하여 民事訴訟에서 當事者와 證人の 陳述을, 現行 刑事訴訟法 第51條 第8項·第48條 第1項에 公判調書의 記載要件으로서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譯譯人의 陳述」을 軍法會議法 第85條 第8項, 第82條 第2項 第1號 公判調書의 記載要件으로서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譯譯人의 陳述」을 速記法에 依해 公判調書作成함을 原則적으로 法廷速記斗 할 수 있고 以外 公判廷外에서의 檢證時 被告人 證人 等의 陳述을 記錄함도 이에 包含된다. 勿論 辯論은 現行法上(民訴法143條, 刑訴法51條11項 軍法會議法 第85條 第11項) 公判調書에 그要旨만 記載하게 되었음으로 速記가 不必要하다고 하겠으나 辯論部分을 除外한 其他의 調書作成에 있어서는 被告人·證人 等의 陳述中 그「要旨」만 記載하라는 條文이 있으므로(事實上「……陳述의 要旨記載」란 憲法精神에도 違背되는 것이 아님지 疑問視됨) 이는 速記術을 習得하지 못한 法院書記로서는 記錄不可能이며 따라서 當然히 速記士에 의해 正確迅速히 記錄되어야 한다는 結論이 나오는 것이다. 또 이것은 被告人·證人 等의 陳

述을 事實 記錄치 못하는 法院書記에게 그 陳述을 記錄하는 調書作成權限을 주어 (民訴法 第43條, 刑訴法 第51條 軍法會議法 第85條) 그 證據能力을 認定하니 (民訴法第147條, 刑訴法第56條 軍法會議法 第89條) 法上 큰 痕疵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外國인이 自己의 意思를 「제스츄어」를 써서 說明하는 것을 言語不通인 內國인이 間接으로 解釋을 하고 斷定을 내리는 경술함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矛盾된 事實에 대한 副作用이 表面化하지 않는 理由는 民訴法 第150條 「陳述은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書面” 또는 口述을 할 수 있다」 또는 刑訴法 第52條 但書 軍法會議法 第86條 但書 「陳述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에 關한 部分을 읽어 주고 增減變更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그 陳述을 記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法律上 缺陷을 補完하고 있지만 그實은 書記들의 法的 知能이 偽裝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면 지나친 偏見일까?」

事實 上述한 民訴法 第150條 規定대로 百步를 讓步해서 陳述의 全部를 書面으로 代한다고 치자, 그러나 前記한 刑訴法 第52條(但書), 軍法會議法 第86條 但書條項으로서 法院書記가 作成한 諸陳述調書가 完全하게 作成된 것이라고 認定하면 큰 誤算이다. 速記術에 依하지 않고 法院書記가 主觀的 記憶에 依하여 要略한 公判調書는 50%以下의 記錄 即 技巧 또는 要約調書에 不過한다 陳述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읽어 준 陳述者가 最小限 나머지 50%의 事實을 完全 記憶해서 再陳述補完함이란 人間의 記憶限界性으로 말미아마 不可能에 가까운 것이다.

換言하면 公判廷에서 一分間に 80字乃至 100字 程度의 筆記能力밖에 없는 人間의 筆記 ability을 가지고 每分間 250字乃至 350字 速度의 陳述을 어떻게 調書에 全部 記錄한단 말인가?

上述하다시피 法上諸陳述의 要旨記載條項이 없을 뿐만 아니라 現行法上으로도 公判調書에 諸陳述의 事實記載를 認定하면서도 그 事實記載者인 法院書記가 速記術의 不能으로 法院에서 實質上 技巧乃至 要略記載를 默認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인바 이는 嚴然한 違法事項이며 이로 말미아마 被告人에게 不利益을 가져오고 따라서 自由心證主義에 立脚한 判決에 있어 그 分別을 흐리는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는 것이다.

現行 民訴法 第148條 「辯論의 速記와 錄取」第

1項 「法院은 職權 또는 當事者の 申請에 의하여 辩論의 全部나 一部를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하게하거나 錄音裝置를 使用하여 錄取할 수 있다. 第2項 「前項의 速記錄과 錄音帶는 調書의 1部로 한다. 但……」

刑訴法 第56條의 2 (軍法會議法 第90條) 「公判調書의 錄取」 第1項 「被告人, 證人 또는 其他者의 訊問에 있어서 法院은 (軍法會議는) 必要한 때에는 그 問答의 全部 또는 1部를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使用하여 이를 錄取할 수 있다.」 第2項 「被告人, 辯護人 또는 檢事(檢察官)는 各者의 費用負擔으로 前項의 筆記 또는 錄取를 할 수 있다.」라고 規定함은 法院書記의 被告人 其他者의 公判 陳述調書作成 ability의 不備를 補完하는 樣 구민 法의 鋪裝인 것이나 그 運用에 있어서 所謂 社會의 耳目을 고는 事件에 한 適用하여 합으로써 法律 앞에平等의 原則이라는 憲法精神에 어긋나는 事例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 이 條項은 速記士가 法院에서 그 必要性을 認定받는 唯一한 規定으로서 法院書記가 스스로 陳述調書의 作成 ability缺如를 認定하는 規定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速記士에 대한 消極的 條項인 「…할 수 있다」라는 等은 하루 速히 修正되어야 하며前述한 法廷速記士를 積極적으로 參與시켜 實質의 證據ability이 있는 調書를 作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理論的 面에서 記述하였거니와 이제 筆者가 겪은 몇 가지를 紹介하고자 한다.

흔히 判事는 公判廷에서 參與한 書記에게 被告人이나 證人の 陳述이 重要하다고 認定되면 「지금 陳述 잘 記錄하시오.」라고 이를 때가 많다. 이는 刑訴法 第51條 第12項 「敎判長이 記錄를 命한 事項」에 의거 當然한 것처럼 認定되나 그實 法廷書記의 筆記가 速記術에 依하지 않기 때문에 判事が 重要陳述을 授급해 주는一面도 있는 것이다. 書記가 任意로 告人の 別害關係에 關聯된다고 判斷한 部分만 抓아서 記錄하는 事實은 書記의 敎量權이 너무나 넓음을 뜻하는 反面 뒤집어서 말하면 敎判長이 公判調書의 技巧作成에 刑訴法 第53條에 의하여 署名捺印까지 하고서도 그 公判調書를 事實上 書類整理의 價値밖에 認定치 않는 證左이기도 하

다. 그러나 裁判長과 書記가 署名捺印한 公判調書가 上訴審에 있어서 判決文과 함께 그 比重이 莫重합에는 그 앞뒤의 경우에 있어서 法的으로 어떤 内面的 矛盾을 지니고 있음이 分明하다.

여하든 現段階로서는 法院書記의 人間性과 道義心과 良心에 呼訴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을 지나서 단적으로 法院書記의 暗記에 依한 調書作成은 그들의 認識밖에서 (筆記로서 言語를 따라 가지 못하니 陳述內容의 순간 記憶은 끝 있게 됨으로써 陳述의 全部를 感得치 못 함) 公判調書作成上 被告人等의 陳述의 事實記載義務를遂行치 못하는 遷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로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全盛을 누린 理由가 여러가지겠지만 가장 큰原因是 그當時發達된 「로마」法 때문이라고도 한다. 法治國家인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法의 缺陷은 하루 速히是正하여前述한 바와 같이 完全한 事實記載를 할 수 있는 實質的 證據能力을 가진 速記에 의한 公判調書를 作成하는 條項을 插入으로써 書記의 拔萃調書作成權限을 防止함과 同時に 좀더 公明하고 正大한 判決에 一助가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 —

某殺人事件에 있어서死刑이 求刑된 重大한 公判이 있었다. 公判節次가 다 끝나고 宣告만이 남았을 때 裁判官은 筆者が 速記로 作成한 公判調書를 몇번을 몇일 誰讀하더니 無期로 宣告한例가 記憶난다. 「速記가 아니었던들…」餘韻을 남기는 그 裁判官의 印象이 지워지지 않는 지금까지 아직도 筆者が 記錄한 어느 部分이 그에게 自信을 굳혀 주었는지 疑問인 채다. 하여간 그當時 速記에 의한 公判調書가 裁判官의 自由心證에 의한 判決에 一助가 되었다는데 어떤 보람과 素持가 지금껏 잊혀지지 않는다.

事實이지 모든 事件이 法廷에서 順覆되는 수는 얼마든지 있다. 刑事訴訟은 勿論이지만 民事訴訟에 있어서도 双方間에 利害關係가 염친複雜한 事件은 참으로 그 分別이 어려울진대 正確한 速記에 의한 記錄이야말로公正하고 的確한 判決에 도움을 주며 名實共허 完全한 證據能力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裁判部가 事件의 經緯와 情狀 또는 過程들을 陳述한 法廷에서의 事實速記錄을 다시 再讀할 수 있다는 事實은 바로 慎重에 慎重을 거듭하여公正을 期함으로서

人權擁護로 通하는 길이 될 것이며 憲法 第8條에 의해 國家로서도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最大限으로 保障할 義務를 履行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즈음에 重要한 刑事事件이나 民事事件에 있어서는 被告人이나 當事者가 自費로 公判錄音을 하고 速記士에 依한 速記를 하는例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로 보아도 이제 法廷書記作成의 公判調書中 法廷陳述調書는 事實上에 있어서 그 證據能力를 잃고 要式行為로 뒤에는 取扱되지 않는다고 認定할 수 밖에 없다. (書面主義를 採擇치 않는 限)

그래도 或者는 방대한 速記人員에 대한 虞算이라든가 事件의 幅廣에 反해 事務處理의 非迅速性을 虞慮할지도 모르지만 速記士에 의한 公判記錄이 아쉬운 채 速決로서 判決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事情으로 因하여 判事が 法廷書記自由裁量으로 拔萃한 調書를 參考하여 心證을 굳히고 判決한 事件이 最惡의 경우 誤判이 있다고 假定하자! 이 事件이 上訴審에서 破棄遞送되거나 破棄自判을 할 時에는 救濟될 希望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上訴의 理由 없다고 認定하여 一審에서確定된다면 戰慄할 人權踐踏이며 司法府의 權威는 당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假定이 있지만 筆者は 實地로 그러한 事例를 가끔 經驗한 바있는 것이다. (勿論 表面化 하자는 않았지만) 人權을 最大로擁護하는 民主主義國家에서 그 위에 人權을 最大로 保障乃至는 分別해주는 機關임을 皮膚로 直接 느끼는 法院에서 이러한 結果가 表面化된다면 法院에 대한 信賴는 始捨하고 社會에 不安과 不正이 橫行할 것이다. 그러나 速記에 의한 事實記錄이公正한 判決에 一助가 된다면 언제까지나 虞算에 拘泥되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法廷書記에게 速記術을 習得시키면 最善의 方法이 아니냐 할는지 모른다. 勿論 法院書記가 速記術을 習得하면 艰難한 解決策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速記術의 習得에 있어서는 全力を 다하여 習得한다 하여도 1年乃至2年이 所要되며 法廷速記을 할 수 있는 事務에從事하자면 누구나 習得하여 技術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素質과 努力에 左右됨으로써 少數의 人員만이 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書記의 勤務時間外의 速記術習得이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54面 下段으로 계속)

提 言

◆◆◆◆◆

能率的이고 體系의인 —



—協會運營을 위하여

崔 鎮 淳

速記協會가 發足한지도 벌써 5個月째 접어들었다. 그동안 協會運營狀況을 보전해 몇가지 檢討를 要하는 面이 있어 여기 愚見을 提示하여 參考케 하려 한다.

現在 協會의 運營은 理事會에서 行하고 있다. 即 協會定款第二十條에 依하면 會長團은 本協會를 代表 統轄하게 되어 있고 同第十四條十五條에 依하여 理事들은 理事會를 構成하여 基本運營方針 및 重要事項을 議決하는 동시에 各部署를 組織하여 會務를 執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事實問題에 있어서는 理事全員이 會務執行에 參與하기는 어렵고 各部長들이 會務를 擔當하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에서 問題되는 것이 部長級들의 會務執行 能率이다. 現在 協會의 모든 任員은 自己 本來의 職業을 가진 사람들이 無報酬로 名譽職이나 다름없이 協會일을 담당 处理하고 있다는 것이다.勿論 協會의 財政面이 潤澤해지는 경우 專擔理 事制를 採擇할 수도 있겠으나 總會에서 選出되는理事들이 自己本來의 職業을 抛棄하고 會務를 專擔하지 않는限이 또한 解決이 어려운 點이 있다.

따라서 現在의 制度와 運營面에서 본때 會務擔當者들의 執務能力의 限界성이 문제가 된다. 即 각者の 專攻分野가 아닌 部門에 대한 業務遂行能力과 각者本然의 職業으로 因한 時間의 限制이다. 이는 理事의 選出方法에서 오는 必然의 結果라 하겠다.

協會의 運營은 前身協會와 같은 緩漫하고 無軌道한 方式으로 이끌어나간다면 現在의 制度와 陣容으로도 그런대로 꾸려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過去에 刊行된 “速記文化” 한가지만

보더라도 그當時의 運營이 얼마나 無計劃의이었다 하는 것을 端의으로 表示하는 것이라고 본다.

◇ 事務局의 新設 ◇

이에 筆者는 그러한 前辙을 밟지 않기 為하여 두가지 提議를 하고자 한다.

그하나는 事務局의 設置다,

各部署에 事務職員을 두고 그들을 統轄한 事務局長制를 採擇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事務職員은 各部長의 指示에 依하여 部長이 擔當한 業務의 事務의인 面을 執行하게 하고 事務局長은 그들을 統轄監督하는 동시에 協會運營의 實質的 責任者인 理事長을 輔弼케 한다면 能率있는 業務執行이 될 것이다.

勿論이에는 財政문제가 뒤따르는 것 있지만 協會의 運營을 긴眼目으로 볼 때 協會를 法人體로 하는 것뿐 아니라 體系의이며 秩序있는 運營을 為하여 이는 時急히 設置되어야 할것이며 當面한 臨時措置로서 事務員 1, 2名을 두어 解決해나 갈 수도 있을 것이다.

◇ 專門機構의 設置

專門機構란 長期間 또는 專門의인 研究를 必要로하는 問題들을 다루어 解決策을 提示하는 機構로서 理事會의 諸問役割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即 長期의인 運營方向을 비롯하여 速記學術의 改良, 速記의 機械化, 速記士法制定, 待遇改善方案, 會誌編纂方向, 基金運營方案등 繼續性이 있고 그分野에 特殊한 知識을 必要로하는 問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人的構成面에 制限이 不可避한 理事會ember 以外의 人士들을 起用參與케 하여 當時 研究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

專門機構의 構成은 (30面下段으로繼續)



官費養成機關이 지닌 問題點



韓 奉 永



昨年 11月 우리速記人들은 大同團結의 旗幟 아래 速記人으로서의 自覺과 文化一翼의 擔當者라는 稱持를 되 찾고 二百餘의 會員을 둉쳐 速記界의 宿願이 먼 名實相符한 全體速記法式의 發案者와 實用者를 網羅한 協會를 發足하게 되었음은 多幸한 일이었다.

그러나 모처럼의 舉界的인 모임인 우리 協會의 앞날에는 許多한 難題가 기로 놓여 있다.

흔히 速記人은 마음이 넓지 못하고 偏狹하다고 하는 말을 듣는데, 이는 어느 社會, 어떤 組織이나 있는 必要惡인지도 모르는 式閥意識과 排他主義에서 온 產物이 아님가 생각된다.

우리가 團合된 이 時點에서 速記界의 舊惡이 떨 수 있는 이런 問題를 가지고 是非하려는 것은 아니나 第1回定期總會를 目前에 둔 이때 우리가 前非를 反省하고 來日의 울바른 姿勢를 가다듬는다는 點에서 그 意義가 있다고 본다.

速記界的 痛疾인 式閥意識이 表面化하기는 특히 需要의 門이 좁은 速記界에서 後進들의 社會進出에 均等한 機會를 주지 않고 特定法式에게 優先權이나 有利한 條件을 賦與하는데서 비롯되

다고 본다.

이로 말미암아 後進登用의 길이 막히거나 不利한 立場에 있던 法式은 커다란 打擊을 받았고 그 結果는 速記學界나 實用界發展을 크게 阻害하여 沈滯相을 가져오게 한 重要原因이기도 하였다.

이 問題에서 우리가 注目할 點은 官費養成機關이 速記界에 미치는 影響이다.

官費養成機關의 問題는 協會創立의 契機를 마련하였던 去年 6月 10日 國會에서의 速記界重鎮들과 國會幹部들의 懇談會에서 이미 論議된 바 있다. (國會報第57號 108面~109面參照)

同席上에서 李東根氏는 「過去의 國會速記學校가 速記界의 發展도 가져왔지만 어느 한個의 法式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로 因해서 速記界의 沈滯性을 가져온 原因도 이에 있다」고 말했으며

金星漢氏는 「過去에 國會에서 速記士를 登用하는 過程에 있어서 私設學院의 卒業生은 優秀한 者도 試驗을 通資格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드시 從前의 國會速記學校는 어느 法式의 獨走만을 助長하여 速記界的 發展을 阻害하고 끝내는 國會速記士 定員 51名中 (1958年 12月現在) 官費養成法式出身이 45名으로서 거의 90%의 國會速記士를 1個法式에서 獨占하는 結果를 가져오게도 하였다.

速記士의 登龍門인 國會速記陣을 어느 法式이 獨占하였을 경우 私費運營이라는 어려운 條件下에서 自己犠牲을 무릅쓰고 後進을 養成하고 있는 餘他法式은 國會에 登用되지 못하는데서 自然히一般的으로 그 法式의 實用性與否의 問題까지 疑心을 갖게 하며 아무리 優秀한 法式이라도 社會的으로 認定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要因이된다.

이는 現在速記人口의 比率로 보아서 거의 國會速記士가 全速記人口의 過半數이고 院外의 速記人도 대부분 國會를 거쳐나왔다는 點에서 國會速記陣이 韓國速記界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後進養成이 세대로 되지 않는 現實情下에서 그 需要在를 充足하기 위해 官費養成機關이 時急히 設置되어야 한다고 主唱하지만 萬一 前轍를 밟을 그런 官費養成機關이 設置된다면 또 다시 速記界的 收拾할 수 없을 程度의 混亂에 빠지고 말것은 自明한 일이다.

筆者는 오히려 現下 韓國의 速記需要狀況으로
볼때는 아직도 就業을 못하고 있는 速記習得者
들의 就業을 위해서도 官費養成의 時期는 很早
한 줄 알고 있으나 萬一 官費養成所가 設置된다
면 그 運營方向의 設定에 있어 慎重한 配慮가
있어야 하겠고 速記協會의 存立乃至는 韓國速記
界의 將來에 커다란 影響을 미칠 問題이니 만큼
充分한 相互協議가 行해져야 할줄 믿는다.

官費養成校는 모든것이 好條件下에 있기 때문에
에 언제나 甚한 競爭(私設學院에서는 생각 조차
못하지만)밖에 素養이 豐富한 優秀한 젊은 이들이
報酬를 받고 있는 講師陣에서 規則적인 教育을
받기 때문에 그 法式에서 自然히 優秀速記
인이 나온다는 것은 當然한歸結이며 萬一 그런
好條件下에서 他法式을 賒得시켰을 경우에는 그
以上의 成果를 얻을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問題로 해서 速記界가 한때는 院內 院外
로 갈라선 쓰라린 經驗을 겪은때도 있었으나 4
· 19以後 多幸히 速記士採用에 있어 公開競爭
試驗이 實施되고 한때似而非待遇를 받던 速記
法式에서도 國會速記陣으로 登用됨에 따라 速記
界에 새로운 協調「무3」가 造成되었음은 기쁜일
인데 우리 速記界가 分裂의 汚點을 맞은 時期가
바로 問題의 官費養成機關이 全盛했던 때요 反面
모처럼의 團合이 이룩된 時期가 이 官費養成
機關이 門을 닫고 있는 때라는 點을 볼때에도
이것이 偶然만이 아닌 것을 速記界的 사람들은 알
고 있을 줄 안다.

그러면 萬一 官費養成機關이 設立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運營되는 것이 가장 理想의인가 하는
데 대해서 筆者の 見解가多少의 도움이 된다면
一考 있기를 바란다.

첫째 法式採擇問題이다.

勿論 日本과 같이 國會의 速記法이 發案되어
이를 教授한다면 別다른 異論이 없을 것이나 現
下 우리 實情으로는 어느 程度의 研究期間이 있어
야 할 것이니 이는 論外로 한다. 이러한 與件下
에서 어떤 特定法式을 單一採擇하는 것은 前者
의 慲를 또다시 犯하는 것이므로 一大警戒를 하
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數個法式을 採擇할 경우에 輸番教授나
同時 數個班 教授問題는豫算等과 關聯되는 것인
니 實情에 알맞도록 調整하면 되는 것이지만 採
擇法式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하는 것이 難題일

것이다.

그러나 日本速記協會에서도 많은 加入法式中
에서 「協會推薦速記方式」이라는 것을 每年審議
決定하여 發表하고 있다는 것을 볼때 國會當務
者와 協會가 共同委員會를 構成하여 優秀法式으
로서 教授陣이 構成될 수 있는 法式을 選定할
수 있을 줄 안다.

둘째 運營方式의 問題이다.

筆者는 國會機構內에 獨立된 機構로 設置했으
면 한다.

또한 從前에는 國會速記士들이 教授 또는 助
教을 兼하고 있었으나 教養科目은 또 모르되 速
記科目에 있어서는 어디 까지나 專任教授制를
實施하여 教授에 專念케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은 速記法式의 研究와 隱退速記士들의 救濟
의 한 方便이 될 수도 있는 줄 안다.

미구나 現下 協會의 與件으로 보아 可能하다면
協會와 直接적인 紐帶을 갖고 速記學校의 事
務運營은 協會事務局(將次構成할 것으로 보고)
에 委任시켜 効率적인 運營方式을 擇해 봄지도
하다.

어쨌든 언젠가 있을 이 速記阵問題에 대해서
는 複雜한 問題가許多히 있으나 協會의 運營과
關聯하여 어떤 妙策이 發見되어 速記發展에 真
正한 寄與가 되는 方式을 꾸준히 研究하여 그
實効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이 論旨로 어떤 當務者에게 壓力感을 주거나
行政的인 面을 干涉하려는 意圖는 秋毫도 없는
것이고 相互 速記 問題에 關心을 갖고 그 發展
을 위해 努力하는 位置에서 이 問題가 지닌 問
題點을 考察해 보았을 뿐이다.

특히 速記同人들은相互 利害關係를 超越하여
韓國速記界的 앞날을 적정하는 뜻에서 共鳴이 있
기 바란다.

〈本協會資格審查委員長〉



速記士法 制定의 必要性

金 永 善



1. 速記士法이 왜 必要한가

速記が 必要한 곳은 대개 그 記錄保全의 價值가 끈곳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速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文字化시키는 唯一한 手段이기 때문에 절차 社會가 複雜해질수록 速記를 必要로 하는 部門이 擴大되리라고 본다. 우리의 現實을 보면 가장 速記士가 많은 곳이 國會다. 이는 代表의 會議機關이오 國民의 政治的代表機關이기 때문에 모든 會議過程의 記錄이 없이는 議事進行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할 것이다. 해서 國會는 本會議나 分科委員會를 莫論하고 全部 速記하고 있으며 이는 國會法 第百八條二項에서 「會議錄에는 速記法에 依하여 모든 議事を 記載해야 한다」고 明示하고 있으며 其他 重要한 會議制機關에서는 다 速記錄을 作成하고 있다. 또한 國家機關이 아닌 言論界 大企業等에 절절 速記를 必要로 하는 分野가 擴大되고 있으며 常時 速記士를 雇用할 수 없어 請託 速記를 시키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速記가 必要하다해서 그저 速記를 한다는 한가지 事實만으로서 그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能力 있는 速記士가 精誠들여 速記를 해서 正確한 會議錄 또는 速記錄을 作成하지 않으면 오히려 逆效果가 날수있는 것이다. 그런데 不幸하게도 누가 대로 速記를 해서 負荷된 任務를 完遂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은 容易하게 識別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첫째 速記를 必要로 하는 곳에서 安心하고 速記를 시킬수 있고 둘째 速記能力 있는 者가 一定한 水準에 到達하지 못한 사람을 때문에 입는 被害를 除去하므로서 速記가 말은

바 社會的 任務를 제대로 遂行시켜야 한다고 본다.

萬若에 國會의 各種會議나 昨年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APU總會 또는 UN總會 等에서 速記가 없어서 그 會議進行過程을 文書화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恒常 異議提起로 因한 紛爭이 불씨를 안고 있으며 혹 지난 會議過程에 대한 異議가 提起되면 그 수습에는 相當한 時間을 消費해야 할것이며 會議制機關은 그 機關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하기란 利害가 對立되지 않는 곳에서만 可能하다는 新學說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錄音을 해두면 되지 않느냐고 反問하는지도 모르나 例컨대 數十台의 錄音機로 錄音을 해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각己 必要한 때에 必要한 部分의 錄音「테이프」를 찾아서 그 部分을 듣는다는 것은 錄音「테이프」의 操作을 해 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을 바꾸어 能力이 不足한 速記士가 잘못 會議錄을 作成해서 그 會議錄 自體를 疑心하게 되면 그 會議錄이 얼마나 틀렸느냐를 물기 前에 그 正確度를 疑心하는 會議錄이라면 그 會議錄으로서의 구실을 다 못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速記는 練習이 아닌 바에야 能力 있는 速記士가 精誠껏 써서 언제나 높은 公信力を 維持해야만 그 速記로서의 社會的 機能을 完遂하는 길이며 이것을 하기 為해서는 速記에 從事하는 速記士의 資格을 法으로 定하여 速記士의 制度를 法律로 確立해야 한다.

2. 參考가 될 어떤 法이 있는가

法律에 依하여 그 資格이 定해지는 辯護士司

法書士 辨理士 技術士等의 경우를 보면 그 行爲를一般的으로 禁止해 놓고 法的要件이 갖추어지는 경우에 限해서 그 禁止를 解除하며 一定한 規制에 違反하면 그 禁止의 解除를 取消하며 當該團體에의 加入義務등 負擔을 課하고 있다. 例를 들어 說明하면 辨護士法 第一條에서 「本法은 辨護士制度를 確立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明記되어 있는바 이는 權利職務로 모든 社會組織이 運用되는 法治社會에서 法의 正當한 執行에 寄與하는 生法을 지키는 法院의 法執行過程에 있어서의 技術的 專門家로서 必要 不可缺한 存在이기는 하지만 그 制度가 紊亂해지면 그 重要度에 比例해서 큰 社會의 痛的存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本然의 任務만 充實히 遂行시키자는 것일 것이다. 이와 同 같은 規定을 司法書士法 第一條 辨理士法 第一條에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速記士도 그 制度를 確立하여 社會의 速記活動을 圓滑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確立한다는 制度의 骨子는 무엇인가 첫째로 資格을 確定해야 한다. 辨護士法은 그 3條와 4條에서 司法書士法은 4條와 5條에서 技術士法은 4條에서 辨理士法은 3條와 4條에서 計理士法은 2條와 3條에서 각각 그 資格要件를 列舉하고 있는데 이 資格規定으로서 從事者の範圍가 確定되는 것이다.

둘째 그 資格이 確定돼서 具體的으로 어느 個人이 그 資格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目的에 充實하도록 活動시키지 않으면 許可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 計理士法 第2條의 21項에는 「計理士는 誠實히 그 職務를 遂行하며 그 品位를 維持하여야 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速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資格이 있는 速記士라해도 誠實히 會議錄等의 作成에 臨하지 않으면 그 結果가 밀기 어려운 會議錄을 作成할 可能성이 있다. 이것을 法의 由來로 规定하고 또는 거기에 부수되는 權利와 義務를 賦課하여 모든 未備를 막되 信義誠實의 길만 열어놔서 社會의 公信力이 增加되어야 速記의 價値와 더불어 社會의 發展에의 寄與度가 增大할 것이다.

세째로 위의 誠實을 確保하기 爲해서는 民主社會에서 一般權力關係의 統制로는 너무나 放漫하고 不法行爲의 理論에서 보는바와 같이 自由活動의 限界가 너무 넓어서 行動規制에 여러가지 難點을 隨伴하기 때문에 特別權力關係에 準하는 規制力を 가지 団體의 組織이 必要한 것이다. 例전에 司法書士法에서도 5章과 6章에서

辨理士法은 9條에서 計理士法은 11條에서 각각 그 囘體를 가질 것을 規定하고 있으며 辨理士法 第12條를 보면 辨理士는 辨理士會에 加入하여야 한다고 強制加入할 것을 規定하고 있으며 自團體內의 制限된自治權에 類似한 規律權을 가지고 있다. 現在 速記部門에서는 大韓速記協會가 結成되어 定款에 依한 運營을 하고 있으나 法的保障이 없어 그機能을 發揮함에 있어 實效가 저울을 우리는 불수있다.

위의 세가지 條件이 그 制度 確立에 根幹을 이루며 速記士法의 制定에 있어서도 위에 列舉된 諸規定이 좋은 資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法 制度의 實際面은 어찌가

앞으로 速記士法이 制定되어야 한다고 再三 強調하는 바거니와 制定된다면 그 方向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우리나라의 過去 實情을 도리켜보면 5·16前에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卒業生은 技術員 資格認定令에 依해서 甲種技術員 3級의 資格證을 文教部長官 名義로 發付 받았으나, 이것이 唯一한 法令에 依하여 認定됐던 資格이요 其他 몇 가지 「케이스」가 있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論議할 對象이 못되는 것이다. 그러니 過去의 것으로 參考價値가 큰 것은 없다. 하기 때문에 새로 法을 만들어야 하는데 實際 速記士法을 制定함에는 두가지 문弊가 있다.

첫째 우리와 社會의 與件이 果然 速記士法의 制定을 必要로 하느냐 하는 点이다. 모든 速記活動이 例전에 國會速記士로서 公務員法의 規制를 받는 경우에 限한다면 구태여 새로운 法을 만들必要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速記士法이 切實히 要請되는 것은 어떤 特別權力關係 또는 이에 準하는 服務關係가 아닌 速記活動分野다. 이 分野가 얼마나 많으나 어떤 制度의 確立이 社會의 由來로 要請된다 할 때에 비로소 速記士法이 制定될 것이다. 筆者は 지금 時機의 由來로 보아 그러한 社會의 要請이 成熟해 간다고 본다.

둘째 法의 內容問題다. 速記의 公信力を 增加하여 社會의 需要에 應할 수 있도록 速記士制度를 確立하는 것이 目的인데 制度確立의 要件은 앞에서 조금 적어보았지만 그 骨子를 敷衍해 보면 高度의 技術의 熟練度를 保持하되 民主的으로 그 資格을 定하고 速記士法에 依한 資格者以外의 者가 速記한 것은 그 公信力を 認定치 않으며 또한 資格者라 할지라도 誠實義務等에 이근 날 때에는 꼭 그 資格을 박탈케 하며 現協會를 法律에 依한 速記士會로 改編해서 全國 速記의 最高 最終의 管理者가 되도록 하여야 비로소 制度의 確立를期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本協會監事)

提 言

◇◇◇◇◇



速記界에 대한 나의 提言

—速記界의 過去와 現實—

金 震 熙

速記界的 現實을 論하기에 앞서 速記界가 形成된 以來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그 成長過程을 通하여 速記의 就業面과 養成事業面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말 速記術이 처음으로 그 實用을 보게 된 것은 1946년 12월 12일 12시에 있었던 立法議院의 開院式과 때를 같이하여 始發하였다고 생각한다. 開院式의 날짜와 時間이 12字로 거듭된 것은 이 12字가 모든 일이 圓滿히 뜻대로 잘 이루어 진다는 데서 採擇되었다고 들었기에 速記의 出發도 이미 그 幸運이 約束된 것으로 믿는다.

當時 立議의 開院을 앞두고 立議事務處當局은 會議의 記錄을 速記法에 依한 方法으로 할 것을 決定하고 速記士募集을 서둘렀으나 좀체 速記士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말 速記士가 없는 것으로 斷定하고 무척 서운하게 여겼고 日帝의 우리말 抹殺政策을 원망하면서도 幸여나 하는 期待를 걸고 繼續 速記士의 捉索戰을 벌였다. 千辛萬苦끝에 速記士를 찾아 냈을 때에는 快哉의 萬歲를 부르게 되었다. 僰政下에서 速記術을 研究하고 우리말 速記를 創案하여 解放과 더불어 實用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은 速記創案者들의 劳苦와 業績에 敬意와 讀揚을 드리는 바이다. 當時 立議에 採用된 速記士는 5, 6名에 不過하였으며 그待遇는 그當時의

事務總長의 月俸을 凌駕하였음은 그稀少價値에서 오는 理由만은 아니고 앞에 들은 그들의 劳苦와 業績에 緣由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 時代의 脚光을 받고 速記士라는 職種이 처음으로 職業隊列에 登場하게 되었고

이 新奇하고 魅力있고 展望이 밝은 速記職業이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僅少한 速記人員으로서는 立議의 發言量을 記錄하기에는 너무도 힘에 겨운 일이 있고 後進速記士養成이 時急한 課題로 되게 되었다.

軍政下의 立議의 發足이 將次構成될 大韓民國國會에 對備한 一種의 準備段階로서 그 意義를 찾는다면 速記도 또한 立議時代를 通하여 自立을 為한 整地段階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速記의 實用에 있어서 立議時代는 速記學術의 整備를 為한 實驗場으로서의 役割과 速記士自身이 取할 方向과 姿勢를 確立하기 為한 貴重한 經體을 얻는 데 좋은 機會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하여 初創期의 速記界가 形成되었고 各派式間에는 燥烈한 競爭이 펼쳐졌다.

各派式間에는 自派勢力의 擴張을 為하여 後進의 養成에 心血을 積注하였고 그結果 制憲國會에 이르러서는 近 20名의 速記士가 增員되게 되었으며 姜駿遠式(서울式) 張基泰式(逸波式)이 伯仲之勢로 進出이 頗著하였고 그外 金天漢式等이 速記士로서 會議의 記錄을 擔當하게 되었다. 制憲國會를 거치는 동안 速記界도 漸漸堅實하게 成長하였고 第2代國會에 들어서서는 그 展望이 미우 有望하게 될 무렵 6·25動亂이勃發되었다.

6·25動亂이 모든 部面에 莫大한 損失을 招來하게 하였지만 速記에 있어서는 實로 致命的인 打擊이어서 功勳塔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結果가 되었다.

當時 國會의 서울 死守決議는 單 한명의 速記



士도 南下치 못한 結果가 되었고 避難國會의 歷史的인 貴重한 記錄은 다시 再生할 수 없게 되는 等 千秋의 憎을 남기게 되었다. 殘留速記士는 被殺, 拉北, 他處에의 轉業等으로殆半의 速記士를 잃게 되었고 9·28收復後 國會의 記錄을 말을 수 있는 速記士의 數는 10倍로 屢할 程度였다. 이렇게甚한 傷處를 받은 速記界는 1·4後退로 舞臺를 避難港都인 釜山으로 옮기게 되었다.

避難國會에서는 激增하는 速記需要量을 예상 기 為하여는 自體에서 速記士養成機關을 가져야 할 것을 決定하고 國會事務處內에 大韓速記高等學校의 設置를 보게 되었다. 速記學校設置에 따라서 어찌한 派式을 採擇하느냐 하는 것이 各派式間에 있어서는 큰 關心이 아닐 수 없었으며 各派式間에는 自派의 擁立을 為한 深刻한 角逐戰도 있었으나 逸波式으로 採擇이 되게 되었다.

여기서 逸波式이 採擇된 經緯을 잠깐 살펴보면當時 國會速記士의 大部分이 逸波式 速記士에서 速記教師陣의 確保가 容易했고 教師陣의 兼務로 그 經費의 節約와 그 主된 理由였고 速記學術自體도 無難하다는 結論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다.

國會速記學校의 開設에 크게 刺戟을 받은 서을式 金天漢式派에서 6·25事變 以後 中斷되었던 速記士養成事業이 모든 어려움은 克服하고 다시 繼續되게 되었다.

避難地 釜山에서의 苦難을 뚫은 速記人們的努力은 後日의 速記界的 發展에 큰貢獻을 이루었고 서울還都後 速記界는 大韓速記協會의 結成을 이를 程度로 크게 發展하였다.

서울 還都後 速記의 職域도 漸次 擴張되어 이 제까지의 國會의 獨占物처럼 되었던 速記가 金融機關·新聞·通信·雜誌社·地方議會等으로 進出이 顯著하였고 특히 參議院의 構成에 이르러서는 速記界는 豐盛한 活氣를 띠게 되고 速記士의 株價도 날로 날로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세까지의 中央集中의 速記가 地方議會의 構成으로 速記文化는 地方에의 普及을 보게 되었으니 可히 全國的規模로 發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發展一路에 있던 速記界는 5·16革命으로 脫서리를 맞게 되었다.

革命後 非常措置法의 公布로 國會는 解散되게 되어 民·參兩院의 百名에 가까운 速記士가 一時에 職場에서 逐出되었고 國會의 速記學校도 閉

鎖되어 速記士 ◇◇◇◇◇
養成이 中斷계

提言

되었으니 可히 速記界로서는 受難時代라 하겠다.

民政復歸後 國會의 成立과 때를 같이하여 速記界는 다시 한숨을 들릴 수 있게 되었고 國會의 速記士도 近70名을 算하게 되고 가까운 將來에 百名線에 까지 肉迫하게 되었으니 欣快한 일이다.

國會의 解散中에는 速記士의 移動도 많았으며各派의 勢力分布에는 막은 異動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나 速記界의 不況 속에서 오직 東邦式이 孤軍舊開格으로 速記士養成事業을 꾸준히 繼續한 功績은 높이 評價받아야 할 것이다.

以上은 立議以來 歷代國會를 中心으로 速記士의 就業狀況과 養成事業面을 概觀하였지만 速記界는 恒常 時局과 政局의 變遷에 따라 가장 鏡澈하게 影響을 받게되는 것은 速記가 議會에의 依存度가 높은데서 오는 必然의 結果라 하겠다

이제 現速記界的 課題로 생각되는 몇 가지를 생각나는 데로 들어 或 參考가 되었으면 多幸으로 생각한다.

1. 速記職場의 擴張

速記界的 隆盛을 期하려면 무엇보다도 要緊한 것이 速記職場의 開拓이 急先務라고 생각한다. 現就業職場의 增員에도 막은 用力이 必要하겠지만 새로운 職域開發에 더욱 힘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于先 卑近한 例로 過去부터 많이 論議되어 오던 法院系統에서 記錄을 為한 速記法의 採擇을 為한 運動의 展開이다. 가장 基本이 되는 人權과 財產問題를 다루는 法院의 記錄은 些少한 點에 이르기까지 그 正確·迅速性이 要求될다고 하겠다. 이 名分에서는 法院의 速記法採擇을 為한 豈算細成의 促進에 있어서는 一般國民의 理解와 支持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가지 各部長官級以上의 秘書室에는 速記能力者인 秘書乃至 秘書官을 두도록 그 實現을 為한 努力이다. 이 速記가 長官을 補佐하는데 특히 公報性을 具 일에는 좋은 利器가 될 수 있음을 賛言을 不要로하는 바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出版文化事業面에 있어서의 速記의 協力도 速記進出의 分野라고 생각한다. 實現可能性 있는 部面에 強力한 作用을 加하여야 할 줄 안다.

2. 速記士 養成事業

速記職場의 擴張과는 表裏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 이 速記士의 養成事業이다.

速記士의 養成에 있어서 國會의 速記士養成機關의 復活은 速記界의 共通된 要望事項이라고 생각한다. 最少限 1年以上의 修習이 必要한 速記教育을 為하여는 國會의 協力を 얻어야 成果를 얻을 줄 믿는다.

3. 速記士의 待遇問題

過去 立議에 있어서의 速記士의 優待는 速記職業이 가지는 特殊性에서 오는 當然한 恵澤이라고 생각한다.

速記士로서 勤務할 수 있는 年齡의 制約은 3臺에 이르면 벌써 速記士로서는 轉業을 為한 苦惱이 따르게 마련이다. 人生의 「골든·아워」를 速記에 쏟는 代價에 對한 保障을 速記界는

講究한 段階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4. 速記學術의 研究

速記術에 門外漢인 사람이 舉論할 立場은 아닙니다만 우리 말의 發言速度가 顯著하게 높아진事實은 速記學術도 이에 따를 수 있는 水準까지 높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職場의 開拓에 隨伴하여 機械速記의 應用이 要請된다고 생각한다. 이 方面은 아직 未開拓狀態이니 만큼 早速한 日時에 使用可能의 段階로 이끌어야 할 줄 안다.

速記界的 集約體라고 할 수 있는 速記協會가 再建되어 이제 意欲의 으로 모든 事業이 着着進行되어 멀지 않은 將來에 좋은 成果가 이루어질 것을 期待하며 速記協會와 速記文化의 隆盛한 發展을 祈願한다. (前民院事務處速記課長)

≈ 贊助者名單 ≈

〈편집자주〉 客年 12月 10日 本協會가 創立總會를 가진 이래 本協會의 創立과 發展을 祝賀하여 李孝祥國會議長과 金鍾泌共和黨議長을 비롯하여 贊助金을 보내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協賛에 있어서 與野院內總務團의 機構의 in 協助에 感謝를 드립니다.

李孝祥國會議長 2萬원

金鍾泌共和黨議長 5萬원

共和黨院內總務團 1萬원

李東寧議員 "

金振晚 "

具泰會議員 金一封(以下同)

姜尚郁議員 徐相灝議員 高興門議員

崔寔林議員 白南樓議員 宋漢喆議員

玄悟鳳議員 金周仁議員 鄭泰成議員

曹昌大議員 芮春浩議員 朴奎祥議員

金任植議員 鄭憲祚議員 金遇敬議員

閔泳甫議員	丁來正議員	李由日議員
申允昌議員	崔致煥議員	李暎海議員
鄭鎮東議員	申潤雨議員	咸德用議員
李相牧議員	丁明燮議員	梁克弼議員
楊淳植議員	吳相植議員	李炳玉議員
李在晚議員	李万燮議員	金好七議員
印泰植議員	柳光鉉議員	林次周議員
閔丙祺議員	金鍾煥議員	崔瑞日議員
李品來議員	陳基培議員	李鍾根議員
金柄淳議員	辛泳柱議員	裴吉道議員
崔守龍議員	李子憲議員	申玉徹議員
金重鉉議員	金股夏議員	吳學鎮議員
劉守鉉議員	洪英基議員	金在淳議員
吉典植議員	劉聖權議員	孫昌奎議員
方一弘議員	金鍾茂議員	任炳洙議員
李鍾諱議員	李活議員	柳承源議員

祝創刊

서울신문사 社長張太和	產業經濟新聞社 社長 백승진	東亞日報社 社長高在旭	大韓日報社 社長金連俊	新亞日報社 社長張基鳳	韓國日報社 社長元鍾勲
京鄉新聞社 社長朴瓊鉉		朝鮮日報社 社長方又榮			現代經濟日報社 社長石正善



提 言

速記法의

새로운 方案을 模索하여

崔 亭 奎

速記를 研究한 사람이나 實務者라면 누구나
더 빨리 錄記할수는 없을까 하고 苦惱하였을 것
입니다.

이제 우리는 現存하는 國文速記의 各個法式의
長點만을 取함으로써 速度能力을 倍加할 수 있
는 方法을 찾아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各法
式의 區區함에서 오는 폐단과 副作用으로서 우
선 速記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어느 法式을 指할
것인지 右往左往하게 되고 既成速記人들도 雖然
中 式闊을 가리어 自派自我의 優越感으로 因하
여 速記界는 發展을 크게 阻害當하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速記界도 이제 發展
할 時期에 到達하였고 科學文明과
함께 速記의 機械化가 時急하다는
것을 切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
니다.

이제 우리 速記界는 大韓速記協
會의 旗幟아래 大同團結하고 合心
魄力하여 速記의 近代化를 이룩하
기 위하여 努力 할 때라고 確信합
니다.

尊敬하는 各速記創案者 그리고 速記人 여러분 !
各法式을 總網羅하여 優劣과 長短點을 가리
어 取捨選擇하는 速記의 革命을 斷行하자는 것
입니다. 索見이나마 本人의 研究結果를 바탕으
로 簡單한 例를 듣다면

(1) 逸波式의 基本文字는 初步者의 理解度가
빠르고 容易하여 그 優秀性이 認定되며,

(2) 東邦式의 動詞 8變形은 言語의 記術을 超
音速의 으로 이끄는 一章一筆의 優秀한 點이라
하겠습니다. (3) 高麗式의 深圓 省略法은 暗記가 必
要없이 實用性있는 長點이며 (4) 세종식의 母

音迴轉은 多樣的 活用으로 多音一筆의 記法이고

(5) 其他法式에도 省略法과 略字等에 있어 科
學의 優秀性으로 記憶과 活用에 便利한 점을
많이 内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以上 列舉 한 것은 水山一角에 不過한 것으로
綜合研究한다면 가장 優秀한 速記法이 되고 後
進을 為해서 뿐만아니라 速記의 近代化를 이루
는 첨경이 될것임을 強調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速記人은 大韓速記協會로 뭉쳐 小我를 버
리고 大我의 廣場에서 速記學術의 統一로 速記
의 近代化를 이룩하고 앞으로의 發
展에 功獻해야 할것입니다. 事實
現存하는 多數의 法式을 하나로 만
들지 않고 速記의 機械化를 爲하기
란 더욱 어려울 것이며 어느 法式
에 의한 機械化를 이를 것인지 漠
然한 感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各法式間의 融和統一優秀點
만을 取擇한 學術의 體系와 論를
합쳐 最優秀法式으로 면모를 갖춘
다면 速記文化向上과 民主國家發展
에 크나큰 轉機가 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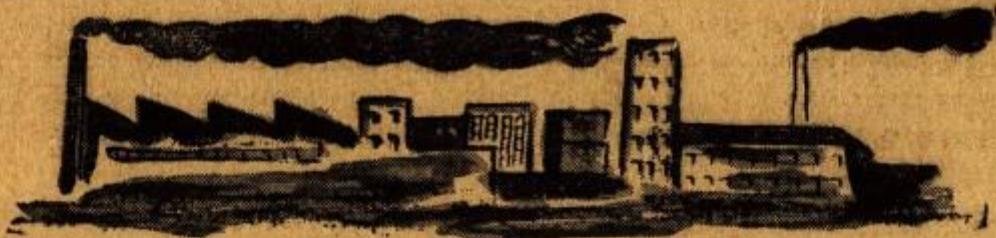
各法式의 優秀點의 取捨選擇등 法式改良은 大
韓速記協會 定款上의 機構인 研究部에서 主管하
여 實踐하는 길이 大義名分에 配合한 일이 타생
각합니다.

本人은 速記의 機械化는 于先 速記의 近代化에서
速記의 近代化는 現存法式의 綜合改良으로서 이
루자는 것을 再三 強調하는 바입니다.

卒稿가 韓國 速記發展과 同志 여러분에게 多少나
마 參考가 될 수 있다면 千萬多幸으로 생각하겠
습니다.

(世宗式 出身)





企業體에 있어서의

速記士의 貢獻



金 鉉 基

元來가 速記部門에는 門外漢인 筆者에게 「速記文化」라는 새로운 雜誌를 發刊하게 된 大韓速記協會의 編輯委員長으로부터 주어진 題目이 바로 頭書한 바와 같은 것이니 果然 무엇을 보고 이렇듯 무겁고 分에 넘치는 請託을 하여온 것인지 먼저 두려움부터 앞서게 됩니다.

바로 最近까지 約 4年餘에 걸쳐 國營企業體에奉職하였던 實務上의 經驗을 士台로 하여 美國과 歐洲 그리고 東南亞地域을 巡訪하면서 ·見聞하였던 바를 參照하면서 敢히 速記士 여러분의 숨은 功勳을 文筆로써 紹介할 수 있는 好機라 어겨지므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描文을 드리고자 합니다.

◇ 速記士의 職責

企業體에 局限하여 본다면 速記士에게 試課된 責任은 大體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會議에 參與하여 速記錄과一定形式의 會議錄을 作成하는 任務가 가장 業務量도 많고 責任도 重大한 職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企業體의 代表者를 비롯한 經營陣을 補佐하여 그들의 口述을 받아 演說文이나 公式書翰 같은 文書를 作成하는 일이 있는 데 이러한 職責에 包括되는 分野가 廣汎하고 그 形式도 매우 複雜多樣한 點으로 보아 決코 容易한 일이 아닙니다.

企業體 内部의 모든 職責이 成文으로서 表示될 때에는 不過 몇 줄로 足한 것이 恒例이기는 하되 直接 그 職責을 擔當한 實務者들의 立場이

나 經驗으로 볼 때에는 第三者로서 想像조차 할 수 없을 만큼 困難하고 複雜한 部面이 가득 한 實情입니다.

더욱이 理事會, 株主總會 等의 最高經營方針을 다루는 會議를 비롯하여 直接的으로 經營陣의 各任員을 相對로 하여 그 口述에 따라 文書의 作成을 마쳐야 하는 職責에 이르기 까지 形形色色의 作業過程을 細密하게 따져 본다면 第三者로서는 速記士 여러분에게 深甚한 同情과 感謝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速記士의 素養

研修過程에서 體得해야 할 速記의 技術은 「速記士」라는 名稱을 얻기에 基本이 될 不可缺의 要素입니다. 그러나 그 職責이 滿足스럽게 違行되려면 이러한 基本技術만으로서 決코 充分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論及된 職責을 誠心誠意로서 違行하려는 速記士라면 大略 다음과 같은 素養을 스스로 갖추어 나가기에 힘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 企業體의 基本規程
2. 企業體의 運營方針
3. 企業體의 歷史 및 經驗實績
4. 任員陣의 指針 및 性格
5. 重要한 關係機關 및 去來處
6. 文書規程 및 帳票樣式
7. 業務分掌 및 專決規程
8. 書翰 및 式辭의 基本樣式
9. 國文 및 英文의 打字

10. 錄音器 및 "티타폰"의 操作

이 밖에도 「速記士」로서의 最善을 다 하려면 스스로의 基本素養을 더욱 깊고 넓게 갖추기 為하여 努力해야 할 分野가 離부나 廣汎한데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速記士가 다루어야 할 일은 그大部分이 反復될 수 없는单一回의 發言이 對象素材가 되는 것이며 그가 作成해야 할 文書는 거의 時間을 다루는 急한 時限이 附與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하루도 계울리 할 수 없으며 또 他職員과 協議할 餘裕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외로운 것이 速記士이며 또 언제나 要求되는 것이 速記士입니다. 그 企業體가 크면 풀수록 會議의 種類나 回數가 많아지는 것이며 또 任員의 數와 活動分野가 많아지는 것이므로 速記士의 任務도 그만큼 增大되는 것이 常例입니다.

機械文明이 發達되면서 事務系에서 應用되는 機器도 많은 變遷을 겪어 왔는데 특히 打字機의 普及과 錄音器나 "티타폰"의 活用으로 말미암아一面으로는 速記士와 打字手의 限界가 매우 混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文明의 利器를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껏 驅使할 수 있는 技術을 習得하는 것이 「現代의 速記士」로서의 素養을 더욱 및나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企業體 内部에서도 특히 高位層을 每日과 같이 接觸해야 할 位置에 處하여 있으므로 速記士로서는 그 言語나 態度, 服裝이 端正해야 할 것은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企業體의 秘密도 가장 많이 알게 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입이 무거워야 할 것입니다. 他人이 모르고 있는 일을 먼저 알게 되면 그事實을 誇示함으로써 스스로의 位置를 높여 보려는 것이 人之常情이므로 달로는 쉬우나 實際에 있어 "입을 무겁게" 갖는다는 일은 決코 쉬운 일이 아님을 銘心해야 할 것입니다.

◆ 速記士의 貢獻

위에서 略述한 바에 따라 速記士의 職責과 素養이 企業體에 있어서 決코 적은 것이 아니라 그 比重이 매우 무거운데 反하여 「速記士」라는 職位가 特殊分野에 屬하는 것이므로 他職員들의 認識은 매우 局限되어 있는 것이 常例입니다.

企業體를 運營하기에 根幹이 될 여러 가지 主

要會議의 成果를 널리 周知시키며 나아 가서는 任員陣의 對內, 對外의 重要活動을 書翰, 演說文 等으로 成文化하여 捕佐하는 일은 곧 人體에 있어서 中樞神經에 該當된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重大한 機能을 額面 그대로 認定하여 주는 사람은 企業體 内部에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自己P·R"을 일삼게 된다면 크게는 機密에 屬하는 事項을 漏洩하기에 이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人格에 對하여 重大한 蔑視을 當하게 될 憂慮도 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二律背反의 位置로 말미암아 速記士는 企業體 内部에서도 언제나 외로우면서 또 언제나 呼出에 應해야 할 고달픈 勤務를 勸當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企業體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널리 人間社會의 全般에 걸쳐서 "말없는 至誠"이 後日에 얼마나 그 苗事者 또는 周邊의 사람들로 부터 깊은 感謝를 받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많은 實例를 目睹하여 왔습니다. 速記士 여러분이야 말로 "그늘의 補助者"로서 남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重大한 使命을 每日 反復하고 있으며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말 없는 至誠"의 主人公 여러분들이 大韓速記協會를 創設하고 또 機關誌로서 "速記文化"를 創刊하게 될 것을 裏心으로 祝賀하면서 아울러 創刊號의 貴重한 紙面을 描文으로써 채우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앞날의 幸福과 報答이 있기를 眾願하면서 健闘있기를 再三 비는 바랍니다.

(筆者海外開發公社常務理事)

19페이지 계속

學術研究委員會등 몇 個의 委員會로 하고 各委員會에 專門委員 또는 研究委員을 適切히 配置하고 또한 必要한 斯界의 專門知識을 參與(顧問 또는 諮問委員으로)하여 前記한 問題들을 研究하여 그 結果 方案을 提示하게 하고 그를 理事會에서 論議決定하여 各部에서 執行도록한다면 그야말로 協會運營에 있어 옳바르고 體系있는 運營이 되리라고 믿는다

앞에 提起한 問題들이 다 財政問題가 隨伴되는 것이나 이것이 協會의 長期的인 生命과 直結되는 問題로 보기에 早速한 採擇을 提議하는 바이다. (大韓速記協會理事)



東邦速記學院受講光景

☆ 三 扇 ☆

養成機關探訪記

—東邦速記學院篇—

梁 源 龍 記

花信이 가까워오는月初의 어느 마스한午後 記者는 現在 우리나라의 唯一한 速記士養成기관인 東邦速記學院을 찾아 鍾路二街 長安里당 三層을 노크했다.

들어서자 마자 章顏美男인 L先生의 우렁찬 목소리가 第一教室에서 흘러나왔다. 가만이 귀를 기우려보니 4月 22日에 있는 國會速記士採用시험에應試한 學生들에 對한 猛訓練을 시키고 있는 참이었다. 아가씨 세名에 머박머리 열명이 불통이 뛰는 연필을 들리고 있는 모습을 흔쳐보고 있는데 언제나 庶民的이고 구수하기만한 同法式韻案者이며 院長인 李東根先生이 記者的 어깨를 육적 치며 닉아선다. 「이번 採用시험에 半數는 우리가 차지해야겠는데……」하고 끝말에 힘주어 말했다.

事務室正面에 걸린 「忍耐」「研修」「誠實」이란 院訓을 담은 頭字를 가르키며 어려운 學院經營 속에서도 오직 단한사람의 學生이라도 이 門에 들어온 이상 落伍者가 안되도록 피맺힌 至誠 하나로 버티어 가고 있다』고 우선 學院經營의 階路부터 푸념하신다. 끝고 보니 學院教室貨貨料니 廣告費, 人件費 등해서 月平均 10萬원의 經常費가 있어야 되는데 학생 1人當 한달 受講料 최원식으로는 百名이라야 現狀維持 程度라는 結論이고 보니 참으로 學院經營에 赤信號가 아닐 수 없겠다.

「다른 法式學院도 많이 생겨서 서로 불을 이르켜야 하겠다」고 말하는 李院長은 罷하나 의료을 덜어놓기도 한다. 1948년에는 逸波法式學院이 鍾路三街에, 高麗式이 乙支路三街에, 中央式이 乙支路五街에, 그리고 朝鮮式이, 南大門에 妻駿速式이 安岩洞에 각각學院을 내고 있을當時 解放式學院으로서 乙支路四街에 設置한 것이 이 學院의 始初라고 한다. 6·25前에는 定規코스로 一年修業이었는데 事變後에는 어떻게될 셈인지 모든 學院에 短期化養成이 流行되어 學院經營上 하는수없이 이 學院도 4個月 短期코ース 獲成에 힘을 들이고 있다 한다.

그동안 144期의 期別 聲出에 1414名의卒業生을 내었으며 이 學院을 거쳐간 現業速記士는 國會, 中央情報部, 保健社會部, 農協, 國防部, 海軍本部 등各界에서 猛活躍하고 있다고 한다.

現在 이 學院에는 研究班外에 約 80名의 學生이 修業하고 있으며 이들을 為한 講師陣은 創案者를 비롯 李康賢 씨, 그리고 补助講師 三名이 이에 當하고 있다.

또한 이 學院의 特色인 獎學制度를 實現하여 職業速記士로서 그 資質이 있는 者는 學院에서 獎學金을 주어 그 能力を 充分히發揮케 하고 있으며 이번 國會速記士採用시험에도 이들이 단연 그 top을 품어 줄것이라고 學院當局은 믿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速記協會가創立되어 모두가 다 參與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速記界的前途는 밝기만 하다」는 李院長의 밝은 表情에 記者도 무언가 가벼운 즐거움을 意識하며 東邦速記學院의 보다 繁榮있기를 祝願하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L氏의 우렁찬 목소리를 뒤로 했다.

希望座談會



參 席 者

姜駿遠氏(協會副會長)
李康賢氏(東邦速記學院講師)
孫弘基氏(首都女大速記講師)
金百坤氏(青瓦台군우)
朴明九氏(英文速記講師)
睦鎮奎氏(英文速記講師)
李炯貴氏(東邦速記學院生)
田鎮順讓(東邦速記學院生)
李海珠讓(東邦速記學院生)
李鎬順讓(首都女大國文科3年生)
姜仁順讓(首都女大國文科3年生)

司會 및 記錄=梁源龍(本協會宣傳部長)

▲ 姜駿遠=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16革命으로 그동안沈滯되었던 韓國速記界가 民政移讓과 더불어 各界的速記需要處가日益增大되어 잡으로써 여기 저기 흩어졌던 舊友·新友가 한데 뭉쳐 지난 67년 12月 10日 新聞會館에서 大韓速記協會 再起創立을 본것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速記人口의倍加라는 懸案문제와 더불어 나날이高速化해 가는 發言趨勢에 따른 速記能力向上등 우리들의周邊에 있는 갖가지를 함께 펴부어 어느 한線의 암찬 씨앗을 얻어보고서 오늘 速記各界에서 奉職하고 계신분도 지금 굳은覺悟로 速記界에 말을 넣으신學生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來日에의 보다 힘찬 蹤進을 為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司會=그럼 먼저 速記를 배우시게 된動機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노트」보고 間諜暗號로 誤認 投身動機 好奇心이 으뜸

▲=田鎮順=교부랑 글씨에 이상한 魅力を 느꼈어요. 훌륭한 藝術作品이지 않아요! (웃음)

▲ 李鎬順=솔직히 말해서 저는好奇心이에요.

▲ 金百坤=好奇心에서 出發했지만 速記를 「마스터」하겠다는 目的意識을 定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잊힐 때까지 速記가 되기 쉽습니다. (웃음)

▲ 李炯貴=제가 연습한 速記「노우트」를 가지고 茶房같은데 앉아 있으면 옆사람들이 저를 아래 위를 훑어보고 술을避하는것 같아요! 아마情報部 같은데 무슨 暗號를 가지고 있는 것같이 보인 모양이에요! (일동웃음)

▲ 李海珠=저는 就職을 하겠다는 어떤 打算이 알겠나 봐요! (웃음)

▲ 睦鎮奎=너무 하군요! 外國女子들은 다음에 남편을 內助한다는 긴 眼目으로 배우는데 우선 就職하겠다니…… (웃음)

▲ 孫弘基=우리 나라 現實의 斷面이기도 하겠습니다. 아직도 速記가 稀少價値가 있기 때문에 職業選擇으로선 영리한 判斷이겠죠. (웃음)

▲ 李康賢=一般的으로 저희 學院養成과 정을 통해서 보니까 亦是 「好奇心」에서의動機가 상당한 比率을 차지하고, 다음이 「職業을 갖기 為해서」인데勿論 처음엔好奇心에서 出發했다더라도 다루어 나가는 동안에 무언한 어



姜駿遠氏



座談會光景

전目的意識을定한 사람은 기아이「마스타」해
내드군요!

▲ 姜仁順=만드시好奇心만도 아니에요. 저
의 경우는女性으로서趣味教養으로擇했어요.
이것이後에 좋은職業이된다면錦上添花지
만요!(웃음)

▲ 金百坤=이걸完全히「마스타」하면一生을
두고 좋은利器가 될뿐아니라顧하시는대로錦
上添花의 좋은職業이될줄 믿습니다. 우선저
같은 경우만해도青瓦台에서他職員보다똑같
은時間에 많은業務를處理할수 있다는 것은
亦是氣分 좋은 일입니다.

日時 1967年3月12日下午2時
場所 國會建設委員會會議室

▲ 朴明九=저는美「캘리포니아」大學에서英
文速記을 배웠는데 좀 우습지만「바타」形式으로
해서 배웠어요! 講議室에서 어떤美國學生이
담배를 피워가면서 教授의 講義速記를時間當
6百弗을 받고하고있어요! 그
래 제가 욕심이나서 좀 배우자
니깐 안된다고 단연 거절을 해
요! 그래서 좋다! 내가唐手
가 4段인데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금방



李炯鉉氏

態度를 바꾸어 그걸 우리「바타」制로 서로 가르
쳐주기로 하자 해서 배우게 됐는데(웃음) 이사람
이熱心히 가르쳐주면 나도 열심히 배려주고 좀
짜증나게 가르쳐 주면唐手時間에 호되게 쳐주
었지요!(웃음)

美선 適性検査 받아야만……

세等級 있는 華麗한 職業

▲ 司會=英語速記을 배우는데 隘路는 없었음
니까?

▲ 朴明九=말도 마세요! 亦是障壁은語學
이었읍니다. 알지도 못하는言語를記할수가
있어야죠! 다섯번을 포기했다가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좀 쓰게 되었을 때 그때 한창美
國에서 流行이던『골드핑거』의 主題曲「레코드」
노래 가사를速記해 주고 처음으로 10弗을 벌어
점심을 먹었을 때는 정말 흐뭇했습니다.(웃음)

▲ 金百坤=美國의速記需要處는 대개 어떤
곳입니까?

▲ 朴明九=우선美國의모
든記者들은 거의速記士입니다. 아침, 저녁 40面씩 나가는
日刊신문이「울·뉴스」制이기
때문에速記을 못하면取材를
못합니다. 그리고各級秘書職, 李康賢氏



이것은 速記가 必須條件입니다. 美國에서는 完全히 速記가 大衆化되어서 어느 機關에서나 常然히 速記士를 쓰고 있습니다.

▲ 司會=앞으로 우리 나라도 그런 速記士福社社會가 하루速히 이루어져야 되겠군요!(웃음)

▲ 姜駿遠=내가 듣기로는 美國에서는 速記을 배우는데도 IQ 適性検査를 받아서 매우게 편다면데.....

▲ 朴明九=그렇습니다. 美國에서는 高等學校를 나오면 누구나 適性検査를 받아서 너는 大學을 가라 너는 技術을 배워서 社會에 進出하라 이래서 모든 學生이 그 檢查結果대로 自發의로 實行하고 있어서 事實上 落伍者가 생기지 않습니다.

▲ 金百坤=우리 나라와 같이 學士大量生產主義에 比해 참으로 부러운 制度군요. 우리도 우선 速記를 배우는 사람에게라도 適性検査를 해서 공연히 速記때문에 青春을 亡쳤다는 「아이러니칼」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어요!(웃음)

▲ 孫弘基=速記를 訓하나의 安全한 獨立된 職業으로서 養成만 해야될 것인가 또는 이것을一般化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重要하다고 봅니다. 例

金百坤氏를 들면 韓國에서는 「타이피스트」가 하나의 獨立된 職業인이 되고 있지만 이미 一般化된 美國같은데서는 「타이프」를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 速記가 一般化되도록 모든 速記인이 獻身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 司會=美國에서는 速記士資格試験을 어떻게 實施하고 있는지 紹介해 주실까요?

▲ 朴明九=肉聲速記 5分 錄音速記 5分 聽音 속에서 5분 조용한데서 5분 등 多方面으로 實技「best」를 해서 平均 1分 60單語以上 이런 A B C 級中에서 該當되는 級數의 資格證을 洲速記協會에서 주고 있습니다.

▲ 姜駿遠=그리고 美國의 速記士名稱이 다르군요. A級은 「라이티어」(Writer) B級은 「스테노그라파이어」(Stenographer) C級은 「리포터」(Reporter) 이래서 亦是 손으로 쓰는 Writer를 알아주는 모양이에요.

需要處開拓운동 벌리자

分業速記制度 마련하고

▲ 司會=다음에는 現在 速記를 가르치고 있는 분으로서 障路나 어려운 點이 있다면 무엇을 들수 있겠습니까?

朴
明
九
氏

▲ 孫弘基=처음에는 热心히 하던 學生이 中間에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落伍되는 경우가 제일 마음이 아프더군요.

朴明九氏 ▲ 李康賢=輩出해 놓고도 進出路가 開拓되지 않아 需要感가 없어서 그대로 實用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需要處開拓문제가 가장 時急합니다.

▲ 孫弘基=速記人을 많이 養成해 낸다는 것도 重要하지만 저는 보다 一般化에 重點을 두고 싶어요.

▲ 李康賢=이번에 새로 創立된 速記協會에 付託하고 싶은 것은 지금 法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을 되찾아야겠다는 것입니다. 5, 6年前만 해도 實業系中高等學校에서 一人一技教育으로 速記를 가르쳤는데 近來에는 法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그 時間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찾아서 速記를 一般化할 수 있는 機會를 가져야 할 것인에요.

▲ 司會=그 學校에서 速記科目를 넣지 않는理由는 뭡니까?

▲ 李康賢=大學入試 為主傾向때문에 學校에서 마음때로 빼버린 것 같아요.

▲ 金百坤=그럼 大學入試에 速記科目를 넣어야 하겠군요!(웃음) 아까 速記의 一般化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現 우리 實情으로서는 職業速記養成과 一般化문제는 孫弘基氏 어느 時期까지는 分離되어야 하리라고 보아요. 우선은 職業速記人口를 늘여서 各機關에 파고들어 갈때 자연히 一般화가 되지 않겠어요.

Son
Ho.K

▲ 李康賢=그래서 하여튼 速記需要處開拓運動을 벌려야 합니다.

▲ 司會=速記需要處開拓運動이라는 제미있

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만은 事實이 問題가 速記人口增加문제와 結付해서 重要한 문제입니다。驛國 日本을 보면 新聞社만 보더라도 誘賣신문社에 速記課가 있어 가지고 50名의 速記記者가 活躍하는 實情인데 우리 나라의 신문사는 아직도 速記士를 看을 모르는 未開拓狀態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日本의 各級 法院에서도 오래前부터 公判 및 檢察 職門記錄을 速記로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침침한 未開拓地로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全速記인이 이 開拓運動에 힘을 모아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謙先生은 어떻습니까 英文速記를 가르치는데 隘路라고 하면 ……?

▲ 謙頌奎=요즘 海外開發公社를 通해서 越南가는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英文速記를 한달내에 「마스타」해 주실 수 없을니까 하고 출판하는 女大生이나 또는 美國에 留學을 가게 됐는데 한 10일이나 15일동안에 어떻게 完成시켜줄 수 없겠습니까 하는 學生을 보면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웃음) 무슨 メンス敎習態度로 아는 모양이에요!(웃음)

▲ 司會=英語速記을 完全히 「마스타」할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 朴明九=3. 4년은 實務해야 마음 좋입니다. 그리고 英語速記는 速記를 해온 사람과 이것을 反文打字하는 사람으로 完全히 分業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兩쪽을 다 익숙한다는 것은 짹時間이 걸립니다.

▲ 姜駿遠=請託速記에 있어서도 美國에서는 어떤 請託이 速記事務所로 오면 經濟면 經濟 法律이면 法律, 農業이면 農業 이렇게 專門의으로 擔當하는 速記士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 該當速記士가 出張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苦痛없이 完全速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孫弘基=日本에서도 私設速記事務所를 開設하고 完全 分業速記를 하고 있드군요.

發言도 高度化 하는 時代 法式改良에 힘써야 할때

▲ 司會=다음에는 現在 速記를 배우시는 분의 隘路가 있다면……?

▲ 田鐵順=너무 딱딱해서 짜증이 납니다(웃음) 亦是 忍耐가 必要할것 같아요.

▲ 姜仁順=씨 놓고도 反文이 잘 안되어서 동생한테 뼈기다가 그만 울어버린 일도 있어요!(웃음)

▲ 李海珠=저는 速記學院을 忍耐力養成所라고 부르고 실을 정도에요! 忍耐力 없인 해 낼 것 같지 않아요.

▲ 孫弘基=速記를 通해서 忍耐力を 기르면 앞으로 婦德을 備하는 좋은契机도 되겠군요(웃음)

▲ 姜駿遠=事實이 速記를 가르치는 方法도 再考 改善해야 할것 같아요. 初學者나 既成人들도 反文 때문에 글자를 앓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먼저 읽는 것 부터 가르쳤으면 해요. 그러니까 國民學校學 1年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칠 때 먼저 읽히고 다음에 쓰게하는 것처럼 速記도 먼저 읽는 訓練을 시키고 다음에 쓰는 訓練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모두 研究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孫弘基=참 좋은 말씀입니다. 좀더 가르치기도 쉽고 배우기도 쉬운 體制가 앞으로 研究되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 金百坤=漸次 發言速度가 高速화해가는 趨勢인데 이에 對備한 技術向上問題가 매우 重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司會=이번에 日本衆議院記錄部長 彌富啓之助氏로 부터 우리 協會로 公翰이 왔는데 거기에 보던 日本에서도 發言이 高速화되어가는 傾向이어서 日本 速記協會技能檢定試驗에는 1級이 3千2百字

<謙 駿氏>이지만 實際上衆議院이나 參議院에서 行하는 速記士採用試驗에는 3千5百字를 記錄할 수 있어야만이 合格이 된다는 것입니다.

▲ 孫弘基=지금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조금 <탄다>하면 3千4·5百字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도 國會速記士採用시험에 3千5百字로 올라가는 날이 不遠하리라고 展望합니다.

▲ 司會=技術向上에 總進軍해야 겠습니다.

다음에 萬一 先輩로서 이제 시작하는 後輩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姜駿遠=어느 法式이면 그法式을 「마스타」하는데는 반드시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忍耐로서 이겨 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速記를 해보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成功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 金百坤=저보고 지금 다시 速記를 배워라 한다면 이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苦難과 忍耐의 連結이 없어요. 끝까지 버티는 者에게 冠이 씌워진다는 것은 어제서나 通用되는 원리인거에요.

忍耐力・克己 養成에 適効 文字쓰는 議員은 딱 질색

▲ 朴明九=하여튼 비쳐야 합니다. (웃음)

▲ 司會=速記士生活을 해오시는 동안에 무슨 「에피소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金百坤=그야 많죠! 하나 예를 든다면 4·19前 國會速記士로 있을 때 일인데 嚴群燮議員이 發言하는 도중에 어려운 漢文글귀를 넣은 發言을 한참 해요! 그때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몰라 會議가 끝난 後直接 찾아가서 그 漢字글귀를 좀 가르켜 주십시오 했더니 이 양반이 말자 화를 내면서 「그것도 몰라! 孟子를 보시오!」하고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웃음) 그래서 할 수 없이 國會圖書館에 가서 孟子를 꺼내 놓고 처음부터 읽어내려 가기 시작했답니다. (웃음) 그랬더니 거의 맨 끝의쯤에 가서 「是日害寃고 汝及汝로 僵亡 이

田 鎮 頤 氏 라」하는 글귀가 있읍니다. 即 그듯인즉 奂이라는 惡毒한 暴君이 있었는데 어떻게나 百姓을 못살게 굴든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없어져 버리자」는 이해입니다.(웃음) 이때 原稿督促은 빗발같은데 孟子冊한 卷을 읽어내느라고 혼 난 일이 있었습니다. (웃음)

▲ 朴明九=美國에서 어떤 請託英文速記를 하는데 어느 美國인이 「알겠소!」「알겠소!」를 連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韓國말을 알고 그러나 하고 얼굴을 쳐다보았

더니 「알겠소!」가 아니라 英語로 I get so예요 (웃음)

▲ 隆鏡奎=이번에 APU會議에서 速記를 하는데 日本代表가 「에포」「에포」하는 것이 말과 말 사이에 雜音이었던 것을 저는 모르고 그것도 英語인줄 알고 자꾸 「Actor」라고만 받아 쓰면서 이 사람은 왜 排優이야기만 이렇게 하는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英語가 아니라 「에포」예요!(웃음)



▲ 孫弘基=參議院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議員이 이름은 잊어버렸으나만 평장히 빠른 速度로 發言을 하다가 「오만불」 해놓고는 조금 쉬었다가 「선 <姜 仁 頤 旗>언」 그런 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뒤 말이 좀 이상한 것을 느끼면서도 5萬弗 宣言」이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傲慢不遜」한 이런 말이에요! (웃음) 진땀 뺐습니다. (웃음)

▲ 金百坤=保安法관계 때문에 國會가 어수선해 野黨議員이 極限鬭爭을 하는데當時 洪法務長官의 提案說明의 機會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委員<李 海 珠 氏>長이 하는 수 없이 「아까 配付해 드린 油印物로서 提案說明에 代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野黨議員이 速記士席에 달려와 速記原文을 무조건 빼앗아다가 찢어버린단 말이에요!(웃음) 처음에는 명청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 큰일 났더란 말이에요. (웃음) 그래 그 野黨議員의 周邊을 빙빙 돌다가 그분도 興奮했는지라 것은原文이 自己 호주머니에서 훌린지도 모르고 있는 품을 다서 고양이처럼 가만히 찾아다가 스카치테프로 붙여서 겨우 만들어낸 일도 있었어요. (웃음) 그후로는 會議場이 이상하다 하면 速記原文을 얼른 품속에 넣고 逃亡할 구멍부터 찾게 되었어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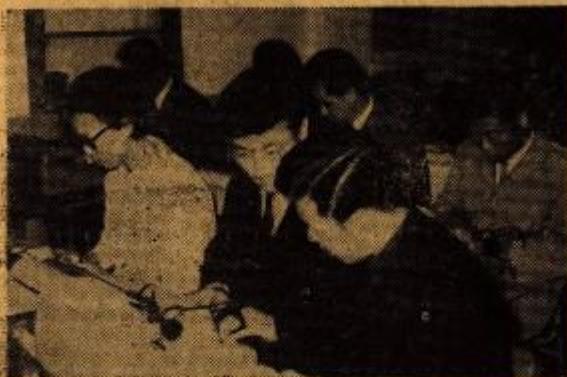
▲ 司會=그 외에도 얼마든지 재미있었던 일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時間도 오래 되었고 이 座談會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長時間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下午 3時 20分散會)



연 구 ☆☆☆

속기와 속도한글 타자기



공 병 우

←공병우 박사 특별제공으로
회원들이 타자를 배우는 모습
(속도타자학원에서)

우리가 한글과 한문글자를 섞어서 쓰면 1분간에 평균 30자, 한글만을 쓸 때에는 60자까지 쓸 수 있다.

우리가 손으로 글자를 쓰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지금은 기계로 짧은 시간대에 많은 글자를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문명의 이기인 타자기의 종류가 현존하는 것이 3가지가 있으나, 타자의 생명인 속도가 빠른 타자는 본인이 만든 속도 한글타자기 뿐이다. 속도타자는 다른 타자기보다 30%~40%, 때로는 50%나 빠르므로 사무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기체다. 그러므로 속도 타자기만이 회의록이나 강연회의 내용을 그자리에서 받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 사람이 평균 250자~300자와 말을 1분간에 하는데, 속도 타자는 1분간에 250자~270자의 글을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하는 말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손으로 쓰는 속기라는 것이 있다. 속기는 특정한 문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강연, 또는 회의사항을 받아적어내는 기술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속기는 약 2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실용되었다. 속기와 타자기의 속도를 비교해 보면, 속기는 능숙한 사람이 1분간에 320자이고, 보통 200~250자의 속도로 속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능숙한 속기사가 10분간에 약 3,000자의 말을 속기하고, 이것을 일 반이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번역해내는데 100분(10배)내외의 시간이 걸리고 이를 다시 타자기로 타자 하는데 15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도합 135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만일 속기사가 타자들

할 수 있다면 속기하는데 10분 바로 타자하는데 15분~20분 합하여 30분으로 끝낼 수 있으므로, 100분이라는 시간이 절약된다. 우리의 문명의 이기인 타자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 뒤떨어지고 있다. 타자수는 속기를 배우고 속기사는 타자를 배워서 속기사로서 타자수, 타자수로서 속기사의 1인 2기의 기술을 가진다면 사무능률 면에서 다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간단한 속기 기술은 타자수에게 필요한 상식이다. 간단한 타자 기술은 속기 또한 속기 사에게 필요한 상식이다. 생존경쟁이 심한 이 시대에 타자수가 속기의 기술을 결합으로써 다른 타자수 보다도 우대를 받고, 속기사가 타자기술로써 보다 빠른 속기 기록을 내 놓게 되므로 더욱더 우대를 받게 될 것은 물론이다.

우리말 속기도 이제는 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외국과 같이 속기 타자기로 속기를 단행 하여야만 보다 정확한 내용을 쉽게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공병우 타자연구회 회장, 의학박사)



[論 雜]

速記素材論

姜 駿 遠



우리 速記界에도 어엿한 "速記文化"誌가 創刊됨에 즐음하여 ①一般素材로서 世界의 記線速記가
겪어온 線·符號의 理論의 變遷과 實踐의 迹跡을
綜合分析하고 ②特定素材로서 우리 말의 語音과
語法을 速記理論에 對應認識함이 有義함을 느끼고
고 貴重한 紙面을 빌어 이에 要覽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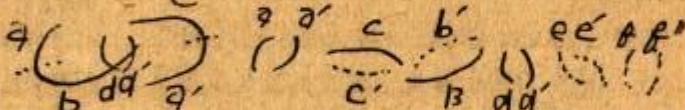
線·符號의 便度

自然運筆線의 速記的 認識은 아래 세段階을
거쳐 이제 自然運筆로 定論이 섰으나 ①單線基
調와 ②連線基調와 나누어 論題가 남아
있는 形便이다.

① 正圓派는 源圖를 幾何正圓을 빌어
說明하였으며 1720年 Byrom을 거쳐 1837年
Pitman(모두英語) 1867年 Duploye'(佛)에 이
르러 完成—8分圓에서 8曲, 6直線을 얻었고

② 斜線派는 이에 不可用線이 있음에 反對 人類가 오래 써온 알파벳 草書體에서 良勢線만을 골라
거의 漢字水字草書 같은 源圖를 얻고 斜下直
曲10餘線에 上·平·下線을 추려 1802年 Roe(英)
에서 1834年 Gabelsberger(獨)에서 大成하고

③ 楕圓派= 이렇게 正圓·斜線이 手筆 記
線의 核을 찾고 있는 동안 △正圓派에서 實用에
걸리는 45°의 4 斜線을 15°~20°로 變向하여 實
用處理 △斜線派의 劃量을 大減하는 措置를 分析
再綜合하여 正·反·合의 新源圖를 水平橫外 右
斜構과 그直에서 얻은 것이 自然運筆(natural
motion)이며 1886년에 malon(美)에서 試案—



正圓派 보다 160年 늦은 1888年 Gregg(美)에서
大成한 것이다.

記線力學 그러나 記線의 核은 原子衝擊처럼
放射形으로 爆發하는 것이 아니다. 이 手筆記線
은 그 向引力를 右向橫書에 둔다면 새로운 速記
의 記線力學이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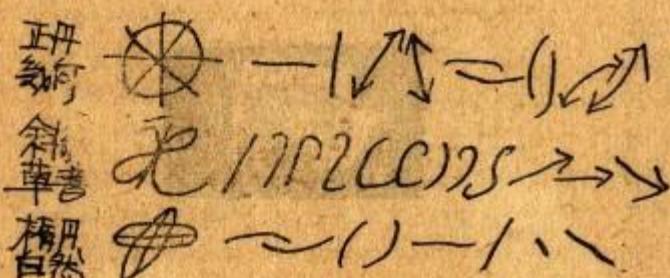
即 ①作用點 ② 距離 ③ 힘의 方向으로 나
누어 생각해야 하는 때문이다.

人間의 右手로 無意識으로 記線하더라도 比較

的迅速·正確히 써지는 것은 a, b의 20°와 15°
의 左卷, c, a'의 水平과 20°의 右卷이, 또 短線일
때만 便한 右下向 20°의 d, d'가 速記線核의 基礎
運筆이라 하겠고 하필 漢數字의 四의 草書에서
分線했다고 說明함은 漢字使用國에서는 有用한
方便이 되겠다. 다시 그 對稱線들 c', b'와 新設線
e, e', f, f'을 加하고 6向直線을 더하면 12曲과
6直線을 얻고 △漢四解線 A의 6曲線은 「運筆의
軌道」로서 最優秀線, 그나마지는 便速의 差는
있지만 次善線으로 알아 둘것이다. 線分中에 漢
과 漢도 있을 수 있으나 본편이 優勢하게 쓰이는
現今이므로 넣어 두기로 하고 사실 曲線은 그始
筆과 方向에 따라 用力線이 되어 스스로 굽어지
는 것이다.

進向記線의 가상 基調인 힘의 方向
을 다루는데 있어 ① 美 S. mc clure氏
는 일찌기 進向便度는 水平群이 奇數
1, 3, 5順 垂直群이 偶數順 2, 4, 6이라고
規定하였는데 ② 姜案은 百分率로 右向
60% 下向 40%로 하고 6向次順도 m式
과 4, 5의 順이 바뀌는 것이다.

曲狀曲狀認識은 ① m氏는 源圖椭圓
을 橫切하여 上半을 正弧로 보고 便 그





下半 負弧를 次로 보는 見解에 對하여 ② 姜案은 極圓源圖를 縱切, 左卷을 一律로 順弧로 보고 便線으로, 右卷逆弧를 次善으로 ③ 直6向은 兩案 모두 第3位로 보는데 直線은 形而上學으로는 兩點間의 最短距離이므로 最速할것 같으나 手筆의 運筆軌道에 어긋나고 初一字는 便速한것도 있으나 連次字로 連書가 隨處에는 直狀維持가 어려운 線形인 것이다. 그러나 읽을 때는 人間의 視光自體가 直線임에 따라 直이優, 曲이劣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基準	連書勢	卷勢	向勢	主・副調
姜	連書	右向橫書	左卷	遠心	主調有
M	單線	주역內外	右卷	求心	主調無

線勢基調 이체 透徹한 右向橫書와 速記法을 構成하기 위하여는 이미 進向曲狀에서 점차이 가겠으나 그線勢基調가 크게 2분되어 이제까지의 通論인 三案은 單一線을 주역內外에 集線하고 따라서 求心, 主調是有的 右卷이 되는 反面姜案은 우리 말을 單音主辭가 極히 드르므로 2.3音節 連書를 基準으로 하고 右向橫書의 左卷勢, 向勢는 主調가 두렷한 遠心으로 하고 있는데 寡聞이나 界速記界的充分한 討議 課題가 되어야 할것이다.

小大實線 이체 각個線을 生動하는 單線으로 보고 그 使度를 認識하는 일이 남았고 이것이 또 가장 重要한 實驗研究 作業이다. 여기서는 小는便, 大는不便, 直은便, 曲은不便 따위 常識의이나一律의으로 規定 할 수는 없는 고로 左表를 提示하였다. 軌道文字와 1級에서 보면 曲字에서는 小4에 大2, 여기 直에서 小1 大1이 軌道線勢를 이고 여기에 1級文字를 曲直合算하여 總 36字中 小가 16 大가 10, 計 26이 便字에 屬하고 2.3級에서는 小2 大8이 되니 A의 軌와 1級便 26. B 2.3級 不便 10, A에서만의 小18, 大10, 曲16 直10이 되는 比率이 나타난다.

示差機能 語形全體의 示差機能도 말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單一線의 示差로서는 ① 進向이 모든 線分의 基礎要件으로 보고 가장 明確히 쓰고 읽어지고 ② 曲直과 小大와 符號가 이에 따르는 順임에 이中 小大 比 및 實長은 世界各法式마다 或은 說明을 위하여 成業後의 實線과 다른 入門敎習을 하고 있으나 別表의 手筆實線이 參照가 될것이다. ③ 最小線과 最大線은 小로 無制限, 大는 大로 또한 無制限이므로 自由스럽고 이들은 字初字間 語形尾에 붙는 符號와 더불어 基本文字와 異形인 點에서 表意化的 示差機能을 保有하는 것이다.

第6表

	曲(12)		直(12)		計	
	小	大	小	大		
A 便	軌	4	2	1	8	
	1	7	5	2	18	
	小計	11	7	5	3	26
B 不 便	2	1	3	1	5	
	3		2	3	5	
	小計	1	5	1	3	10

主勢, 副勢 모든 有為轉變하는 存在에는 每우기 瞬時에 語速을 따라 쓰는 速記에서는 움직이는 합의 方向과 量에 어느 傾向이 없을 수 없으니 ① 進向의 右向 下向兩群, ② [線形의 曲狀의 左卷·右卷, 나아가서는 回線合流등 偏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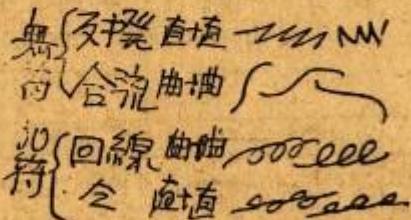
	曲(24)	直(12)
級道	(—)(—)	/ /
1級	—(—)(—)	—/ /
2	—(—)(—)	—/ /
3	(—)	—/ /

要求되니 黃金分割(Golden section)은 數學이나 美術音樂에서 뿐 아니라 우리速記線形에서 도當然히 要求되어 있는것이다. 먼저 △進向에서 希

最小線 2-3	小文字 5-6	大文字 10-12	最大線 15-20
------------	------------	--------------	--------------

求되는 主勢는 右向橫書로서의 前進勢 右向群이 그便度를 30, 25, 20으로 보고 75% 거기에 回歸勢가 必要하니 20%로서 潤滑往復運筆이 企圖되어야 하고 여우기 複音節 語形連書에서는 進向에 優美한 律性이 생겨야 할 것이고 △曲狀勢는 左卷順弧를 主勢로 50 거기에 걸들여서 써지는 直25를 合하여 75% 여기에 右卷逆弧의 回歸狀이 또한 必要하니 25%로 理想을 삼아본다. △小大의 主勢는 各線便度에서도 보듯이 小60, 大40, 最少限 50:50으로 나타낼 必要는 있는 것이다.

連續3運筆 2.3音節語가 80%를 차지하는 特히 우리 말에 ① 字間無符의 連線 ② 字間加符의 連線狀態를 아니나를 수 없는 戰反盤은 直十直이며 字間無符의 경우인데 進向은 右上이 下左斜向의軌道向이 좋고 銳角이 優勢하고 ③는 無符曲+曲形인데 小大區分이 筆勢 때문에 紊亂하기 쉬우나 速書가 되어 實用되어야 할 것이다. 데로는 直線과도 連書可能하고 大小鉤를 끼어 連書도 된다. ④ 다음은 字間加符(特히 圓)의 경우의 連書인데 同卷曲끼리는 優, 反卷曲끼리는 劣이된다. ⑤ 直十直의 間符는 그 母字線의 示差를 살리려면 端曲對側에 加符하지만 劣에 屬하는 方法이다.



符號便度 圓鉤類등 符號의 實線의 小大比는 그 面積 1:9(直徑1:3)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定論이며 字線과는 달리 表意의 視覺效果를 가지는데서 實用된다.一律로 小는便 大는不便으로 規定할 수는 없고 그 加符位置의 便順은 逆으로 尾·間·頭로 逆說할 만큼 別異한 것이니 △頭符는 基本文字에 比하여 눈에 안 異形이어서 異形으로 読文 書速은 1個字와 맞먹으며 이 경우의 1級便符는 大鉤, 小鉤 小圓, 2級에 橢圓類,

	1급	2급	3급
頭	C <u>u</u>	o <u>o</u>	o <u>o</u>
向	o <u>o</u>	o <u>o</u>	o <u>o</u>
尾	o <u>o</u>	o <u>o</u>	o <u>o</u>

3級에 加尾符가 된다. △間符는 그加符로 因하여 前後字의 區劃을 表示하는 效果도 갖는데 鉤는 流筆로 하고 楕圓도 正圓과 混用이 許容된다면 有用하다. △尾符란 大底 여우기 曲線字는 곧 停止하여 抑勢로 써 손이 빠어지는 것이 아니고多少間의 流勢現象인 餘勢는 不可避한 것이며 이들은 여우기 加尾符號까지 別用하게 되니 限界를 넘는 流勢에 依한 그 混形이 두려울 程度로

	4	5	2	3	1
A直	*	-	-	1	1
B左	-	—	—	()
C右	-	-	—))

全符號가 1級에 屬한다. △ 다음 最少線은 基本文字가 아니므로 역시 符號로 보는데 表의 2直과 1曲(符記記帳의 체크)을 特便한 것으로 배놓고 그向으로는 1~5의 順, 曲直狀은 ABC 便順에 대략 該當되는 것이다.

空筆排除

速記文形의單

複은 常識으

로는 評價하

지못할것이다

直線이 많거

나 雖雖爾이

져 있으면 曲

線 보다 視

覺表出量 이

僅少하므로速

筆할 것으로

느낄지 모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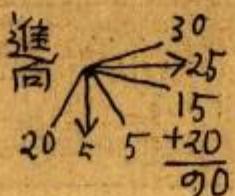
나 이것은 空

筆이 計算되

어 있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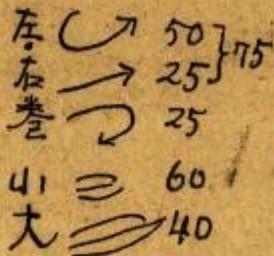
斷定인 것이

秒間記錄
1. 8~9
2. 7~8
3. 6~7
4. 5~6
5. 7~8
6. 7~8
7. 6~7
8. 5~6
9. 7~8
10.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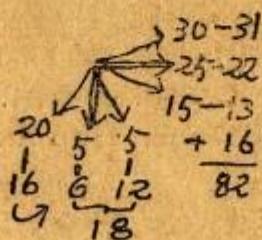


다. 아우리 簡略한 1字1劃
文字라도 한글式으로 한
字한字 빼어쓰면 到底히
速書不可能一
秒間記錄表에
서 보듯이 回線이 6-7線

로 생진이 兩側面을 各國各式에서 正負 側이란 幾何學用語가있고 그 規定性조차 相異한形便이므로筆者는 筆記感覺에 어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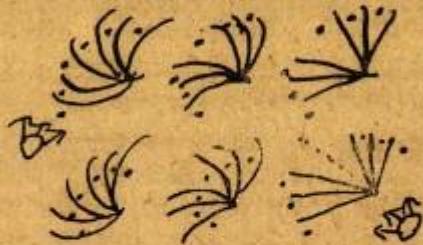
이나 可能한때 點은 8-9밖에 못찍고 疲勞는 极甚 漢草書 四, 出, 甫, 天의 멋진 連回線運筆은 왜 생겼는가를 회상하면 좋을 것이다. 結局 速記의 今後의 課題은 이 空筆排除에 두어지고 있는데 이 作業은 우선 速記의 語法의 發掘과 並行되어 速成할것
인바 한 實例를 活 字量으로 50字(速記로 8語形) 中空筆比例가國漢文으로는 2
60 한글로는 207, 速記로는 6空筆이니 한글에 比하여 速記는 무려 35倍의 空筆排除를 斷行한 것이 된다. 速記는 우선 한 語形을 連畫, 다음에는 한文行의 連畫까지가서 形式으로는 完璧에 이르는 것인가한다.



位置規定
速記에서는 不可避하게 1個線이 생기면 대別兩側의 對稱位置가 생기는데 이 素材를 體系認識하여 表音表語에 有用 할 수 있다.
① 順·逆二한波에는 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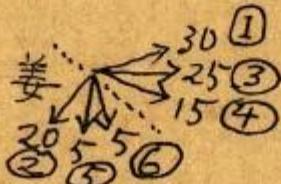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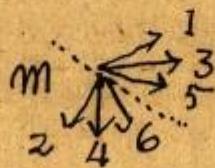
는 侧面名을 順側·逆側으로 나누었고 머우기管見으로는 世界最初인 細分法인데 字屬的과 字沿의 두가지 認識을 뚜렷이 하기로 하였다.

① 字屬에서는 順側을 直은 左肩에 太陽이 있



어 그비치는 面右向은 上, 下向은 右로하고 曲은 모두 內를 順으로하여 字線自體發音의 补筆法을 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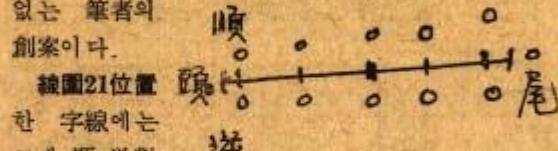
③ 字沿은 母線과는 다른 既念을 表意로 하기 위하여 좀 遠距離로 하고 曲直不問, 右肩에서





交離·28位 交叉分離 28 差=複字語形의 字間이나 語形間에서 한번 손을 떼는 경우는 다음 28示差를 쓰고 읽을 수 있으니 前後字의 交叉의 深淺 6, 平行이 7, 接觸 6, 語形間의 떼어 쓰기가 아닌 分離措置가 9位置로서 28差인데 나중의 語尾位置의 書線直角의 上으로 2와 下로 2位置는 世界類書에

없는 筆者의
創案이다.



한 字線에는

크게 順·逆對

逆

線側이 생기

지만 작게 有用할 位置는 順逆으로 頭尾正中, 사이에 頭中尾中으로 交叉또는 分離로서 21position을 辨別할 수 있는데 類音 類意 類語 등 語音 語法 과 頻度面에 걸쳐 體系化 有用 할 植概念이다.

語言·語法의 分析

速記의 線符號 素材는 그쓰여질 言語의 語音 語法의 速記學의 理解와 어울려서 비로소 制法되는 것이니 線素材分野는 世界的으로 定說이 있으나 言語는 各國語와 語系가 다르고 同語系라도 細微한 部分에서는 相異한 것이니 어느나라고 聲音·語法學은 그 速記學과 서로 驟接學間으로서 段階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母音 主音 어느 語音에도 모두 子·母音은 있어야 發音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말처럼 母音을 生命으로 하는 말은 없다. 即 歐語中에도 Western group에 屬하는 英語는 숫자 母音字「一」가 없이 쓰이고 子音連書로 略語까지 만들고 있고 子音은 正確을 期하는 反面 母音이 音便化하고 있음에 反하여 우리 말은 母音의 正確性없이는 소위 語不成說이 되는 것이니 꿀꺽 꿀꺽 꿀꺽 꿀꺽과 같은 擬聲擬態副詞에 만남고 母音調和法則

을 死則이라고 알면 큰 錯誤一固有語의 單音動形詞를 얼른 끌라 보더라도 알(知) 일(凍) 오르(昇) 울(泣) 읊(?) 일(起·事)에서 母音이 混同할 경우를 생각하면 不問可知이나 記線의 3屬性中 進向, 曲直, 小大中 어느것이 母音에 適應될 것이 나는 制法의 死活을 決定하는 關鍵이다.

頻出度 우리 말 頻出度의 測定없이는 速記制法은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말 音節의 거이 4~5割을 占하는 助辭를 合算하느냐 別算하느냐의 두 集計法이 있는데 아마 後者가 速記制法에는 有用될 것이다. 筆者の 最新抽出表는 다음과 같다. (各項別 100%) △ 子音을 2初發音이 없고 平音 80, 激硬音 20%, △ 母音은 單이 84, 重이 16% △ 받침은 있는 音 55 없는 音 45% △ 모든 助詞와 語尾내지 助詞의 「에도 木拘하고 다고 하는 것」을 모두 助辭로 본 것이다.

主 音		辭		助 辭
子 音	母 音	반 침		
○ ㅎ 25	ㅏ ㅑ ㅓ ㅓ ㅣ ㅣ ㅗ ㅗ ㅜ ㅜ ㅡ ㅡ	ㄴ 26	느 怃 ㄴ 25	
스 츠 14	ㅏ ㅐ ㅓ ㅔ ㅣ ㅣ	ㅇ 26	률 ਊ ㄹ 13	
ㅅ 츠 14	ㅓ ㅕ ㅣ ㅣ	ㄹ 25	에 /의 11	
ㄱ ㅋ ㅌ 13	ㅓ ㅔ ㅣ ㅣ	ㄱ 7 11	다 7	
ㄷ ㅌ ㅍ 10	ㅣ	ㅁ 8	꼬 7	
ㅂ ㅍ ㅃ 9	ㅗ ㅕ ㅓ ㅏ ㅣ ㅣ	ㄷ ㅅ 4	이 /가 5.5	
ㅁ 8	ㅜ ㅠ ㅓ ㅓ ㅣ ㅣ	ㅂ 2	도 /어 5	
ㄴ 6	-	ㅎ 6	탸 /나 5	
ㄹ 5				

1記劃 3音節 頻出에 關聯하여 아울러 알아볼 것은 記線速記에서는 1記線이 3音節을 擔當하도록 構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現 우리 語速은 漸次加速하여 腫間의 으로는 秒速 12내지 13 音節 까지, 이를 緊隨에 調節하여서 著聞平準化하여 秒間 6~10字는 써야하는 것이니 秒間에 文字로서의 記線可讀能力을 넉넉이 3線을 留고 1記劃이 3音節을 지니도록 되지 않으면 秒間 9音節 實用不可能이란 切迫한 條件속에 있는 것이다.

通音에 類線 通音群은 進向·曲直, 小大의 線分의 別로 類似한 線形으로 써져야 當然한 것은勿論이다. △ 子音은 한 頻出主音인 平音 → ㄱ에 ㅋ ㅌ의 激硬音式으로 스스로 音質로서 通音이고 ㄴ ㄹ은 舌則音이므로(라팔→나팔) ㅁ ㅂ은 脣音인에서 ㅅ ㅍ은 舌音(정거당→정거장) 인에서 通音이고 ○ 母音을 6群으로 大分 ㅏ ㅑ ㅓ ㅓ ㅣ ㅣ ㅗ ㅗ ㅜ ㅜ ㅡ ㅡ로

多幸히 順次로 通音이 되는데 한 通音群內의 類線類向化의 길을 擇해질 것이고 머우기 聲重中
나가는 前母音爲主나 後母音爲主로 나누어 질 터
인데 韻韻이 남는 後音爲主가 優勢할 것으로 보
인다. (사파-사가, 패방-해방, 의사-이사等
理參照) △ 받침의 絶音은 速音 音의 規則으로
初發子音과는 달라지는 데 鼻音 ㄴㅇ은 不變, ㅂ
은 ㄱㅂ으로 通音, 어는때에는 ㅁㅂ으로 通音이
되고, ㄷ은 ㄷㅂ, 또는 ㄷㄹ파도 通音이 될 다
이들 子, 母, 받침의 通音들은 그 頻出率을勘
案, 速記의 基礎運筆은 決定할 것이다.

調音素 速記語形을 1劃을 2字讀 또는 無書而
讀할 수 있는 基礎的인 方途의 하나는 調音素를
理解活用하는 일이다. 集計에 나타난 一音은 用
言「먹으며 먹어서 오르(昇)을 으며, 올라서」와
體言의 끝으머리, 수수끼이의 (으, 이)등은 모두
「- + +」없이 받침으로만 끌낼 수 있으니 3,4音
節語를 2劃程度로 恒書 恒讀하는 縮字法의 一翼
이 되어야 할 것이다.

主辭, 助辭

規範度法이 무엇이라든지 速記法認識에는 速
記의 語法의 開拓이 必要하고 이 進度의 差異는
곧 한速記法式의 優劣를 決定하는 要因이 될 것
이다. 文法家의 10~12品詞說을 들로 묶어 「詞」
도 「辭」로 廣義分類를 하자는 持論인데 容納될
것으로 믿는다 즉 文法의 助詞, 語尾類를 들으
면서 한뜻을 한 語形으로쓰라는 것인데 「꿈을 꾸
다」 같은 零格語나 「힘을 쓴다, 빤들이 없다.」
「誠意를 다하여, 研究를 해 가지고서……」를 發音
대로 모두 쓰면서도 1線形化(따라서 表意化)하는
길은 速記語形이 普通文字文章보다 더욱 速讀
(發言速度보다도)되는 基調가 될 것이다. 그밖에
「에」先行의 例關하여, 例對하여, 「것」先行의 는
것, 라는것, 하는것 라고하는것 「등」며 나아가서
는 俊尾漢字語 先生, 博士, 時代……등도 助辭로
看做하는등 그 助辭素材의 開拓할 分野는 無盡藏
인 것이다.

表語語形

添加語인 우리 말의 助辭는 그 音節數의 40~50

A	B	C	D
江	Ka	가	↙ ↘
意表	音素	音節	表語速記

%를 차지하고 語末마다 붙는 規例이므로 우선

助辭를 便速하고 特異하게 써서 速書速讀正讀게
하는데 이미 英語速記의 (Would you mind)等
은 1語形으로 連書處理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말
의 速記水準은 A B C를 모두거나 D의 3劃으로
5字量「大體의으로」가싸자고「大」와「的으로」
는 表意「體」안 表音으로 남는 程度에 이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外來語를 動形詞化하는
하·되·되指定詞의 「이」 敬稱使役被動의 「시·히
·리기」 등은 우선 體系의으로 表意化 되고 있음은
各法式의 常識이고, 漢字 冠字인 接頭詞 大事件
不知中에 無味乾操, 全人類의 大不無全, 非나
「한」 強意頭否定의 「아니, 안못,」이 表意化
되어야 하고 더욱 前進하면 「로」를 先行하는
「되, 보, 알, 생각」의 1語形表意化, 「케」 先行의
「하, 되, 생각」「고」를 先行하는 「있, 나서,
제시」「기」 先行의 「쉬우, 어려우, 바라, 困難하」
「수」가 先行의 「있, 없」「지」 先行語 「안, 못,
말」 其他 「오락가락」「水泡로 돌아가다, 기가
막히다」 등 慣習語形 등 1形表意化하는 規定이 必
要하다. 英文印刷에는 活字體를 무려 20餘種를
갖추고 있어 出版物의 表意化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글 制削前의 쓰던 漢字主辭에 語順대
로 붙여 쓰던 口訣이 速記書式을 暗示도 한바 있
으니 助詞나 語尾表記을 漢字의 一部劃안을 써
서 “二”는 主格「이」로 𠂊(애)자 머리를 따서 處
死格「에」에, 대 傑作은 為字의 머리와 尼의 “七
”만을 따서 上下1層字로 하여 “하니”로 한것들은
助辭表意化의 速記의 慎智 있다고 斷定하고 싶
어진다.

質量一致

우선 “에스페란토”와 같이 人造語가 아닌 우리
말 自體가 副詞 “의”名詞 “마다른꼴목” 動詞 “기
가막혀서”를 쓰려면 1意1形原則에 들어 맞게 쓰
는 그內容과 形式을 一致시키는 作業이 必要
하게 된다. 表音을 通한 新表意語形을 科學에
가깝게 지어나가려면 ① 文法上의 主助辭의 區
分을 速記字線에는 안쓰는 濃線化를 한다든가 ②
內容의 重要性에 따라一一히 加下線을 치든지
上段記形을 하여 立體的區分을 한다든지 ③ 左
手로는 色鉛筆로 註赤을 하여 反讀을 容易케 하는
등 速記의 窮極의인 △ 速學=體系의 明瞭確固
△ 速書=線, 符의 便頻度의 合致 △ 速讀=表
語化의 極域에 이르러 따라서 正讀且速讀이 되는
完壁을 向해 나가야 할 것이다.

(本協會副會長, 前國會速記長, 梨大, 廉大講師)

◇ 루 포 ◇



第1回
速記

講習會講評

普及講習會를 마치고

東邦速記學院長 李 東 根

國會速記士를 비롯한 全國에 散在해 있는 全體速記人으로 湧쳐진 大韓速記協會가, 前年12月에 創立總會를 가진後 오늘의 萊縮된 速記界에 新로운 活力素를 불어 넣음과 同時 速記大衆化運動의 첫 事業으로 擇한것이 今年1月30日 YMCA에서 開幕된 第1回速記普及講習會이었다.

이 講習會를 갖는데 있어 協會로서는 두 가지重大關心事が 있었으니 그 하나는 衰退一路을
출다듬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今日의 速記界現況下에서 이번 講習會에 果然 얼마마한
人員數가 參與할 것인가하는 것이요
그 둘째는 3週間이라는 極히 制限된 짧은 期間內에 實施되는 講習成果가 果然
어느 程度일것인가 하는 點이었다.

筆者는 이 두 가지 問題를 細密히 分析 檢討하는 同時に 여기에서 일어지는
結論을 資料로하여 앞으로의 速記普及運動에 對한 筆者의 構想을 開陳코자
한다.

이 두 가지 問題中에서도 첫째 問題인 參集人員數 問題는 우리 나라 速記界의 앞날에 對한 盛衰를 占처볼 수 있는豫報라고 解釋해도 過言이 아닌 性質의 것으로 開講當日까지 協會로하여금 온觸角을 곤 두세우게 하는 問題이었으며, 그 둘째 問題亦是 이번 講義가 職業的인 速記士養成이라는 從來의 들에 賽한 既定敎育課程을 밟게 하는 것이 아니라 一般大衆이 지니고 있는 速記에 對한 그릇된 觀念(速記는 一종의 特殊技術로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普偏性을 지니지 못하고 몇몇 特出한 才質의 所有者만이 習得할 수 있는 學術이다라는 等)을 一掃시킬 수 있는 講義內容이어야 하였으며 또한 初學者들로 하여금 速記에 對한 趣味를十分 갖게 할 수 있음을勿論이려니와 3週間이라는 制限된 時間에 나마 速記의 基

本文字를 完全 消化케 해야하는 一面 終講後에 이르러서도 受講生들이各自의 日常生活에 活用할 수 있는 略字, 略符(受講生의 90%以上이 學生이었음으로 主로 各級 學生들의 學校速記에 應用될 수 있는)까지도 教授해야 하였음으로 協會側으로서나 特히 直接 이번 講義를 말았던 筆者로서는 教案作成이나 講義口述內容에 이르기 까지 細心한 注意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多幸히도 이 두 가지 問題가 다 豫想外로 좋은 成果를 거두게되어 우리 全體速記人이 恒時 念願하고 또 앞으로 반드시 展開해야 할 速記의 大衆化라는 指標到達에 매우 希望的인 밝은 빛을 던져주는 樣相을 보여 주었다.

即 첫째 問題인 參集人員數 問題에 있어서는 三大日刊新聞紙上에 不過單 한 번의 2段 20行이라는 極히 적은 スペイ스의 廣告를 냈음에도 不拘하고 六百餘名이라는 受講申請者數를 記錄하였다라는 事實은 아직도 一般大衆이 速記에 對해 全面的으로 外面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立證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 全體速記人에게鼓舞的인 希望을 안겨주는 同時に 또한 이 現象은 곤 速記普及運動의 不振狀이 一般大衆의 速記에 對한 認識不足에 基因함이 아니라 도리어 이에 對한 既成速記人들의 热意不足과 慢怠에 基因하였다는 事實을 端의 으로 示唆해주는 覺醒劑이기도 하였다.勿論 이 六百餘名의 申請者全員이 受講生임은 아니었으나 實際 受講者數만도 4百7~80名을 헤아릴 수 있었다는 事實과 이中에서 所定의 3週間講習을 完全履修한 者가 2百3~40名이나 되었다는 事實은 우리 나라 速記史上 類例 없는 驚異的인 成果였다것은 筆者뿐만 아니라 速記에 從事하는 者라면 누구나 否認 못할것이다.



그 다음 問題는 講習成果에 對한 問題인데 이 問題는 보는 사람의 主觀에 따라 그 成果가 달리 評價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라 하겠으나 直接講義를 擔當하였던 筆者로서의 구김 없는 主觀에서 볼 때 이亦是成功的이 아니었는가 生覺된다.

여기서 參考的으로 이번 講義의 主要內容을 紹介하면 첫째 總基本文字(발침까지 包含)를 15等分하여 하루의 講義分量으로 定하였고 둘째 初學者의 趣味心을 도구기 為해 當日 배운 基本文字로 應用할 수 있는 略字·略符를 使用頻度率에 따라 順次로 教授하였으며 셋째로 受講對象者の 性分(學生·一般人)如何를 不問하고 普偏의 으로 가장 많이 使用되는 動詞略字에 特히 重點을 두어 각個의 動詞마다 117個式은 能히 應用變化 시킬 수 있도록 廣範하게 注入시켰으며 넷째 以上의 熟達方法으로서 每日每日의 進度課程을 宿題形式으로 復習·練習케 하였고 다섯째로 이를 日常生活化시키는 應用方法으로서 于先各自의 日記帳에다 이를 한글과 混用케하여 漸次의 으로 그範圍를 學校筆記에까지 使用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以上과 같은 講義內容 및 練習, 熟達, 應用方法에 依하여 이루어진 이번 講習의 成果에 對한 受講生들의 總評은——終講日 協會에서 行한 綜合設問中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項에서 「도움이 되었다」가 190名 「도움이 안되었다」가 6名 「잘 모르겠다」가 28名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번 講習이 매우 成功的인 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위의 第 1 回速記普及講習會의 分析에서 볼 때 우리 나라 速記普及發展向上問題는 限定된 既成人層에서 阐上空論의 인論議에 만 끝일 것이 아니라 이를 青少年層에게 普及과 向上을 꾀하는 便이 實相은 더욱 重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자면 于先學生層을 對象으로 합이 가장 効率的이라는 結論이 나온다고 본다.

그러면 어떠한 方法으로 學生層에게 普及을 꾀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研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筆者の 生覺으로서는 여기에 두가지 方法이 있다고 본다. 即 하나는 積極的인 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消極的인 方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積極的인 方法이란 全國의 中·高·大等 各級

學校의 分布狀況을 調查把握한 然後 創案者 級으로 構成된 講師陣으로 하여금 地域別로 分擔케 하여 全國一齊히 巡迴普及講義를 實施하고 各學校에 速記部를 創設하여 一大速記봉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教材 및 諸般參考資料等에서 오는 豫算問題와 講師陣의 人員不足이라는 難點이 가로 놓이게 될 것이다.

다음 消極的方法이란 上記의 直接巡回講義 대身에 獨習 할 수 있는 講義錄을 發刊하여 書信形式에 依한 通信講義로서 各學校에 速記部를 創設케 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方法은 積極方法에 比하면 그 成果가 너무나 微微할 것임은 明若觀火之事이며 이亦是豫算問題의 難點은 그대로 宿題로 남게 될 것이다.

어쨋든 ①의 方法이나 ②의 方法의 어느것에 依하는 協會로서는 最短時日內에 最大의 努力を 積注하면서 最善의 方法을 講究하여 期必고 實踐에 옮기지 않으면 안될 緊急을 要하는 至上課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各學校에 速記部가 設立되게 되면 現在 이웃나라인 日本에서 盛行되고 있는 各地方單位(道) 라든가 또는 中央에서 全國規模의 個人戰團體戰의 學生速記競技大會를 定期적으로 (1年에 1回乃至 2回) 開催하게 된다면 學生相互間에 또는 各學校間에 競爭意識을 誘發시키게 됨은 必至의 事實로서 速記의 普及은 急進의 으로 展開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注意해야 할 점은 이 學生速記競技大會는 그 運營面에 있어 特別한 留意와相當한 研究를 必要로 한다는 事實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學生速記競技大會는 既成速記人の 競技大會와는 그趣旨에 있어 根本의 으로 달리해야 할것이기 때문이다. 既成速記人競技大會는 選手各者の 實力面의 優劣를 판가름하여 優秀한 速記士를 發掘하는데 그目的이 있으나 이 學生競技大會에서는 上記의 目的보다는 도리어 學生層에 速記를 普及시키는 하나의手段이라는에 積極的인 目的을 두어야 할것이다. 萬若에 이 學生速記競技大會마저도 既存했는 大會와 같은 規制를 받게 한다면 적어도 앞으로 2年内에는 學生層에서 選手가 登場할 수 없게 될 뿐더러 그 數에 있어서도 顯著하게 減少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學生速記競技大會는 어디까지나 初學者에서 부터 完全速記士가 되기까지의 中間過程을 지루하지 않고 激味있게 習得해

(47頁 下段으로 繼續)

◇ 르 포 ◇

第1回 速記講習에 關한 綜合設問의 分析



이 資料는 1967年 1月 30日부터 同年 2月 20日까지 3週間に 걸쳐 大韓速記協會 創立記念 첫 事業으로 同協會主催 東邦速記院式이 主管한 第1回 無料速記公開 講習을 마친 屢修生中 224名(男子 132名 女子 92名)을 對象으로 하여 앞으로도 徹績된 公開講習會에서 是正되어야 할 點 등 여러가지 參考資料를 얻고자 協會 事業部에서 行한 綜合設問에 關한 分析이다. 이 設問을 通해서 가장 特記할 만한 것은 受講動機에 있어 速記學院에 在學中인 學生들과는 그 目的을 根本의 으로 달리하였다는 事實이다. 即 速記學院에 入學하는 學生들의 受講動機는 9職0%以上이 業速記士가 되기 위해서 또는 入隊後 軍行政技術兵(速記兵)이 되기 위해서라는 뚜렷한 目的意識이 있었음에 反하여 이번 受講生들에게서는 이 點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刮目할 만한 事實로서 協會側에 좋은 研究課題을 提供해 준 것이라고 본다. 以上 設問順에 따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速記講習을 받게 된 動機는 무엇인가.
- ㄱ. 速記를 알기 위해서 53.6%(男子 66名 女子 54名)
- ㄴ. 노ート 筆記의 도움을 위해서 27.2%(男子 41名 女子 20名)
- ㄷ. 速記士가 되기 위해서 4%(男子 8名 女子 7名)
- ㄹ. 好奇心에서 15.2%(男子 17名 女子 17名)

◇ 分析=「速記를 알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率로 나타났는데 이는 速記에 대한 PR이 全혀 안되어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同時에 適當한 普及運動만 展開한다면相當한 成果를 얻을 수 있음을 暗示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PR과 普及의 末治은 우리나라 速記歷史의 日淺함과 諸般社會의 與件에도 그 原因이 있겠으

李 康 善

나 速記人들의 보다 積極的인 普及運動의 實踐이 切實히 要望되어 각 法式이 하루바삐 現在의 冬眠狀態에서 깨어나 奮發再起하여 時急한 増成機關設立에의 注力이 아쉽다.

「노ート 筆記의 도움을 위해서」가 27%를 占하고 있음은 興味있는 일로서 現大學生들이 平常時의 學校筆記에서 보다 能率的인 筆記方法을 얼마나 欲望하여 찾는가를 엿 볼수가 있다. 각 法式의 學生筆記用速記法도 研究해 볼 만하다고 본다.

「好奇心에서」가 15%인 것은 過去에 어떤 速記冊子를 通해서거나 또는 速記하는 場面의 目擊等에서 오는 新奇함에 關心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번 機會를 利用한 것이 아닌가 解釋된다. 이런 面에서 볼때 速記 PR을 위한 列行物이 全無하였음을 憶嘆하지 않을 수 없는 現時點에서 이번의 『速記文化』誌의 刊行은 그意義가 자못 크다 아니할 수 없다.

가장 低率의 4%인 「速記士가 되기 위해서」는 當然한 踏趨로 이번 講習의 根本趣旨가 速記士養成이 아닌 大衆普及講習이었음을 立證한 것이라 하겠다.

2. 3週間의 期間을 어떻게 보는가?

- ㄱ. 길다 0.5%(男子 1名 女子 2名)
- ㄴ. 짧다 66.1%(男子 82名 女子 65名)
- ㄷ. 適當하다 33.4%(男子 48名 女子 27名)

◇ 分析=가장 높은 率인 「짧다」는 講習過程에서 完全히 興味와 趣味를 느끼고 즐며 배웠으면 하는 慾求不足을 表示한 것으로 보이며

「適當하다」의 33.4%는 이번 普及講習의 趣旨를 잘 理解한 것으로 본다. 「길다」는 0.5%밖에 되지 않음으로 論及할 것이 없다.

3. 速記를 배워보니 어떠한가.

- ㄱ. 어렵다 18.7%(男子 17名 女子 17名)
- ㄴ. 쉽다 4%(男子 4名 女子 5名)
- ㄷ. 할만하다 77.3%(男子 111名 女子 62名)

◇ 分析=「할만하다」가 가장 높은 率을 타내나고 있는데 이는 처음 生覺한것 보다는 악상 배워보니 意外로 쉬웠다는 것으로 解釋되며速記는 머리 좋은 생각한 사람만이 배울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 같았다. 이런 点 많은 啓蒙과 宣傳이 必要하다고 본다. 各 法式에 따라 3週間의 進度 및 教授法이 다르겠지만 이번 主管法式의 짜임새 있는 進度計劃이奏效할 것으로 보인다.

18.7%인 「어렵다」는 모든 學術分野講習成果에서 그렇드시 百%의 目的達成일 수는 簡다는 必然의 現象이 아닌가 생각되나 좀 더容易하게 배울 수 있는 速記에의 改善研究에繼續努力하여야 할 餘地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으며

4%의 「쉽다」는 정말 잘 消化하고난 「쉽다」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4. 지금까지 배운것을 어떻게 보는가?

- ㄱ. 도움이 되겠다 84.8%(男子 117名 女子 73名)
- ㄴ. 도움이 안되겠다 2.7%(男子 3名 女子 3名)
- ㄷ. 잘 모르겠다 12.5%(男子 12名 女子 16名)

◇ 分析=이번 講習의 總決算이라 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다」가 85%로 나타난 것은 主催한인

協會立場에서 보나 主管한 東邦速記法學의 立場에서 보거나 매우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비록 3週間이라는 짧은期間이었지만 이번 講習이 學校筆記에 實用될 수 있다는 것을 實證해 준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 講習內容이充實을 期頼하고 自負한다.

「잘 모르겠다」의 12.5%는 制限된 짧은 時間關係로各自의 練習, 復習의 不足에서 오는不安定한 心理狀態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

「도움이 안되겠다」가 2.7%를 보여준 것은前項의 「어렵다」가 18.7%인 것과 比較하여 볼때 이번 成果가 成功의 있음을 肯定해주 는 또 하나의 反證으로 보아 無妨할 것이다.

以上 簡單히 各 設問에 對해 分析해 보았다. 그으로 이번 講習生의 性分을 다음과 같이 附記해 둔다.

職業別	男子	女子	計
一般公・事務員	28名	22名	42名
記 著	3名		3名
아나운서	1名		1名
大學生	86名	58名	144名
高校生	9名	7名	16名
無 載	3名	5名	8名
其 他	2名		2名
合 計	132名	92名	224名

(東邦速記學院院長)

(45頁에서 繼續)

나갈수 있는 同時 은근히 競爭心을 일으키게 하는 普及과 向上을 圖謀하는데 그 뜻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大會에서도 級數를 上級 中級·下級의 三種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이며 速度는 上級이 200~250字, 中級이 125字~175字 下級이 75~125로 하는 것이 適當할 것이며 競技時間도 大幅 短縮시켜 2분이나 길어도 3分內로 끝쳐야 할 것이다.

끝으로 筵者가 構想하고 있는 學生速記 競技 大會의 競技規則를 다음에 적어본다

個人戰 (2分間)

上 級	200 字	225 字	250 字
中 級	125 字	150 字	175 字
下 級	75 字	100 字	125 字

團體戰

- (1) 學校別로 3名을 1組로 하되 몇組라도 參加할 수 있다.
- (2) 速度는 1分間に 200字로 2分間
- (3) 反文은 1組에서 1枚로 하되組中의 3人의 分擔量은 自由

(本協會 副會長·東邦速記學院 院長)



A P U
 總 會 點 描


★ APU와 速記士

1966年 9月 2日부터 7일까지 6日間 Walker Hill에서 第2次 APU總會가 開催됨에 따라 APU憲章第10條III 및 第14條에 依據 우리나라國會速記士들도 事務局의 一員으로 Walker Hill Liman House에 投宿迅速한 事務處理作業에着手해 되었다.

國際會議에 國會速記士가 大量 參與하는 일은 1655年 4月 當時 國會速記士인 柳虎龍 李柱範氏(現國會交通委事務官·現韓國銀行議事課長)가 卞榮泰氏 梁裕燦氏等과 함께 Geneva國際會議에 隨行한 以後 처음 있는 일이었다.

APU憲章 第2條「本聯盟은 完全한 自由와真正한 民主主義를 達成維持함으로서 亞細亞에恒久의 平和와 繁榮을 招來함을 目的으로 한다」라는 이렇게 遠大하고 重要한 目的을 가지고 亞細亞各國代表가 參席하여 討議하는 會議에 그記錄을 달았다는 것은 꽤 보람있고 豪邁한 일이어서 執務에 一毫의 疏忽도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緊張한 우리였다.

一行의 構成은 金鎮基 國會速記課 第1係長을 班長으로 한 17名과 10餘名의 打字員 그리고 10餘名의 英文速記士도 包含되었다.

★ 을빼미 事務

우리 記錄班員은 當日速記錄이翌日午前會議時に 配付되어야 함으로 낮에는 會議에 參席記錄하고 夜間に 反文하여 打字員에게 넘겨 校正印刷까지의 過程을 마치자면 밤을 교박 지새우는 수 밖에 없었다.

이아말로 을빼미式 激務……그러나 16名의 國會速記士와 編輯職員以外엔 거의 가美女들(?)一色이었으므로 疲勞를 모르고 能率있게 해 치울 수 있는 事務分量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Y 生

英文速記士 아가씨들은 그들自身이 發言時間의 3倍乃至 4倍면 反文(速記文字를 英語文으로 번역하는 것)할 수 있다는 豪言과는 달리 發言時間의 7倍乃至 8倍가 所要되는 우리 國文速記士들의 速記錄完成時間과는 比較도 되지 않는 不振한 事務處理였다. 筆者が 살짝 그들의 office로 가 봤더니 英文速記士 아가씨, 英文 typewriter·錄音器, 그리고 通譯등 4位各體가 되어 나오는 소리가 不協和音을 이루고 있었다. 英語實力이나 英文速記實力은 문제 外겠지만… 實務經驗의 不足에서 오는 것만은 不認할 수 없는 光景이었다.

勿論 個中에는 分間 135單語를 速記할 수 있다는 美國 아가씨도 있었다. 이 美女(?)는 원손잡이로서 實務할 때는 바른 손으로 써 나가다가 줄을 바꾸어 쓸 때는 바른 손으로 원손을 탁! 쳐서 원쪽으로 옮겨가는 妙技를 發揮하여 모두들 신기하게 여겼다.

★ 通譯과 「이어폰」

本總會에서는 國際會議의 慣例에 따라 同時通譯을 韓國語 英語 佛語 日本語 및 中國語로 하게 되었으며 이 中 韓國語通譯이나 韓國代表의 發言을 速記하는 일이 國文速記士들의 主任務였다. 그런데 우리는 通譯의 創作力(?)에 의한 要略通譯에 感歎해 마지않는 바였으나 國文速記士들中 英語나 日語에 實力 있는 사람들은 直接 翻譯速記하는 飛技까지 駕使하는例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方向에 따라 소리의 強弱이 심한 「이어 폰」을 들고 써듬해 가면서 記錄을 하느라 애를 태웠는데 姓名도 밝히지 않은 V國 議員의 發言이 끝난 후 그 V國 議員에게 가서 비약한 英語로 姓銜을 여주니 그분은 佛語로 유창하게 「……」? 하는 수 없이 그분의 名札을 믿당할 정도로 눈여겨 볼 수

밖에 없는 失禮를 犯하고 말았다.

代表議員들이며 發言하실 땐 제발 姓術이나
밝혀 주십시오.....

9月 5日 經濟分科委員會에서 委員長 U氏, 한
참 議事進行에 關해 發言하였는데도 「이어폰」은
점점... 무료히 通譯을 바로보는 速記士에게 R議
員 「저사람 뭐라고 말하는 거야?」速記士들 눈
만 겹벼겹벼 할 수 밖에.....

後에 「그분의 英語發言은 「스페인」語인지 佛
語인지 여하튼 분간기 어려워 진땀했다」는 通譯
의 解明이고 보면 錄取를 풀어본 英文速記士
가씨들의 苦衷은 同情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 비와 速記原文

總會期間中 繼續 비가 내리어 main Building
과 事務室 겸 宿所인 Liman House 사이를 往來
하는데 雨이나 神經을 썼다. taxi가 있기는 하
나 美女速記士들에게 讓步하는 美德을 지닌 處
地이기에 차례 오기가 힘들었으며, 原文을 愛人
인 양 가슴속에 간직하고 鋪道를 배리는 빗줄기를
避け 가노라면 후줄근히 젖어오는 바지속에서
파스한 體溫을 느끼며 原文의 安全運搬에 滿足
하면 우리였다. 이를 보고 웃음 짓던 Walker
Hill 從業員들——이들은 하나 같이 親切하고 상
냥스러웠으며 英語會話能力도 대단하였다. 깨끗
한 外貌에 好感이 안 갈 수 없었지만 언젠가 洋食
料理 食事後의 計算은 꽤 불만한 「코스트」였다.

× × ×

3月 7日 APU總會는 亞細亞의 繁榮과 平和
라는 APU의 根本精神이 점점 더 크게 開花되
기를 다시 한번 祈願한다는 要旨의 閉會辭(總
會議長 李孝祥)로서 幕을 내리게 되고 을폐미
勤務도 끝이 났다. 이어 우리一行은 吉基祥委員
局長으로부터 “大過없이 치운 事務處理에 感謝
하다”는 모처럼의 讀辭를 듣고 보니 「記錄報國」
이라는 李孝祥議長의 指毫가 想起되어 새삼 本
職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事實 國文速記士를 必要로 하는 國際會議는
극히 드물고 이번 APU總會外에 亞細亞反共聯
盟會議等 우리 나라가 主催하는 國際會議程度에
서 그친다.

이는 言語의 限界로 因한 것이며 本APU總
會에의 參與도 同憲章 第14條 第2項 「…本聯盟
의 文書는 모든 會議用語(開催地의 國語 및 英
語)로 記載한다」에 依하여 그 參與가 可能한 것
이었다.

그 實 이번 總會를 通하여 느낀 것은 英文速
記術까지 習得하고 싶은 衝動이 있다. 이는 筆者
만의 생각일 것이다. 其外 速記事務의 能率化와
迅速을 위하여 于先 第1次의으로 本會議會議錄
을 除外한 分科委員會 會議錄은 우리도 한글 化
하여 type writer로 反文했으면 하는 것이다.

英文速記에 있어서 type writer에 의한 反文
時間이 發言時間의 3倍밖에 所要되지 않는다는
事實은 그迅速함에 있어서 커다란 長點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가 打字로 反文한다면 이는 한글
專用에 앞장서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勿論 이에 대한 是非는 別途로 論議할 문제겠
지만 筆者は 이 反文時間의 短縮에서 오는 利點
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다.

★ Bon voyage

말끔히 캐이버린 「하늘에 저녁 노을이 炸裂
하는 여기 옛 溫達將軍의 遺蹟이 山野에 깔린
Walker Hill을 떠날 차비를 꾸리며 힐끗 밖을
보니 푸른 숲 앞에 아동진 물방울이 水晶같았다.

(筆者 國會速記士)

現職速記士分布

(1967. 3月末現在)

國會事務處	82名
青瓦臺	1名
政府各部處	11名
軍關係	20名
地方自治團體	2名
企業體	7名
金融機關	3名
海難審判委, 其他	11名
計	137名

(本協會에 登錄된 分에 限替)

外國速記界現況

(1) 日本篇

梁 源 龍



—速記士의 職別報酬現況을 들어본다—

그동안 宣傳部에서는 世界各國의 速記士職別 및 報酬現況에 對해서 資料를 蒐集하고 있는바 現在까지 入手된 資料에 依하여 그 現況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日本은 東洋에서 세일 먼저 速記學을 導入한 나라로써 70餘年的 歷史를 자랑하고 있을뿐 만아니라 우리나라 速記에도 影響을 준 早稻田式 中根式 등은 日本速記界의 祖先로서 君臨해온 것이다.

日本速記協會

1920年 5月 17日 任意團體로서 發足된 日本速記協會는 많은 難題과 波瀾을 겪음으로서 長運의 發展을 거듭, 1965年 10月 21일에는 從來의 任意團體로부터 社團法人으로 發展함과 동시에 盛大한 發會式도 가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日本國會인 衆·參·兩院의 事務局의 協助도 빌어 쓰고 있던 日本速記協會 事務所도 따로이 獨立된 事務所를 設置하여 하나의 完全한 獨立된 法人으로서 發足하게 되었다.

또한 日本速記協會 事業의 하나인 速記技能檢定試驗은 日本에 있어서 唯一한 權威있는 檢定試驗으로서 中央·地方을 不問, 國家機關에서도 速記士技術 資格認定의 基準으로 삼고 있으며, 日本 國會兩院의 事務局에서 行하는 速記者採用試驗의 受驗資格에 있어서도 日本速記協會의 檢定試驗 第一級合格者以上의 實力者라야만 應試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官費國家養成所인 衆·參議院 速記者養成所의 學生도 在學中에 이 資格을 取得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衆·參議院 速記者 採用試驗은 公開試驗이기 때문에 有資格者는 누구나 應試할 수 있으나 上記 一級인 十分間 一千二百字 許容失點 2%로서는 衆·參議院의 速記者로서는 未及하기 때문에 三千五百字程度의 試驗이 行하여지고 있어서 참으로 高度의 實力가 가진 사람이 아니면 合格할 수 없고 最近에는 私設學院 出身 應募者の 合格者가 나오지 않는 實情에 있다.

日本 衆議院 速記者의 職別報酬及 一般職과의 比較

速記者로서 採用되면 速記士補에 任하고 速記職給料表 別表의 5等級 2號俸을 適用 1年間의 實地訓練을 거친後 速記士昇格試驗을 行하여 그 合格者는 4等級 1號俸을 適用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3年間의 實務經驗을 거친後 主任速記士 昇格試驗을 行하여 그 合格者는 3等級2號俸으로 올라간다. 이후 계속 經歷을 쌓아 初級管理技術을 修得한 者로 認定받으면 速記副監督으로 登用, 또한 中級管理技術을 修得했다고 認定받는 者中에서 速記監督으로 昇格시켜 年功에 따라서 速記職給料表의 最高에 까지 給與를 支給하고 있으며 速記監督中에서 適格者를 行政職으로 轉換 課長으로 까지 登用시키고 있다.

全國 速記者 人員數 및 法式別 比率

法院從事 速타이프 取扱速記者가 6百餘名이 있고 手筆速記者가 3千餘名이 있는바 이들의 法式比率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衆議員式	14.9%	參議員式	14.1%	速타이프式(裁判所)	18%
早稻田式	19.4%	中根式	14.6%	態崎式	4.8%
田鎗式	3.1%	伊式	2.4%	山根式	1.4%
日速研式	0.4%	其他	7%		

(流波式, 毛利國字式, 岩村式, 木村式, 丸山式 其他 60餘種)

資料

日本國會(衆議院) 速記職 行政職 級別對比表

等級 號俸	速 記 職					
	一 等 級 圓 額	二 等 級 ·	三 等 級 ·	四 等 級 ·	五 等 級 ·	六 等 級 ·
1	一 圓	一 圓	一 圓	25,700	22,100	18,700
2	55,300	47,700	35,800	27,400	23,300	19,500
3	57,800	50,000	38,000	29,100	24,500	20,300
4	60,300	52,300	40,200	31,000	25,700	21,200
5	62,800	54,600	42,400	32,900	27,200	22,100
6	65,300	56,900	44,700	34,900	28,700	23,100
7	68,100	59,200	47,000	36,900	30,400	24,100
8	71,000	61,500	49,300	38,800	32,100	25,100
9	73,900	63,800	51,600	40,600	33,800	25,900
10	76,800	66,200	53,900	42,400	35,200	26,700
11	79,700	68,600	56,200	44,200	36,100	27,500
12	82,600	71,000	58,500	45,500		
13	85,500	73,400	60,100	46,800		
14	88,200	75,400	61,700	47,800		
15	90,700	77,400	63,300	48,800		
16	93,000	79,100	64,500	49,800		
17	95,000		65,700			
18	96,800		66,900			
19	98,600					

等級 號俸	行 政 職					
	一 等 級 圓 額	二 等 級 ·	三 等 級 ·	四 等 級 ·	五 等 級 ·	六 等 級 ·
1	—	—	25,700	22,100	16,600	
2	43,100	33,600	27,400	23,300	17,300	
3	45,400	35,800	29,100	24,500	18,000	
4	47,700	38,000	31,000	25,700	18,750	
5	50,000	40,200	32,900	27,200	19,500	
6	52,300	42,400	34,900	28,700	20,300	
7	54,600	44,600	36,900	30,400	21,200	
8	56,900	46,800	38,900	32,100	22,100	
9	59,200	49,000	40,900	33,800	23,100	
10	61,500	51,200	42,800	35,500	24,100	
11	63,700	53,100	44,700	37,000	25,100	
12	65,900	55,000	46,600	38,500	26,100	
13	68,100	56,900	48,500	40,000	27,200	
14	70,300	58,200	49,800	40,900	28,300	
15	72,300	59,500	51,100	41,800	29,100	
16	74,300	60,500	52,100		29,800	
17	76,000	61,500	53,100		30,500	
18	77,700	62,500	54,100			
19		63,500	55,100			

速記의 本質과

——養成問題에 關한 小考

李 東 根

1. 速記의 本質

〈言語와 文字〉 사람들은 말과 몸짓으로自己意思를 表示해 오다가, 文字를 갖게된 然後에야 비로서 文化上으로 큰 前進을 보게 되었다. 이는 言語(말)의 缺點인 ①멀리 到達치 못함 ②持續性이 없음—의 두가지를補完하였기 때문이다.

電波應用이 極度로 發達한 今日, 上記 ①②의 問題도 “라디오”나 錄音機로 어느程度 예꾸어지기는 하였으나, 言語가 갖는 本質的인 缺點은依然히 남았다고 할 것이다.

文字는 말과 같은 意思傳達의 手段으로서의 用途를 갖고 있으므로, 音聲이 聽覺을 相對로 한것이라면, 文字는 視覺을 相對로 한 記號에 依한 意思傳達의 方式이라 할수있다.

本來 文字는 이와같이 音聲의 缺陷을 补完하기 為하여 發明된것임으로 을바른 記號만 使用하게 된다면 그 目的是達成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音聲을 傳할려면, 相互間에 一定한 約束을 正確하게 지키기만 하면 足한것으로 그 約束이 複雜한 것이나 또는 簡單한 것이나 하는것은 別問題였다. 이와같이 해서 世界에는 各樣各色의 文字가 生겨, 各己의 文字圈을 이룩하였다 이렇게해서 文字를 使用해 오는 가운데 人間들은 그의 不合理함을 깨닫기始作하여 改良을 거듭하는 가운데 今日에 이른것이다. 이 不合理是正의 焦點은 複雜한것을 簡略하게 하고, 둘째 우리성이 있는것을 改良하는데 있었다.

이런 點에서 볼때 우리가 使用하고 있는 漢字는 複雜하기가 그지 없는것으로, 그것은 漢字의 成立이 “音”을 表記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것이 아니고, “意”(뜻)를 表示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文字의 簡素化〉 文字가 普及되고, 文字를 쓰

는 機會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겨우 그의複雜性을 問題삼기始作했으며 여러가지의 改良을 試圖하였다.

漢字도 當時의 大篆의 複雜함에서 부터 漸次로 簡略化되어, 唐代에 이르러 비로서 楷書의 發達에서 오는 字形의統一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中國에서는 尚속도 그 簡素化가 繼續되고 있는 中이며, 우리나라에서도 教育漢字 또는 常用漢字라 이를하여 複雜한 漢字의 使用을 可及의 으로 制限하고 있고 더욱이 近者에 이르서는 文教部에서 漢字體의 簡略化(略字化)까지도 試圖中에 있는것이다. 이것은 文字를 普及시켜 文化向上의 한 手段으로서 取해지는 措置이기는 하나 一面 書字活動의 複雜性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人間의 知惠가 하나의 底流를 이루고 있음을 否認치 못할것이다.

長時間의 筆記, 語速(言語의 速度)과 併行됨을 要하는 筆記等 여러가지 難點을 隨伴한 書字活動의 必要가 增加됨에 따라 우리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쓰는 勞動」을 하는데 온갖 精力과 時間을 提供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速記의 特徵〉 이와같은 空間을 예꾸기 為하여 言語의 傳達이라는 文字 本來의 目的에서 떠나 言語速度와 맞추어서 筆記를 容易하게 하기 為하여 全히 다른 觀點에서 생각해 낸것이 速記인 것이다. 따라서 速記의 記號는 ①쓰기 쉽고 ②빨리 쓸수있게 하고 ③記憶하기 쉬워야 하고 ④틀리지 않고, 그리고 빨리 音聲의 세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速記學에서는 韻文이라함)考案되어 있다.

〈言語와 速記〉 그러면 사람의 言語에 適合한 記號란 어떤것일까, 그것은 사람의 말의 速度와同時に 音이 記錄될 수 있음을 最底의 要件으로 하고, 여기에 알맞는 符號라면 可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實際로 이와같이 簡潔한 記號란 그리 많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速記符號는 위의 要件을 充足시키기 위한 考慮가 必然的으로 加해지게 마련이다. 그 考慮란 「記憶에 最適한 省略」이라는 形態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速記符號 「-」는 「가」라는 音을 表하는 것이나 이 길이를 約 30mm로 길게하여 「價格」이라고 읽는것이 그것이다 (東邦法式)이와같이 하여 發言을 記錄하고, 그것을 말한 그대로 普通文字로 다시 쓰는 行為— 이것을 速記라 한다.

그러면 普通 사람들이 말하는 言語판, 大體 어느 程度의 速度를 가지는 것일까, 여기에는 "느린 말" "아주 빠른 말"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아주 느린 말을 漢字가 쉬인 우리한글로 다시 옮겨 있을 경우, 10分間에 130~1700字前後가 된다. 이것을 速度로 하여 速度의 種類를 一覽表로 作成하여 보면

速度 1 (1300~1700)

아주 느린 말

速度 2 (1700~2000)

썩 느린 말

速度 3 (2000~2200)

普通 사람의 會話

速度 4 (23000~2500)

普通이지만 약간 빠른感

速度 5 (2500~2800)

좀 빠른感

速度 6 (2800~3000)

썩 빠른 말

速度 7 (3000~3500)

아주 빠른말

以上의 일곱가지로 大別 된다.

〈筆記能力〉 上記와같은 言語速度에 對해 우리가 日常時 使用하는 文字(한글·漢字)는 筆記速度面에서 본때 매우 뒤떨어져있다. 이것은 複雜性이 그 큰 原因으로서, 아무리 亂暴하게 빨리 간쳐 쓴다해도 分間換算 겨우 60~80字를 넘을 수 없다. 설사 그以上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長時間繼續하여 維持하기란到底히 不可能한 것이다. 이것을 解決하기 위한 符號가 곧 「速記符號」 또는 「速記文字」(基本文字)라고 불리어지는 것으로 1分間에 250程度의 速度로 筆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符號는 單劃의 線을 1音 1符號

로 합을 原則으로 하고 (東邦式)다시 여기에 다른 여러가지種類의 記憶符號(省略法)를 驅使함으로서 1分間에 300~350이라는 "스피ード를" 갖는다 이것이 곧速記이다.

2. 우리나라 速記 略史와 各養成所의 趨移 및 現況

〈우리나라 速記略史〉 여기에서 우리나라速記의 歷史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速記歷史는 解放前과 解放後로 나누어진다. 解放前으로는 西紀 1909年 朴如日先生을 為始하여 嚴正友 姜駿遠氏等 대 여섯분이 研究發表한바 있으나 不幸하게도 當時의 日帝抑壓政策으로 因하여 모두 發表에만 끝치고 實用普及의 헛빛을 보지 못한체 그 차취를 감추고 말았으며 (姜駿遠氏는 解放後養成所를 設立하였음) 解放後로는 다음 諸氏가 繼續 研究發表하는 盛況을 보여 주었다.

(年度別) (創案者名) (法式) (發表形式)

1935·6	姜駿遠	서울式	東亞日報
1946·6	張基泰	逸波式	單行本
1948·2	李東根	東邦式	單行本 (速記學講義)
1948·5	朴·松	朝鮮式	學生新聞
1956·3	南相天	南天式	單行本
1957·	金天漢	高麗式	講義錄

上記外에도 "中央式"의 朴寅泰, "世鍾式"의 金世鍾氏가 있었으나 아깝게도 著述이 없었다. 그러나 上記 諸法式中에서 現在 각分野에서 實用되고 있는 法式으로서는 "高麗式" "逸波式" "서울式" "韓國式" "世鍾式" 그리고 筆者가 創案한 "東邦式"等에 지나지 않는다.

위의 略史를 通해서 볼때 우리나라 速記歷史는 60年이라는 比較的 긴 年輪을 갖기는 하였으나 實際面에서 活用段階인 本軌道로 옮겨진 것은解放後의 일임으로 우리나라 速記의 中興期는解放後로 보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實質적인 速記歷史는 不過 20年이라는 日淺한歴史밖에 되지 않는다.

〈各養成所의 趨移와 現況〉 解放을 契機로俄然活氣를 퍼기 始作한 速記界는 創案者마다 自己流의 法式을 研究發表한 뒤로 이에 各己自己法式의 普及을 為한 養成所設立에 努力하여 "서울式"의 姜駿遠氏가 서울·東大門區 安岩洞에 「서

音式速記研究所」를 「逸波式」의 張基泰氏가 鐘路區鍾路3街에 「逸波式速記士養成所」를 高麗式의 金天漢氏가 中區乙支路3街에 「高麗速記學院」을 「中央式」의 朴寅泰氏가 中區乙支路5街에 「中央速記學院」 「朝鮮式」(現 韓國式)의 朴松氏가 中區南大門路에 「朝鮮速記學院」을 그리고 筆者の 「東邦式」이 中區乙支路4街에 「東邦速記專門學院」을 設立하는 等 각各後輩養成에 온갖 精力을 기우며 오던中 6·25라는 不意의 暗焦에 부디쳐 각養成所는 全面廢鎖라는 悲運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高麗式」의 金天漢氏와 「東邦式」의 筆者만은 動亂中의 諸般險路를 무릅쓰고 釜山과 大邱에서 各己 學院의 看板을 다시 걸고 再起의 旗幟을 올렸으나 時局의 不安定에서 오는當時의 諸般社會與件은 두 學院에 极甚한 運營難이라는 質物만을 안겨 주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두 學院은 不得己 從前의 速記士養成이라는 長期教育課程에서 速記普及이라는 短期講習課程으로 後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는 反對로 「逸波式」의 張基泰氏는 戰時 國會가 釜山에서 열리게 된것을 機會로 國會當局의 好意와 協助를 얻어 國會內에 國費(國會豫算)로된 大韓速記學校를 創設하는데 成功하였다. 이 大韓速記學校는 우리나라 速記界에 많은 功獻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反面에 今日의 우리나라 速記界의 不振相을 보이게 한 큰 要因이 되기도 한 아이로 남한存在이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6·25動亂은 逸波式을 除外한 餘他法式에게는 完全廢門乃至 窒息死의寸前狀態에까지 물어넣는데充分하였으며, 거기에다 逸波式마저도 4·19後의 新政府에 依하여 废鎖되고보니 우리나라에는 겨우 두 個의 學院만이 남게되는 暗譖相을 露呈시켰고 그나마도 高麗速記學院까지, 繼續되는 出血의 運營을 持續할길없이 끝내는 去年가을 废門하고야 말았다. 이의한 結果現在로는 東邦速記學院만이 우리나라 唯一한 速記士養成機關으로 남게되었으며, 우리나라 速記界復興을 為하여 孤軍奮斗하고 있는 닥한 實情이다.

3. 새로운 養成方案의 模索

〈養成機關全滅의 原因〉이 問題는 위에서도 그概略이 既述된바 있으나 여기에 이를 要約해보면 ① 다른 學術分野에 比해歷史가 日淺한 速記

界가 미처 그 基盤이 잡히기도 前에 6·25, 4·19 5·16等 時·政局의 큰 變亂에서 받은 影響, ② 速記에 對한 國家政策(特히 文教施策)의 缺如 ③ 國會速記學校(大韓速記學校)의 存立에서 오는 餘波 ④各經營者의 財政難等을 들수있다.

上記原因中에서 ①의 境遇는 2에서 既述되었음으로 여기서는 論外로 하고 ②는 外國과 같이 政府에서 特히 文教當局이 政策的으로 速記暢達을 꾀하였드라면 오늘날의 速記界는 全히 그 樣相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 問題는 晚時之 嘴의 感은 있으나 이제라도 文教部는 外國의 例를 參考로하여 速記에 對한 認識을 새로이하고 于先各 實業學校에서 나마 速記를 必需科目으로 採擇케 하여 이의 普及에 努力하여야 할것이고 法務部나 法制處에서는 各級法院, 檢察廳書記, 法律事務所書記, 또는 各搜查機關 및 特殊機關要員等資格規定에서 「速記士라야 한다」는 法的規制를 試圖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政策의 缺如는 該當部處의 事務能率을 低下시키는 同時 各分野의 速記士進出이라는 길을 막는 結果가 되었다. ③의 問題는 위에서도 若干言及된바 있으나 大韓速記學校의 存在로 우리 나라에 優秀한 速記士(大部分이 現 國會速記士로 在職中임)를 多數養成시킨 功은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當時의 情勢(今日도 마찬가지지만)로 보아 우리나라 速記士의 唯一한 進出舞臺로 알려진 國會를 어느 1個法式이 長期的으로 獨占한 結果는 自動的으로 餘他法式의 委縮을 招來하는 副作用가 發生을 하여 各養成所의 短命을 促求하게 되었다. ④이 問題는 다른 學術分野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 文化事業의 共通의 特有性이라고 할 수 있는 現象으로서 速記普及이라는 热意 하나만으로 初創期의 速記界를 開拓해보겠다는 信念만을 앞세웠을뿐, 小規模이기는 하나 速記士養成所도 肃然한 一種의 經營體이고 보면 計數의 經理面에 너무 어두웠다는 것이 또한 큰 要因의 하나였다.

〈앞으로의 各養成所가 지녀야 할 姿勢〉各法式은 協會發足을 契機로 心機一轉하여 火急히 養成機關再建에 ippo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세워질 養成所의 性格은 過去와 같이 各法式別로의 獨立體로 設立되는것과 그렇지 않으면 協會가 單一設立者가 되어 그 안에 各法式別로된 여러 班을構成케 하는 方法의 두가지가 있을것이다. 要전에

이느 形態의 養成所가 設立되면 間에 모—든 法式은 지난날의 自己法式의 優越性을 宣傳하기 為한 手段으로서 '他法式에 對한 지나친 中傷謀略' 을 일삼던 惡習에서 大悟覺醒하여 各法式間의 競技大會를 갖는다든가, 또는 共同研究比較討論會를 갖는等 善意의 競爭을 正面으로 벌리 實質의 인 實力面에서, 正正堂하게 그 優劣을 겨루게 하는 새 氣風을 造成하는데 相互間 協力해야 할 것이다. 이러므로써, 各法式間의 研究改良은 繼續될 것이며, 落後된 우리 速記界는 다시 前進을 始作할 것이다.

〈새로운 養成方案〉 速記教育하면 반드시 專門의 速記講習所에서만 할수있고 또 速記하면 速記術을 職業으로하는 速記人에게만 必要한것이라는—一般人은 勿論이려니와 一部 既成速記人中에도 이러한 守舊의인 思考方式을 갖고있는 現實에 鑑하여 본때, 무엇보다도 累要한것은 이들에 對하여 速記는 職業速記士가 아닌 一般人에게도 각己의 日常生活周邊에서 끊임없이 活用例하면 學生들의 學校筆記에, 取材하는 記者에게, 簡單한 商業用, 또는 모—든 電話에 秘密을 要하는 日記帳에 等等—할수있다는 啓蒙普及教育이라 하겠다. 이 啓蒙·普及의 가장 接經의 方法은 亦是 感受性이 豊富하고 對象者가 많은 學生層에 파고드는 것이 効率의 아닌가 生覺된다. 왜나하면 東邦速記學院이라는 單 하나의 養成機關밖에 없는 現實下에서 速記人口의 多量生產이란 到底히 바랄수 없기 때문이다. 學生層에의 急速하고도 廣範圍한 滲透方法으로는 먼저 全國 中·高·大的 各級學校에 對한 巡迴普及講義를 施行하여 可能한限 各學校에 速記部를 新設케 하여 各學校間에 또는 各個人間에 競爭心을 誘發시킬 수 있는 各種競技大會(여기에는 微密한企劃과 用意周到한 運營을 要함)를 適切하게 갖는다면 最短時日內에 全國의으로 速記熱을 波及시킬 수 있는 同時に 速記를 習得한 學生個個人에게 있어어도 적어도 高等學校를卒業할 때에는 이미 正速記士(1分間に 300字以上記錄可能者)로서의 實力者가 되어서 바로 社會職業戰線에 突入할 수 있는 態勢가 갖추어지는 그야말로 一石二鳥의 成果를 얻우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方法은 速記界 年來의 宿願이던 速記士의 資質向上이라는 宿題도 아울로 解決되는 한便 速記習得過程의 가장 큰 缺點으로 알려진 "지루한

感을 느끼지 않고 스무—스하게 마스터 할수있는 새로운 養成方向을 提示해 주기도 하면서 急激한 速記人口의 增加를 促進해 줄 것이다.

〈結言〉 위의 새로운 養成方案을 推進시킬려면 무엇보다 既成速記人們의 積極性을 뛴 獻身的인 實踐努力이 要望된다.

이제 모—든 速記人們은 現行法上에 規定된 文教部令 第121號(63. 2. 15. 高等學校教育課程의 職業課程選擇者에게 男子 9單位 女子 6單位以上 商業課目을 開할수 있게되었음), 同第122號(63. 2. 15. 實業教育課程에서 速記가 4~6單位가 配定되었음) 다시 教育法施行令 第166號(技術學校 또는 高等技術學校에서 教育을 實施함에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科目으로 速記가 들어있음)의 實行을 無誠意한 文教部의 處事에만 期待할것이 아니라 이의 實踐達成을 為하여 各自의 力量을 總集結시켜 速記人 스스로가 爭取하겠다는 態勢를 갖추어 遷進해야 할 것이라 본다. 여기에서 만이 비로서 速記의 普及은 그 實現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有能한 速記士는 養成될 것이다.

(本協會副會長·東邦速記學院長)

(18面에서 계속)

일이라 하겠으며 이미 所定의 學歷을 가지고 速記術을 習得한 速記士에게 調書作成의 訓練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르고 合理의인 方法인 것이다. 이에서 豐出된 法廷速記士는前述한 法廷速記의 事務를 擔當하고 이 以外의 事務는 法院書記가 擔當함으로서 事務處理의迅速과 適正公平을 期할 것이며 또한 法院書記의 人間性 良心에 呼訴치 않더라도 事實記錄이 完成되어 實質上の 證據能力을 가지고 判決에 明度를 줄 것이다.

結論的으로 本人은 法院에 있어서의 法廷速記制度는 的確한 判決人權의 保護를 위해 절실히 要求되는 것이므로 하루빨리 採擇되기를 希望하며 "書記"外에 "法廷速記士"란 用語가 새로이 民事訴訟法과 刑事訴訟法 軍法會議法上에 헛별을 끝 날을 期待하는 바이다.

(國會 事務處 勤務)

速記法式展覽

<沿革>

法式紹介

姜駿遠式(俗稱· 서울式)은 32年前인 1635년 6~7兩月間에 결쳐 東亞日報紙上에 長期連載發表된 우리나라 最初의 實用法이며, 解放直後부터는 立法議院·國會에서 本格的으로 授教多數의 後進을 育出하고 年次의 溫習會에서 新案이 討議되어 公定公用하는 學風을 가진 法式이며 特徵으로는 ① 自然運筆이며 ② 基本文字에는 圓·鉤가 아니 불으로 草劃派에 屬하는 것이며 速記法의 3速의 要件 3正(易述學, 易速書, 易·速讀)에 適應되고 素材分析과 開發에 新案이 많은 法式이다.

<基本文字>

子音線은 15° 上右向인 6mm 길이
의 右卷上曲線·左卷下曲線의 直線을
먹음은 楕圓을 源圓으로 하고 그倍長에 12mm
의 大椭圓과 이에 加大한 15mm의 竹葉形椭圓으로
構成되는데 加大는 大의 一類로 보아 小椭圓 大椭圓의 兩分으로 認識하여 實際는 6線을 示差線으로
定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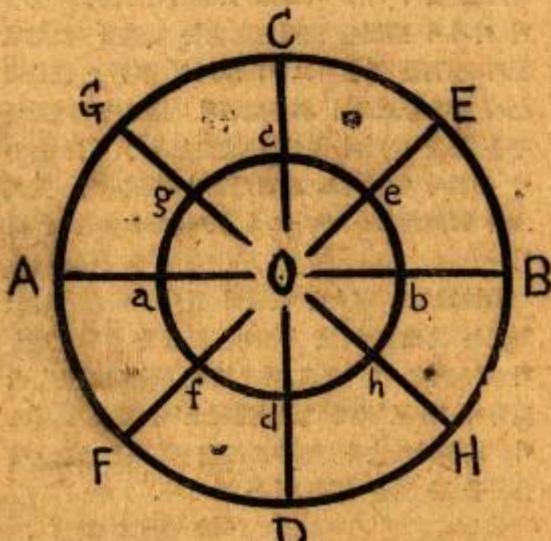
여기서 지킬 것은 小「人」對 大群大「ㄴ」과 加大「ㄹ」과는 混同될 수 없는 1:2:2.5로 하되 熟練後에

는 2와 2.5인 「ㄴ·ㄹ」「ㅂ·ㅁ」「ㅅ·ㄷ」은 各通音이니 類線으로 쓰고 읽어 아무 支障이 없는 것이다.

高麗式 速記法은 金天漢氏 創制로 1946年 完成되어 우리나라의 初創議會인 立法議院 時代로부터
創案者自身이 利用해 오던 것으로 創案者인 金天漢氏는 日帝時 와세다(早稻田)式 速記를 習得하여
日本 同盟通信社 所屬의 有能한 速記士로 活躍한 바 있다.



(分 布 圖)



日帝時 부터 우리 말 速記의 必要性을 痛感해
오던 創案者は 드디어 1954年 8.15解放과 더불어
祖國光復을 보아 高麗式 速記法(一名 金天漢式)을
世上에 내놓게 된 것이다. 그후 數次에 걸친 补正과 研究로써 오늘의 所謂 高麗式 速記法이란
名命을 보게 된 것이다.

本速記法은 大體로 總綱과 基本文字, 略記法,
文法等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紙面關係로다가 一一히 具體的으로 說明을 加할 수
있으나 基本形態와 主要 骨子에 對한 紹介를 하
므로써 速記同人們의 參考에 資하고자 한다.

【速記文字의 分出】

대체로 本法 速記文字의 分出은 左示의 分出圖
나 같은 一個의 圖을 8等分한 直徑線上에서
또는 各圓의 弧를 利用하여서 基本文字를 分出
시킨 幾何圓派에 屬하는 類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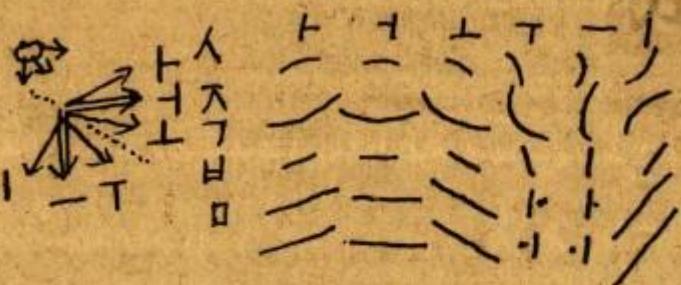
一音一筆(字) 主義를 原則으로 하되 比較的 速
記基本文字는 複雜한 感覺을 주게 된다. 基本의
原形文字는各行마다 單音 8字(ㅏ, ㅓ, ㅗ, ㅜ, —

암만 線材가 있더라도 萬一 이 通音에 類線의 制當이 없었다면 互用性이 없어 速記를 쓰고 읽지는 못 할 法式이 되었을 것이다.

9個의 主子音은 각각 副子音들인 激·硬으로 나누어 通音類線으로 쓰기인데 여기서는 补筆法을 取한다. 즉 激音은 左下向비침을 字中間에 交叉하고 硬音은 右下向비침을 字中交叉한다. 물론 熟練後는 加線을 省略하게 되는데 結局 主子音인 平音은 代表音으로서 無點인 셈이다. 「ㅌ」은 英字“t”과 같은 子音으로 追加 制定한다.

母音은 따로 線을
母音向 加하지 않고 進向學
으로 한다. 이런例外 없는 規例는
世界最初의 試案으로서 母音을 主音
主義로 하는 우리 말에서 처음成功한
것이다.

水平을 主向으로 한 上 15°와 下 1
5°의 右向群 3方向과 垂直을 主向으
로 한 右 20° 左 20°의 3方向을 合한
6方向으로 하여 ㅑ ㅕ ㅛ ㅕ ㅕ ㅕ를 除한 ㅏ
ㅓ ㅗ ㅓ ㅓ ㅓ ㅓ를 順次로 바람개비形으로 時計針들듯이 合向一單一線으로 平音 9線×6方向으로 54字가
1音節이 1線이 되어 初學者에게는 그야말로 너무 簡單해서 어리둥절하다는 第一印象을 짓는 것이다.
激·硬音 11線×6方向으로 66字를 構成하는데 頻度는 平音 80%, 激硬音 20%의 比이다. 여기에 例外로
「부끄」는 「그」字에 左點을 「무드」는 「그」字에 右點을 着기인데 大直線의 下向傾向을 막아 右向橫書
인 速記書行을 維持하게 하였다.



速記法式展覽

1, ㅑ, ㅓ, ㅗ, ㅓ, ㅓ, ㅓ重音 4字(ㅑ, ㅓ, ㅗ, ㅓ)의 12字로써 한줄로 삼았으며 각 줄의 基本 分出線은 原則的
으로 分出圖의 同一線을 利用한 것이다. 그리고 基本 文字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의 9行으로 局限시켰고 潤音文字나 激音 硬音文字 等의 基本文字는 原則的으로 原形文字(가~자)의 基
本分出線을 再活用하였다. 다만 附點位置의 如何로써 그 原形文字의 된소리 文字를 삼은 것이다.

즉 「가」行은 單音에 있어 A~B線(→)을, 重音은 G~A~F線(↙)을 創發했으며 2
나」行은 F~D~H↑線을 單音, 重音에 混用했으며 「다」行은 特히 重音을 만들지 않는 대신에 1.
法을 만들어 1法 「나」行을 F~O~E↑線, 2法을 E~O~F↖線을 利用하였다. 「라」行은 C~E~B↑線
을 利用하였으며 「마」行은 G~C~E↑線, 「바」行은 單重音 別個의 線을 利用하여 單音에 있어서는 A
~F~D↑線을, 重音을 C~G~A↖線을 利用하여 만들었다. 「사」行은 單·重音共히 E~B
~H↖線을, 母音줄인 「아」行은 그 頻度의 높음에 따라 各其 文字를 分出圖의 小內圓線을 各
各 利用하였다. 다만 重音文字만은 A~G~C↑線을 利用하여 分出시켰으며 原形文字의 글줄
인 「자」行은 單音만을 認定하였으며 「나」줄과 같이 1, 2法을 제정 1法文字는 D~H~B↑
線을, 2法文字는 B~H~D↖線을 利用하였다.

以上으로써 基本文字에서의 原形文字의 分出에 對해서는 그 概要가 說明되었는데各行마
다의 文字의 構成은 어느줄 文字나 같은 構成原則에 依해서 제정되었다.

基本文字나 略文字도 大體 그 文字는 線과 圖으로 組合되어 있는데 그 原則를 길이(長)
에 있어 5mm, 10mm, 20mm의 세 단계로 區分하여 定하였고 圖에 있는 小圓(직경 2~3
mm), 大圓(직경 5~6mm), 橢圓(長經 5~6mm)의 3種類로 定하여 利用키로 하였다. 이를 附

高麗式

姜駿遠式

불임 符號

발
침은

基本文字線과는 달리
字頭에 符號를 加하므로
불침이라고 부르며
벌써 文字와 불침은
視覺으로 別異하고 바

라서 表意의 效果化 조차 나타난다.

符號는 그自身的 方向이 있고
母字線에 몇 붙을 뿐 그範圍가 주어지지
않는다. 분자는側面은 불치기 順便한側
面即順側에 加頭符하는 原則에 依한다.

副母音重中聲인 「ㅏ ㅓ」는母音이지만 「ㅏ」
에 몇 붙는 先後音을 小鉤로 規定하고 불침
파 「ㅏ ㅓ」가 몇 붙을 때는 主·副母音表에 보
드시 副母音은 加點·加線으로 補筆法을
取하며 符號가 字間에 올 때 流筆로 올 수
있는 것은大小鉤뿐이고, 「ㅁ ㄴ」의 大圓
·小圓은 筆勢上 일그러져서 楕圓形이 되지
만 그대로 좋은 反面에 元來 大小 楕圓
인 「ㅁ · ㅇ」은 「內點」이나 「外點」으로 하고
加尾小圓 「ㄹ」은 小分離로, 加尾大圓 「ㄷ」

加시키는 것은 文尾에 附加키로 定하였고 單線그대로의 文字나 小圓附加의 文字나 大圓附加의 文字
椭圓附加의 文字列의 選定은 그 文字의 頻出度를 考慮하여 定하게 된 것이다.

即, 單音, 重音의 同列 文字는 같은 筆法과 構成을 原則으로 하여 「ㅏ, ㅓ」는 10mm의 單線으로
써 되고 「ㄱ, ㅋ」는 10mm의 單線에 다 小圓을 附加시키고 「ㅗ, ㅜ」는 10mm의 單線字尾에 다 大圓
을 몇 붙여서 되며 「ㅏ, ㅓ」는 20mm線에다가 小圓을 附加한 것으로서 「ㄱ, ㅋ」의 文字와 같은 形태
이나 길이는 2倍가 되고 그 字尾에 附加되는 小圓은 같은 小圓에 지나지 않는다. 「ㅡ」는 10mm
單線文字 字尾에 楕圓을 適宜 附加하여 만들었으며, 「ㅣ」줄은 모두 20mm單線을 利用하여 실제 「ㅏ
ㅓ」의 2倍의 길이가 되도록 하였다. 本法의 特異性은 「ㄱ, ㅋ」를 原形文字構成에 追加하여 만들은
것으로 「ㄱ」은 5mm單線을 利用하여 「ㅏ」의 切半의 길이가 되고 「ㅋ」는 「ㅓ」에다 小圓을 붙인 것으로
5mm線에 小圓을 附加시켜서 실제 「ㄱ」의 切半의 길이가 되나 小圓은 같다.

이리하여 本法의 基本文字中 原形文字를 分出 構成하였는데 그 基本文字의 字數는 實用文字 106個
의 文字가 된다. 또한 基本文字에 屬하는 발침文字는 獨單으로 소리가 나는 文字가 아닌 것으로 이
발침을 單獨으로 쓸 수는 없고 文字에 接屬 또는 附加시켜서 만들은 것이다. 또한 발침은 한글 발침
의 數文 28個의 발침을 모두 定하지는 않고 그 끝소리값(終聲音價)이 같이 나는(들리는)는 발침은 하
나의 발침으로 混用하여 쓰기로 하여서 실제 速記發침 文字는 7個로 局限하여 音價대로 筆記도록 한
것이 한글 맞춤法과 다른 點이다.

即 발침文字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個만을 쓰는데 「ㄱ」발침은 餘他의 발침 ㅋ,
ㄲ, ㅌ 등을 쓰기로 하였으며 「ㄴ」은 「ㄴ, ㄴㅎ」 등을, 「ㄹ」은 경우에 따라 「ㄹ, ㄹㅎ, ㅌ, ㅌㅎ, ㅍ, ㅍㅎ」
등을 같이 混用키로 하였고, 「ㅁ」는 「ㅁ」을, 「ㅂ」은 「ㅂ, ㅂㅎ, ㅍ, ㅍㅎ」 등을 쓰게 되고 「ㅅ」은
「ㅅ, ㅅㅎ, ㅌ, ㅌㅎ」 등을 쓰고 「ㅇ」은 混用발침은 없으나 앞으로 익숙시키면 省略키로 한 것이 特異하
다. 그러나 固有名詞, 地名 等은 混同의 열려가 있으므로 제대로 발침을 附加시키고는 있으나 一般

直線比 칭경 面橫比 正併 金鉤 橫用鉤 頸橫
小 1 1''' 1 0 ㄷ ㅇ ㅌ ㅎ ㅍ ㅎ
大 3 3''' 9 0 ㄷ ㅇ ㅌ ㅎ ㅍ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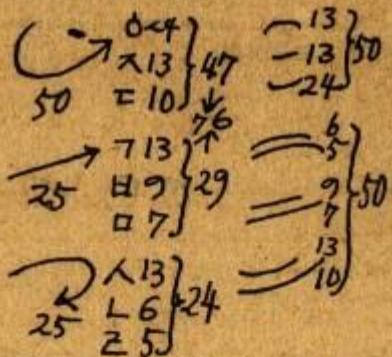
字初字間	
ㅏ	ㅓ
ㄱ	ㅓ
ㅁ	ㅓ
ㄴ	ㅓ
ㅇ	ㅓ
ㄹ	ㅓ
ㅂ	ㅓ
ㅅ	ㅓ
ㄷ	ㅓ

막가 서약 애사 리해
섬유 주점주점 仙자 고연
진서 차진증서 4중
설사 서울 헛노 뚜렷

오히려 린버들어 小交又三 處理한다.

덧붙여 母音인 「ㅏ」는 「ㅏ」에 逆側「加點」「ㅓ」는 「ㅓ」에 逆側加點, 「ㅡ」는 「ㅡ」順側에 「기」비침「ㅣ」는 「ㅣ」順側에 「고」비침으로 한다.

左卷運筆 基本文字는 狀·向 어느 面에서 나 左卷橫書가 스스로 되어나가도록 70~80%의 確率이 잡혀 있다. 以上 子音「線」의 主勢와 性向을 보면 左卷便度를 50%로 보아 「o」 24%, 「ㅅ」 13%, 「=」 10%로 左卷이 47%이며 여기에 直이 어울려 「ㄱ」 13%, 「ㅂ」 9%, 「ㅁ」 7%로서



29%, 즉 47% + 29%로 76%의 頻度가 어울려서 3/4의 두렷한 左卷劃調를 세웠고 小·大別로는 꼭小가 50% 大가 50%으로 落着, 『進向 또한 右向攝「ㅏ」30 「ㅓ」25 「ㅡ」15로 70이며 實字線은 「ㅏ」가 31 「ㅓ」가 22 「ㅡ」가 13으로 66인데 거기에 度이 右向進을 위한 反撥로서의 便更「ㅣ」向 20에 實頻度가 82% 「ㅜ·ㅡ」18%만이 左卷橫書를 阻害하고 있으나 「먹으며」 「먹어서」등의 「아이」行音語尾를의 「으어」를 不書而讀(쓰지 않고) 도 임기(하므로서) 潜影되고 마는 것이다

速記法式展覽

의으로 「o」은 省略하여도 反文에 混用되는 例가 稀少하다.

이리하여 高麗式 速記法에 있어서의 基本文字 說明은 大略 끝난 셈이다. 實記文字를 例示치 못하는 관계로 理解하기에 어려울 것 같으나 速記를 아는 이들일것으로 대충 납득이 갈것으로 안다.

〔略記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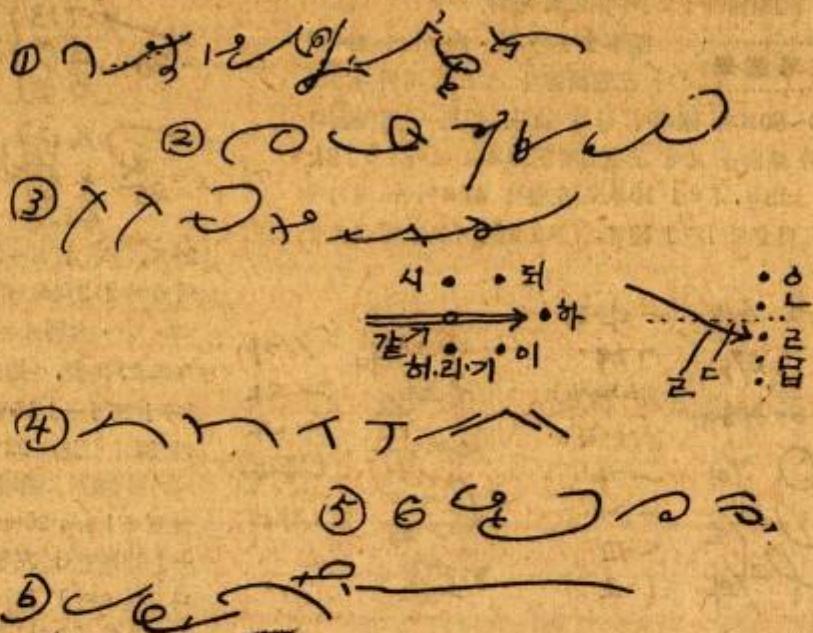
細分하여 說明 製作하자면 限이 없을 것 같아 常用文字나 略記法이나 省略法이나 其他 文法等을 통털어서 몇가지 特色이 있다는 略法式만을 여기서 製作하고 高麗式 速記法의 說明을 마치고자 한다. 略記文 法篇에서 우선하여 알아야 할것이 基本文字를 變形시켜서 만들은 基礎的인 略文字와 頻度가 많은 그리고 基本文字가 速記에 不適한 文字를 特定하여 만들은 特定文字가 있으며 또한 반침文字의 소리(音)를 活用擴大하여서 文字化한 半침活用擴大法이라든가, 또는 固有, 普通名詞이거나 꼭 略字化해야 速記 本然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라는 文字等의 略字가 있다.

勿論 上記한 變字나 特定文字나 略字나 半침文字等은 基本文字의 데 두리內에서 科學的은로 檢討分析하여 制定한것으로 習得에 容易한 方便으로 되어 있다.

以上이 初步的인 一篇에 쪽어야 할 略法篇으로 以上的 것만을 充分히 活用하여도 1分時 250字 内外는 速記할 수 있는 實力を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點位線을 活用하는 附點位置 略記法이 있는바 한字 또는 數字의 文字를 어떤 位置로써 表記하는것으로 다음에 文字가 계속되는 때에는 그 位置 附點을 省略하고 그 자리로부터 다음字를 速記하면 自動的으로 位置略法을 쓰게 되는 것이다. 要는 文字를一一히 쓰지 않고서도 文字를 反文

우리 말의 原稿 準備없이 奔放한 口述을 할 때의 主・助詞別 音節文字分比를
잡아 보면 거의 半半인데 이 찾은 助辭를 基本文字와는 다른 形樣의 符號와
最小線을 單音인 賽出助辭의 便度에 따라 決定되어 있다. 尾符하는 符號助詞는 大體로 體言助詞이
고 若干의 用言 및
兼用助詞로 區分하
였고 最小線은 모
두 用言 語尾에만
配當하고, 大體로
그 發音字의 2mm
曲線으로, 符號助
辭, 最小線助辭 모
두 主辭에 不離筆
連書하므로서 우선
全劃量의 1/3은 減
筆되는 것이다. 한
편 「려면」「거니와」
「기야」 등 複合助
詞는 符號나 最
小線助辭를 그 發
音順대로 連書하면



할 수 있다 는 略記法 中의 하나로써 本法에서 特히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活用性높은 略法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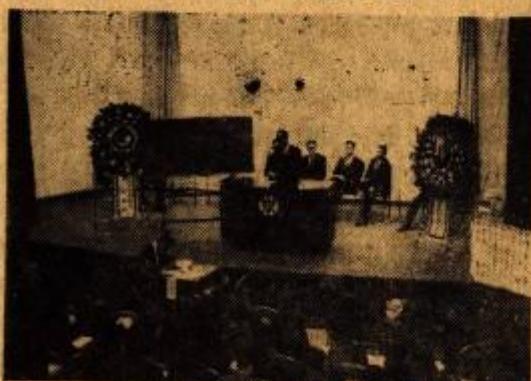
他法에도 類似한 略記法으로서 있는 것인간 하나 幾何圓派에 屬하는 本法에서 特히 많이 活用할
수 있는 法中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 밖에 두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化合시켜 基本文字 自體를 略字로 活用할 수 있는 極히 簡素化
된 文字 略字가 있는바 이는 本法을 아는 사람만이 理解가 될 수 있는 것으로 高等略字에 屬하는 것
이다. 우리 한글의 音價를 利用하여 速記法에 導入活用한 것으로各自의 才質에 따라 縱橫無盡으로
아주 널리 活用할 수 있는 妙法인 것이다.

그리고 省略線略字로 以下 省略의 경우 他法에도 흔히 있는 方法이지만 基本文字와 略字를 兼한
簡便한 省略文字가 있으며 文字構成面으로부터 創出한 楕圓化 文字라든가 深圓化 文字라든가는 特
히 發展의 希望을 蒶躇한 本法의 차량이라 할 수 있다.

以上으로 간단하게 本法速記의 構成과 速記
의 生命인 略法制定의 그 基礎的인 原理만을 紹
介하여 여러 速記同人們의 參考가 되기를 願하며
마친다.

앞으로 紙面의 力愛를 받을 수 있다면 더욱 詳
細한 實際文字의 紹介를 함으로 實效를 거두게
되기를 바라면서 맺는다.



〈第一回 公開速記講習會開會式 光景〉

되고 그 수는 650助辭에 이른다.

特 定 助 辭 이주 複音으로 된 助詞로 文例 ① “한수밖에, 自然스러워서, 그까닭에, 自己를 위해서라면, 微微하나마, 에對하고 있으니, 오기는커녕 ② 라는 것이, 폐도不拘하고, 西洋을비롯하여, 그로말이 암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것은” 외에, 때, 땅, 면서, 끼리, 때문, 보다, 부터, 처럼 등은 基本文字를 그대로 速書하고 「에」가 先行하는 「에 關하여 에 不過하. 에 比하. 에 있어서, 에 依, 에 지나지 않으」 등은 「에」를 안 쓰고도 連書하여 正讀할수 있게 하고 「것」이 先行하는 「는것, 려는것, 느냐는것, 라는것, 라는것」등도 一見하여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한편 「를 枯捨하고, 由因해서, 由하여금, 와 더부러, 고심으, 기침으, 기噜으, 도좋으, 지 않으면 안되」 등은 따로 特定하였다.

位 置 語 法 本來 그 담은 位置를 겨우 無體系하게 한개 發言을 위하여 쓰던 것을 表意의 助詞 位置로 定하여 既習한 助詞들을 그대로 順側·逆側(素材論參照)을 찾아 表意化하여 正書速讀하게 하였다. 頻出이며 語法上으로 決立的인 助辭인 「되, 하, 이, 시, 같, 허리기」의 六位置法을 一般法으로 하고 다시 位置의 特定法으로 「생각·있·없」와 「지+않·못·말」의 位置語等을 體系化하였으며, 接頭詞, 또는 冠形漢字로 規定되는 「大不否·非未·無·全·現·한·아니·안·못」들의 位置에 依한 表意化는 速記를 두렷한 表語文字로 만든 것이다.

<創立總會全貌>



縮 字 法 編字法으로는 우리 말의 半量而 替 이 語初半침이 불으며 半침頭符制를 取하면 역시 半量은 語初加符를 해야 한다는 計算이 나오지만 一切頭符는 潛影하는 法이前提되어 있으니 이는 물아불침法과 語間半침位置法에 문이다.

① 鼻音群 「ㅇㄴㅁ」의 通音불침이 前後音에 같이 올때는 前字中間에 後字頭交叉로 나타내고 (圖7) ② 破裂音群 「ㄱㅂㅅ」은 前字中間에 後字頭가 接觸만시켜 나타낸다.

略 字 僅 少 速記에 있어서 縮字法은 無時·隨時로 活用되는 것이나 語形이 固定되는 略字는 形樣에 示差가 적은 것은 禁物이고 頻出度가 없는 略字를 미리 制定하여 글자를 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本法에서는 主로 頻出代名詞, 副詞, 冠形詞, 接頭語와 若干의 名詞등을 上段·最大線·獨立符號·獨立小線에 配定하고 「아시다시피·하루빨리·누구누구할 것 없이·自他가共認하는·例를 들어 말씀하면」등 慣習語句를 略字 및 交刃法으로 處理하였다.

文例(圖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이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러분의 誠心誠意로 自己의 努力하신 結果로 생각하고 있읍니다」의 43音節을 15劃으로 썼으나 1劃 2.88音節(2中大空筆이 4小細筆이 3)로서 緩裕있게 正確히 쓰고 또 읽을수 있는 通常의 任意 速記文例이다. 여기서도 左卷→弧7. 直4. 右卷弧3으로 線勢確率이 두렷이 나타난다.

<創立總會 會長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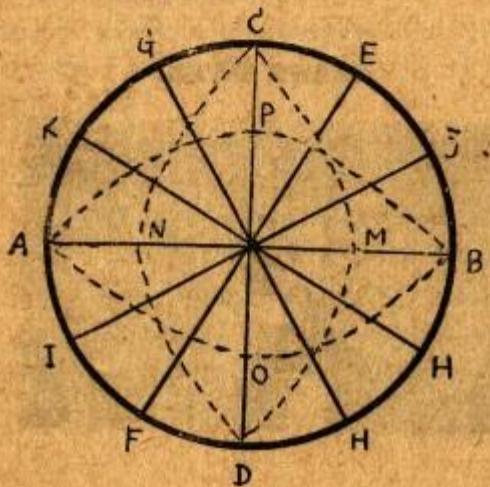
東邦式

惡夢의 日帝 36年間 우리 民族은 우리 固有文化의 基本을 이룩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을 使用하는 自由까지도 박탈 當했었으나 8.15解放과 더불어 우리의 말과 글을 펴찾게 됨에 따라 우리에게도 남의 나라 速記가 아닌 우리 民族自身의 우리 말 速記가 必要하게 되었다. 이에 뜻을 둔 東邦速記法式의 創案者 李東根先生께서는 1948년에 “解放速記”를 創案發表하시고 그 이듬해에 그 名稱을 “東邦速記”라 改稱하고 繼續研究發展시켜今日의 東邦速記法式을 完成하셨다.

東邦速記法式은 6·25事變前에는 서울 中區 乙支路4街에서, 動亂後에는 大邱市 南山洞에서, 다시 서울 收復後에는 現在 位置하는 서울 鍾路2街8番地 長安빌딩內에 本法式 고있의 普及 및 研究機關으로 “東邦速記學院”을 設立하고 오늘도 보다 優秀한 速記에의 改善을 為해서 創案者 李東根先生以下 여러 門下生들이 合心하여 研究 努力中에 있으며 現在 나날이 빨라져가는 語速에 拘碍됨이 없이 餘裕 있는 記錄에 依해 正確한 韓文을 할 수 있는 優秀한 速記法式으로서의 使命을 다 하고 있는 中이다. 以下 本法式의 構成原理와 主要한 記法을 概述고자 한다.

(1) 基本文字 他法式에 比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特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基本文字에 있어서 우리말의 音을 可能한限 完全表記

速記文字의 原形



할 수 있도록 速記文字를 構成한데에 있다. 그려므로 本法式에서는 異音을 同一文字로 表記하는例는 類似音의 同一文字表記를 除外하고는 거의 없다(여기서 말하는 類似音이란 「ㅏ」와 「ㅑ」「ㅓ」「ㅕ」와 「ㅔ」「ㅖ」等을 말한다) 이 原則를 세워으로서 初學者的理解가 容易할 수 있으며 따라서 速度가 빨라지고 反文時에도 別 번거러움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여기에 速記文字의 原形과 速記文字의 分出相 을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速記文字의 分出

ㄱ A	ㅋ B直線	ㆁ D	ㆁ B曲線
ㄴ L	ㆁ O B曲線	ㆁ A	ㆁ P曲線
ㄷ C	ㆁ E F直線	ㆁ I	ㆁ J直線
ㅌ M	ㆁ M D曲線	ㆁ C	ㆁ CMD曲線
ㅍ A	ㆁ A P B曲線	ㆁ E	ㆁ C B曲線
ㅎ A	ㆁ A D曲線	ㆁ I	ㆁ C ND曲線
ㅊ C	ㆁ C N曲線	ㆁ K	ㆁ K L直線

本法式의 基本文字(子音)는 上記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의 14字로 構成되어 있으며 여기에 「ㅏ·ㅑ·ㅓ·ㅕ·ㅓ·ㅗ·ㅛ·ㅜ·ㅠ·ㅡ·ㅣ」等 10字의 母音이 合쳐져서 140字의 平音을 構成하며 「ㅏ·ㅑ·ㅓ·ㅕ·ㅓ·ㅗ·ㅛ·ㅜ·ㅠ·ㅡ·ㅣ」等 重母音을 基本文字(子音)와 合하여 84字의 重音을 構成하고 「까·탸·먀·탸·탸」等의 모든 硬音은 各該當文字의 正側中間에다 加點함으로서 그 文字의 硬音을 表記할 수 있도록 하여 받침없는 말의 速記文字表記를 完了하였다. 여기에서 追記한 것은 上述한 84字外의 重母音은 각字의 類似音에 따르기로 한 點이다. 이러한例는 받침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本法式에서 사용하는 받침은 「ㄱ·ㄴ·ㄷ·ㅌ·ㅁ·ㅍ·ㅂ·ㆁ·ㆁ」의 일곱가지로서 其外의 받침들은 繁字為主가 아닌 發音為主로 하여 省略하여 버렸다. 모든 쌍받침 亦是 마찬가지다.

받침 例를 들면

같은………가든 이라 씁

닭………닭 이라 씁

닭이운다…닭기 운다 로 씁

母音의 表記法은 이를 길이로 区分시켜 「ㅏ·ㅑ·ㅓ·ㅕ」는 5mm, 「ㅗ·ㅛ·ㅜ·ㅠ」는 10mm, 「ㅡ·ㅣ」는 15mm,

로 定하였고

이中 「ㅏ · ㅓ · ㅜ · ㅠ」의 4字는 太線文字로
남어지는 細線文字로 또 「ㅑ · ㅕ · ㅘ · ㅙ · ㅣ」
는 文字머리에 半小圓을 붙이게 하였다.

이 半小圓이 붙는 「ㅑ · ㅓ · ㅕ · ㅙ」를 注視하
면 實際使用頻度面에서 볼 때 全히 또는 거의
use하지 않는 文字가 그 級半以上임을 알 수
있다. 即「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샤 · 차 ·
캬 · 타 · 파 · 너 · 더 · 셔 · 저 · 쳐 · 터 · 도 · 표 ·
쇼 · 죠 · 초 · 교 · 표 · 뉴 · 듀 · 류 · 냉 · 슈 · 츄 ·
쥬 · 큐 · 륜 · 큐」等 35字는 完全 死文字이고
「야 · 헤 · 겨 · 래 · 며 · 벼 · 어 · 켜 · 헤 · 고 ·
뇨 · 표 · 묘 · 요 · 표 · 표 · 규 · 류 · 유 · 휴」等 21
字는 其使用頻度가 极히 낮은 便임으로 實際面
에서 半小圓이 붙는 文字는 「ㅣ」列의 「기 · 니 ·
디 · 리 · 미 · 비 · 시 · 이 · 지 · 치 · 키 · 티 · 피 ·
히」等 14字로大幅減少됨으로 半小圓 文字는 거의
use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 重母音의 憶遇 「ㅐ · ㅔ」는 5mm 「ㅚ」는 10mm 「ㅟ」는 15mm로 全部 反側에
半小圓을 붙이게하여 重音을 表記한다.

本法式의 반침 法에서는 반침 가진 文字가 먼저 나올 時에는 7個의 반침 모두가 文字先頭에
놓이게 되어 있으며 또 모든 반침 가진 文字가 中間이나 끝에 나오면서 連綴될 때에는 7個의 반침
全部가 반침省略法에 依하여 그 形體가 없어지고 만다. 紙面의 制限으로 여기에 直接 文例를 들어 圖解치 못함을 遺憾으로 生覺한다.

以上에서 簡單히 本速記法式의 基本이 어떻게
構成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2) 略 法

그러나 上記한 基本文字만 가지고는 1分間に
2百4 · 50字밖에는 表記할 수 없음으로 적어도 1
分間に 300~350字의 發音速度를 바짐 없이 完全
速記하려면 必然的으로 略法이라는 보다 簡單한
略法을 다루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本法式의 略法을 大別하면 組織的인 것과 實利
主義의인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組織的 略法方法
이란 言語學의 根據를 가진 文字連綴의 變化法
則을 体系的으로 整理하여 만들어
진 科學的인 略法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장높은 使用頻度를 보

이고 있는 「動詞略字」를 비롯해서 「形容詞略字」
「接續詞略符」「四字略法」「最長線略字」等이 있다
또 實利主義의 略記法이란 頭腦의 直覺的인 活
動範圍을 미리 設定하여 놓고 여기에 適應한 略
字 · 略符를 만들어서 何等의 思考力を 要치 않고
도 自動的으로 손 끝이 움직여 나갈 수 있을 때
까지 暗記 練習하는 方法을 말한다. 一見 甚히
非組織의이고 非科學의인 幼稚한 方法으로 看做
되나 實際 活用面에서 볼 때에는 도리히 前者の
組織的 略記法을 凌駕할 수 있는 大端히 能率的
인 略記法이라 할 수 있다.

이 實利主義의 略記法으로는 「一般周知語省略
法」과 「簡易略符」「助詞略符」「數詞略字」「中間
略符」等이 있다. 以下 順序的으로 各略字 略符
를 要約說明한다.

A. 動詞略字

本法式이 가장 차량으로 삼고 他法式의 違從
을 不許하는 動詞略字는 「一般動詞」와 「特殊動
詞」로 나누어져 있다. 「一般動詞」란 「간다. 안다.
본다」等의 動詞로서 그 머리글자인 「가 · 아 ·
보」字만을 動詞位置인 下線에 다 쓰으로서 각己의
動詞를 表記시키는 方法을 말하며 「特殊動
詞」란 使用頻度率이 가장 높은 「있다. 없다. 된다.
않으면 안된다」等 動詞의 머리글자가 本法式
速記文字로 보아서 半小圓이 붙거나 그렇지
않으면 重音 또는 반침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無數하게 變化되는 過程을 表示하
기 困難함으로 좀더 能率的으로 變化시키기 為해
쓰기 쉬운 全히 다른 글자를 갖다가 使用한 것을
말한다.

一般動詞거나 特殊動詞를 不問하고 本法式
에서는 모든 動詞를 크게 가로 「現在, 過去,
大過去, 未來, 規定, 意思表示, 可能, 推測, 否
定」型의 9個로 나누었고 다시 이것을 各型別로
세로 34個式의 語尾變化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한個의 動詞變化數는 $9 \times 34 = 306$ 이라는
實로 놀라운 數字를 提示해 준다. 그러나 아무리
龐大한 數字의 動詞變化라 할지라도 略字構
成이 至極히 簡單한 公式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無難히 記憶하는 同時に 손쉽게 活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參考로 「한다」動詞
의 例를 들어 그 變化過程의 一部
를 살펴본다.

東邦式

現 在	過 去	大 過 去	未 來	規 定
한 다	하였다	하였었다	할것이다	하는것이다
1 하며	1하였으며	1하였었으며	1할것이며	1하는것이며
2 하니	2하였으니	2하였었으니	2할것이니	2하는것이니
3 하나	3하였으나	3하였었으나	3할것이나	3하는것이나
4 하고	4하였고	4하였었고	4할것이고	4하는것이고
5 하는데	5하였는데	5하였었는데	5할것인데	5하는것인데
6 하지	6하였지	6하였었지	6할것이지	6하는것이지
(1)하면	(1)하였으면	(1)하였었으면	(1)할것이며	(1)하는것이면
(2)하니까	(2)하였으니까	(2)하였었으니까	(2)할것이니까	(2)하는것이니까
(3)하느냐	(3)하였느냐	(3)하였었느냐	(3)할것이냐	(3)하는것이냐
(4)한다고	(4)하였다고	(4)하였었다고	(4)할것이라는	(4)하는것이라고
(5)한다는데	(5)하였다는데	(5)하였었는데	(5)할것이라는	(5)하는것이라는
(6)하는지	(6)하였었는지	(6)하였었는지	(6)할것인지	(6)하는것인지

意思表示	可 能	否 定	推 测
하겠다	할수있다	할수없다	하였을것이다
1하겠다며	1할수있으며	1할수없으며	1하였을것이며
2겠다으니	2할수있으니	2할수없으니	2하였을것이니
3겠다으나	3할수있으나	3할수없으나	3하였을것이나
4겠다고	4할수있고	4할수없고	4하였을것이고
5겠다는데	5할수있는데	5할수없는데	5하였을것인데
6겠다는지	6할수있지	6할수없는지	6하였을것이지
(1)하겠다면	(1)할수있으면	(1)할수없으면	(1)하였을것이면
(2)겠다으니까	(2)할수있으니까	(2)할수없으니까	(2)하였을것이니까
(3)겠다느냐	(3)할수있느냐	(3)할수없느냐	(3)하였을것이냐
(4)겠다하고	(4)할수있하고	(4)할수없다고	(4)하였을것이라고
(5)겠다하는데	(5)할수있는데	(5)할수없는데	(5)하였을것이라는
(6)겠다는지	(6)할수있는지	(6)할수없는지	(6)하였을것인지

(以下省略)

上記外에도 우리 말 动詞에는 所謂 複合動詞라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等 數多한 複合動詞가 使用되나 上記 9個型의 變化만 完全把握하면 이력한 複合動詞는 自動的으로 解決된다. 即 「할 수 없었던 것이다」를 分解하면 「할 수 있다」의 可能型에다 「過去」(었다) 및 「規定」(는것이다)의 3者가 結合한 것에 不過하며 「할 수 없을 것이다」는 「할 수 없다」의 否定型에다 「未來」(ㄹ것이다)가 結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複合動詞의 數도相當數임으로 우리 말 动詞의 變化가 얼마나 惡大하여 또 까다라운 가를 端的으로 말해 주는 것으로 本法式에서 이 动詞略字構成에 全力を 기울여 어떠한 动詞의 變化라도 自由自在로 动詞略字를 驅使할 수 있는데 成功하여 이를 자랑으로 삼는理由가 여기에 있다.

B. 形容詞略字

形容詞略字는 우리 말을 漢字로 表現시키면 單字로 表現시킬 수 있다는데 着眼點을 두어 만들어진

것이다. 例를 들면 「아름답다」의 4字를 漢字의 「美」(미)의 한字로 表記하는 것으로 그 位置는 形容詞位置인 上線에다 쓴다. 形容詞 아닌 「우리나라」도 「我國」(아국)의 두字로 應用使用한다. 要는 上記와 같이 漢字로 利用할 수 있는 것은 모두 上線의 位置에다 쓴다.

C. 接續詞略符

接續詞略符는 한個의 句節과 句節을 連結시키는 接續詞를 略하는 것인데 이 接續詞中에는 반드시 한個의 助詞에만 붙여서 使用되는 接續詞들이 있다. 이것을 추리 가지고 그 固定된 助詞에다 각己相異한 位置에 한個의 點을 찍음으로서 그 接續詞를 略하는 方法이다.

D. 最長線略法

最長線略字는 主로 單語를 單位로 한 「名詞. 動詞」等에서 極히 頻度數가 높은 것을 모아 그 첫字의 길이를 特別히 길게 (約25mm~30mm)합으로서 그 單語를 略하는 略記法이며 記憶과 活用이

東邦式

容易함으로 政治, 經濟, 社會, 科學等 各分野의 專門術語를 廣範하게 適用시켜 使用한다.

F. 四字略符

四字略符란 四字로 構成된 「感慨無量」「一渴千里」「三尺童子」「虎視耽耽」等 常用되는 것을 끌라 첫 두자만 써주고 남아지 두자는 하나의 符號로써 略해버리는 方法을 말한다. (以上은 組織的略記法)

F. 助詞略符

本法式이 他法式에 比해 뚜렷한 差異를 갖는 异法中의 하나가 이 助詞略符이다. 本法式에서 的 모—는 助詞는 詞助詞가 붙는 앞 文字의 末尾에 極히 簡單化한 形의 略符를 連結시키게 되어 있음으로 他法式에 比해 한字乃至 두字의 努苦를 덜수 있는 長點이 있다.

G. 一般周知語省略法

比較의 길게 繼續된 語句로 누구나 一般的으로 잘 알려져있는 俗語, 聖賢, 哲人, 詩人等을의 読讀可能할 程度로 最初의 몇字만을 쓰고 남아지 글자를 全的으로 略하는 方法이다.

H. 中間略符

平均 4字以上 6,7字로된 語句中에서 使用頻度가 높은 것을 추려 가지고 그 語句의 첫字와 中間 글자 하나를 特殊한 連結方法으로 連結시켜서 남아지 글자들을 略하는 方法이다. 例하면 「이와 같이」「아시는 바와 같이」等에서 「이와 같이」의 「이」字와 한字 전너서 나오는 세번째의 「가」字를 特殊連結 시킴으로서 「와」字와 끝의 「이」字를 略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亦是 첫字인 「아」字와 中間 글자인 「바」字를 特殊連結 시킴으로서 「시·는·와·같·이」의 5字를 省略 시킨다.

I. 簡易略符

이 略符는 主로 各種會議 또는 座談會 같은 地에서 意外로 많이 使用되는 雜多한 말을 頻度率에 따라 基本文字와는 그 形體를 달리하는 極히 簡單化한 略符를 말하며 이 簡易略符의 活用量은 多大하다.

J. 數詞略字

百, 千, 萬, 億單位等의 固定된 "0"을 略하는 單位省略法, 또는 우리가 現在 日常 使用하고 있는 아라비아數字記錄方法으로는 到底히 表示 할 수 없는 2, 3 또는 2, 30, 3, 4百 等의 不定

數字를 다루는 方法, 其他 數字와 密接한 關聯을 맺고있는 「%」「割」等 여러가지 記號를 略하는 方法이다. (以上은 實利主義的略記法)

以上으로 本法式의 主要略法에 對하여 簡略하게 說明하였다.

그리고 說明할 것은 本法式에서는 文字의 쓰는 位置를 「上線·中線·下線」의 세 段階로 나누었다. 이것은 只今까지 數多하게 說明된 各樣各色의 모든 略字도 分析하고 보면 하나의 基本文字에 지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上記의 數多한 略字를 一般 basic文字와 同一位置에 排列시켜 쓰는다면 略字라는 特異한 存在를 나타낼 수 없게 됨으로 一般文字와 混同되지 않는 略字만을 基本文字와 同一位置에 쓰게 하고 基本文字로 된 形容詞略字는 一見하여 그것이 形容詞略字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 位置를 基本文字 連綴位置보다若干 높은 位置(約 5mm程度)에다 쓴다. 이것이 곧 上線이다.

下線이란 上線과 마찬가지로 基本文字로 된 動詞略字만을 쓰는 位置로서 元位置 보다 約 5mm 程度 내려서 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中線은 基本文字를 繼하는 元位置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圖解하면 아래와 같다.

上線……(形容詞略字 및 漢字應用略字位置)

中線(書線)——基本文字 및 各種略符位置

下線……(動詞略字位置)



〈本協會 認務部長〉

金基英

세종式

1. 沿革

세종法式은 金世鍾氏가 創案한 法式이다. 日本早稻田大學에 留學中이던 先生이 1938年 早稻田速記法式을 習得 中國 上海에 전너가 海林中學校에서 教鞭을 잡고 있던 중 當時 初創期에 있던 中國發音記號式速記에 早稻田法式을 詳介 貢獻한바 크며 現在 中國에서 使用되고 있는 快筆速記을 習得 祖國先復과 더불어 踏國日本 早稻田式과 中國 快筆速記을 混合取捨하여 1950年 2月 3日 創案發表해 낸 것이 세종法式이다.

先生은 비단 速記뿐만 아니라 한글 筆記體 改善에도 뜻을 둘어 研究했던 바 1955年 10月項 「한글 훈림체法」을 都下 各新聞에 發表하여 뜻있는 분들의 注目을 끌기도 하였다.

또한 先生은 1957年 2月 暗記式 珠算法을 發表한바도 있다.

先生은 젊은이 뜻지 않은 多方面의 精力家로서 全國 坊坊曲曲을 巡迴하며 上記創案을 發表하여 각界에 普及을 試圖하였던 바 1958年에는 當時 文敎部長官과 한글 學會의 感謝狀을 받은바도 있다.

金世鍾先生은 1960年 没하셨다.

2. 法式內容

세종法式은 先生 生前에 네차례에 걸쳐 改良된 것으로 이 法式의 特色은 母音制用語이다. 即 語頭는 基本文字로 쓰되 語頭 다음에 나오는 音은 받침 方向으로 母音化시켜 速力を 내게 하는 法式이다. 이 法式은 ①基本文字 ②받침 ③法音制用法 ④略法 ⑤辭法 등 五段階로 나누어져 上記한 바와 같아 三段階인 母音制用法에 比重을 두고 있다. 어느 法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法式도 고비가 있다. 이 고비만 넘기면 終着驛이 보인다. 그 고비란 母音制用法이다. 이 母音制用法이란 한 例를 들자면 <金剛山>할 때 語頭인 <금>은 그대로 쓰되 다음에 나오는 <강산>은 <금>이라는 <口>方向으로 <강산>을 각各 母音으로 고쳐 <양안>이라 불여 쓰게 될으로 結局 速記文字로는 <금양안>이라고 쓴다는 말

韓國式

韓國(舊朝鮮)速記는 實用速記일 뿐만 아니라 朝鮮語學會 講演을 基礎로 한 最初의 우리말 速記로서 1946年 2月 當時 漢城日報 編輯局長으로 活躍하고 계시던 朴松先生에 의해 同紙에 詳介됨으로 因해 一般에 公開 되었다.

朴松先生의 持論인 普通 連筆速度에 口述速度를 빠짐 없이 收錄하는 것이 速記라는 主張은 實用速記로서의 嘴矢를 力한 것으로 誇張된 主張은 아니다. 또 우리말 動詞 및 形容詞의 끝바꿈을 合理的으로 消化한 點이다. 名詞에 있어 子音省略法 異行間의 同母音의 省略은 韓國速記의 차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字間의 空間도 一字로 看做하여 自由奔忙한 連筆을 다하게 한 點은 實務에 從事하면 할수록 그 妙를 티득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또 速記基本子字와 우리말 配列에 있어 구차한 規定이 없고 屢修者の 素質과 嗜好에 따라 配列를 自由로이 變更을 許容한 點은 韓國速記가 지닌 커다란 차량이다.

韓國速記의 源流를 따지면 빗트랜式 速記亞流를 끌어왔고 日本 中根速記 早稻田式速記를 본 받은 痕迹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陰陽五行의 太極原理를 適用한 點은 當時 매우 놀라운 存在이었음을 알수 있다.

1945年末 서울驛前 太平旅館에서 第一期生(當時 4名應募)을 養成하기 始作하여 6·25動亂前까지 18期生을 輩出하였으나 朝鮮速記의 傳統을 이어온 速記士는 現在 손꼽을 程度로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一家를 이루어 言論機關 軍機關 地方自治團體 議會機關等에서 重鎮的 活躍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請託速記面에서 出版業界에서 社會에서 確固한 基盤을 닦고 있다.

6·25前까지 過渡期의 朝鮮速記의 活動은 民主黨創黨 文總創立 第1回地方長官會議 文敎行政의 各

이다. 그러므로 이 法式은 反文이 어렵다. 따라서 이 法式을 하는 速記士는 많은 分野의 常識을 要求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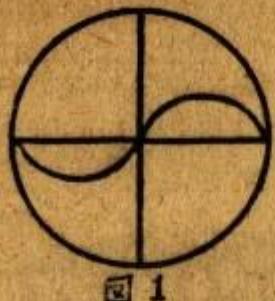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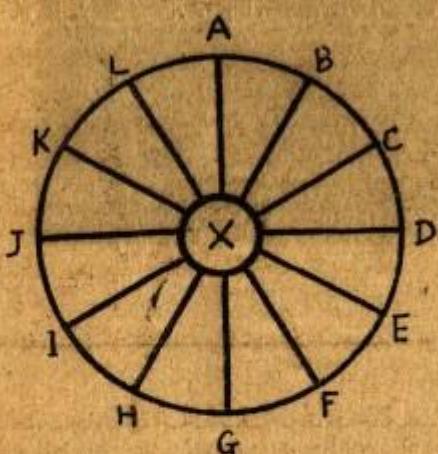


図 1



3. 基本文字

簡單히 基本文字만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이 法式은 유두 ①長 ②角 ③圓의 正確을 要求하고 있으며 3「미리」 6「미리」 9「미리」 12「미리」로 區別하고 있다. 上記한바와 같이 이 法式은 母音利用法이 主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基本文字 第I形式에서 母音 <아>行을 바로 떠어 떠어 <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타·파·하>로 構成되어 있다.

即 字形構造圖表에서 본바와 같이

<가行>은	X-D	<나行>은	H-F
<다行>은	L-B	<라行>은	A-C
<마行>은	J-H	<마行>은	A-E
<사行>은	D-F	<사行>은	X-C
<차行>은	C-E	<카行>은	B-X
<타行>은	K-A	<파行>은	L-J
<하行>은	K-I	字形을 構造하고 있다.	

또한 基本文字中 特別 使用率이 높은 <교·거·며·며·교·되·재·예·매·도>들은 基本文字第I形式 字形에 구애됨이 없이 바로 이 特殊字形으로 하여 使用하고 있다.

種會議를 비롯하여 初創期의 各文化 社會團體에 參與하여 速記文化의 開花期의 役軍으로서 多大한 活躍을 하였다.

6·25動亂後 休戰이 되어 朝鮮速記의 再發足이 同人間에 論議되었으나 外的興件이 不許하여 此日 彼日하다가 世宗路教育會館에서 韓國速記學館이 申鉉富氏에 依해 開館되었으나 朝鮮速記에서는 이에 參與를 拒否하여 結局 申鉉富氏 單獨의 經營으로 異質의인 朝鮮速記 莳修者가 豢出되었다.

그後 同速記學教材의 大幅의in 修正이 加해져서 十三期生부터는 逐차적으로 本格의in 速記士가 齊成되었으며 그後 朝鮮速記 1.2.3期生이 主動이 되어 韓國聯合速記學院(現中央日報社屋址)을 設立하여 軍用速記와 法院速記를 研究普及함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忠南北道에서는 忠淸速記文化普及會를 創立하여 大大的in 速記普及을 하게 되었다. 이는 實로 우리나라 速記史에 1「까지」를 裝飾하는 劑期의in 일이었으나 5·16革命前後하여 文化活動의 全體의in 沈滯에 휘말려 結實을 보지 못한채 解散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 우리 韓國速記의 活動은 다시 活氣를 띠어 農協의 創立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의 創立 서울 特別市議會의 創立 地方議會의 創立等 戰後 韓國 社會團體再建에 活潑한 參與를 하였다.

國會 速記課에는 現在 二人(申昌秀 柳慶淑)이 參與하고 있을 뿐이나 養成機關이 없는 韓國速記로서는 國會進出의 展望을 아직 確言할 수 없는段階에 있다.

韓國(舊朝鮮)速記學의 體系를 略說하면 韓國速記의 著述로는 朴松先生著「朝鮮速記」가 있으며 그後 門下生에 依해 增補된 南相天著「速記」(學生教科用으로 널리 普及되고 있음)가 있고 申鉉富著「速記學」이 있으며 崔龍植著「韓國速記學」全十一卷이 있다.

이 「韓國速記學」은 朝鮮速記의 體系를 綱羅한 學術書로 應用編이 學生速記 秘書速記 編輯記者用速記 軍用速記 法院速記 調會速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特色으로 되어 있다.

英國政府招請으로 渡英後 歸國하는 會長을 出迎한 本協會任員들



本協會研究部長
崔龍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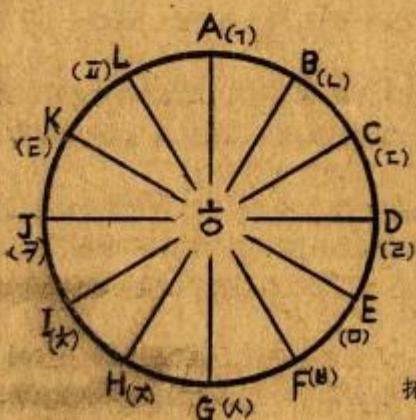
速記文字의 基本形을 잠간 略說하면 圖 1 에서 分出되는 各直線 斜線 反圓形이 總基本 文字이며 우리말 子音을 表示하고 母音은 이 基本線의 長短과 位置法에 依하여 確定된다.

變則的 活用이 적어의 우기 쉽고 익히기 쉬우며 速記의 生命인 語文이 正確하고 바른 長點이 있다.

過去 韓國 速記의 教育例를 보면 修業期間이 三個月되면 本協會가 定하고 있는 5級(十分間에 1,500字乃至 1,800字記錄)은 無難히 獲得하며 6個月을 修業하면 3級乃至2級은 거의 90「프로」以上 獲得하며 一級은 8個月 履修로 一般人 누구나가 習得 할 수 있다. 韓國 速記

의 將來 目標를 略說하면 當面 焦眉의 急은 養成 機關의 設置이나 運營資金의 調達難으로 當分間 實現의 展望은 없다 따라서 既存 履修者를 中心으로 한 研究活動과 需要處 開拓에 總力を 기울릴 方針이다 흥미로 있는 朝鮮速記 韓國速記 韓國聯合速記의 各 履修者の 結果도 竅然한 此際에 廣範圍한 事業活動은 할 수 있으나 各 門下生의 橫的인 連結을 取하여 暫定的인 事業을 展開할 計劃에 있다. 그 目標는 于先 우리의 出版物을 갖는 일, 速記事務所를 開設하는 일, 現 大韓速記協會의 支援을 얻어 需要處를 開拓하는 일 등으로 되어 있다.

以上 간단히 韓國速記法式을 紹介하며 門下生들의 맑은 協調와 結實을 바라마지 않는다.



各法式速記例文比較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發展의 機會가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機會는 우리의
피땀과 온 國民의 情誠으로 만든 더없이 高
貴한, 實로 마지막 機會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機會마저 놓치고 만다면 우리
에게 自主自立의 繁榮된 祖國을 建設할 機
會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67年度 大統領年頭敘書에서 摘取)

(原 文)

(高麗式)

(高麗式)

(東邦式)

(世宗式)

(韓國式)

가나다順

速記學綱目(試案)



K 研究生

“速記” 더욱이 表音에서 現代의 表語速記를 바라보고 前進하는 速記學界는 同時多打鍵의 機械速記까지도 實用한지 이미 20餘年 聲音學者와 電子學者들은 錄音이 될뿐더러 線樣조차 視覺에 남는 機械文字考案에 血眼이 되어 있는 現況속에서도 速記學이란 무엇이며 그 隣接學問으로는 무엇이 動員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직도 世界速記界의 課題로 되어 있는 것이다. 아래에 各 速記學者들이 그려낸 速記學의 體系를 2,3 総合하여 보기로 하고 速記法을 構想實用 하는 各自는 이 거울에 비추어 그 未到點을 向하여 突進할것이고 速記學의 各章, 節, 項, 目을 滿足시키는 만큼의 成果를 겸우기 바란다.

1) 約30年前에 構成된 速記學要綱은 아래와 같았다.

I. 速記概論

1. 技術論, 速記의 文化技術로서의 價值와 그 機能
2. 各 論
 - ② 速記的 言語學
 - ③ 速記的 聲音學
 - ④ 速記的 語法의 發見과 그 組織方式

② 어려 統計의 作成

II. 靜的速記論

1. 世界的 速記發達史
2. 韓國速記의 發達史
3. 比較論
4. 文字 및 書記學
5. 速記文字 및 符號論究

III. 動的速記學

1. 表音速記論
2. 記錄速度統計
3. 記線速度論

IV. 補助學

1. 速記心理學
2. 速記生理學
3. 速記美學
4. 速記教授論
5. 速記文獻論

以上 分論外에 50년의 沿革을 지닌 日本 速記界는 學問으로의 길을 트기為한 試圖로서 早稻田大內, 國語研究所 武部良明氏에 依하여 다음과 같은 크게 2章으로

① 哲學으로서의 速記 ② 科學으로서의 速記로 나누고 여기에 機械速記論까지 덧붙어 體系 있는 分析總合을 試圖한바 있는데 그 要目만 紹介하면 아래의 一覽表와 같다.

哲學部門	速記本質論=對象, 目的, 定義, 體系, 方法, 基礎	
	活動本質論=方式, 技術, 活動, 態度, 價值	
科學部門	方式論	一般理論 { 言語關係=長音, 語彙, 文法, 頻度 { 劇線關係=劇素, 連續, 書記, 識別
	技術論	方式理論 { 體系關係=記號, 法則, 原理, 構想 { 歷史關係=成長, 創案, 改良, 發成
	文化史=速記史	素材理論 { 速字關係=靜態, 單群, 記線, { 國語關係=理解, 表現, 聽取, 反文
		動力理論 { 知能關係=技能, 適性, 訓練, 指導 { 作業關係=心理, 生理, 誤譯, 疲勞
		文化關係=資料, 年表, 利用, 文化 { 實務關係=制度, 機關, 用具, 實務

陶淵明의 田園詩



(前略) 여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인생관과 부정적인 인생관의 융합으로써 활동과 휴식과의 사이, 또 무익한 번망의 세계로 몰입하려고 하는 것과 부담이 많은 생활에서 완전히 도피한다는 것과의 사이에 잘 조화된 「중용」의 철학을 체계 세울 수 있다는 것과, 세상의 모든 철학의 노력으로서 우리들이 발견 할수 있었던 것으로는 이것이 가장 타당하고 자장 행복한 지상의 인간생활의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두개의 물리는 인생관의 융합이 조화된 인생 모론 교양이라든가 교육이란 것의 중국적인 목적인 것의 조화된 인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이 조화된 인격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생의 즐거움과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인생의 즐거움과 사랑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나에게는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우화로써 이야기하든가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실지로 살아 있는 실화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일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나의머리에 떠 오르는 것은 중국인이 교양이 나은 가장 위대한 시인이고 가장 잘 조화된 인격자가 도연명(陶淵明)인 것이다. 도연명이야말로 중국의 문학사상에서 가장 완전하게 조화되고 가장 원만한 인격자라고 해도 이에 반대하는 자는 중국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문호 임어당(林語堂)의 문장의 일절이다.

고래로 정평있는 중국시인의 시가 현대의 한국인에게는 당나라 사람들의 잠고래 같이 생각된다면은 그것은 꺽 슬픈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시는 중국어로서 읽어야 하겠지만 이것을 우리말로 읽어도 시의 뜻은 알 수 있으며

李 明 奎

작자의 기분도 호흡할수는 있다. 그리고 중국시인의 감정은 같은 동양인인 우리들의 공명과 그 동양적인 흥취에 가득 차 있는 시상은 우리들의 취미에 맞는 것이다. 하물며 중국시는 중국문학의 미화(美花)이고 미옥(美玉)인 동시에 중국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문예이기 때문에 그 시를 통해서 중국의 진수(眞髓)라고도 할 수 있는 것에 접촉할 수가 있다. 현대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의 자귀(字句)의 천작연구가 아니고 중국시인의 감정이나 생활분위기를 알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마음이라고 할만한 것을 발견하는데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서는 도연명 이배백 두보(杜甫) 백거이(白居易)가 특히 유명하지만 여기에 소개하고 싶은것은 도연명의 천원시(田園詩)이다.

도연명이 이세상을 떠난지 1540년이 되지만 그의 시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천원의 사람이었던 그의 시에는 천원을 읊은 것이 많았고 그 작품은 후세에 걸쳐 사람들의 애송을 받았다. 지금 그의 천원시에 대해서 약간의 고찰을 시도하는 것은 도연명을 아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자연을 읊은 시는 산수시(山水詩)와 천원시로 나눌 수 있다. 그와 같은 시대의 시인으로서 사영운(謝靈運)은 산수시에 능했고 이와 반대로 도연명은 많은 천원시를 읊었다. 천원시는 산수의 자연미를 서술하는 산수시와는 달리 천원의 자연을 묘사할 뿐만이 아니라 인적(人的)으로 천원의 정서를 풍기는 시이다. 천원은 자연미 한 가지만이 아니고 그곳에는 인간의 실용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있는 이상 천원시에는 실용과 인사(人事)가 얹겨 있어야만 한다. 천원시는 천원의 자연미와 명화미를 구가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천원에는 미(美)만이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추(醜)와 우울이 감추어져 있다. 도연명은 생활고의 체험이 있느니만큼 그가 읊은 천원의 노래(시)는 시정시인의 공상적

인 그것과는 달랐으며 농민생활의 진실을 묘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시에 대하면 마치 “밀매”의 그림에 대하는 심경이 생기는 것도 양자(兩者)의 생활분위기가 닮아 있기 때문이다. 도연명은 전원의 우울을 서술하는 것도 감히 사양하지 않았지만 그 태도는 고의로 전원생활의 이면을 폭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전실하고 솔직하게 그것을 묘사하는데 끌었다는 것에 묘미가 있는 것이다. 일개의 농민으로서 역경(力耕)에 정력耗费하고 그의 시에는 다분히 유교미(儒教味)다 떨어 담은 궁경정신(躬耕精神)이 퍼져있지만 그중에서 티끌만큼의 읊을 활용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의 달관된 마음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기반없이 평한다면 그가 고조하는 역경(力耕)의 시에는 유교적인 교훈의 날새가 풍기며 문학적인 작품으로서 보는 전원시로서는 다분히 딱딱한 맛을 가했지만 그것도 그가 유교적인 정신으로서 농민생활로 시종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그는

하루에 두번 새벽은 없으리니
젊음은 다시 못 오리
세월이 사람 기다리지 못하리니
어찌 공부할 때를 놓칠소냐

라는 유명한 귀절을 남긴 시인이었다.

자연을 즐긴 그는 자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상을 시도 하였는가? 일찌기 바이런은 「내 적지 않게 인간을 사랑한 것은 자연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도연명도 역시 보다 많은 정열로서 인간보다도 자연을 사랑한 시인이었다.

자연에는 어찌한 때에도 허위가 없다. 그러나 자연만큼 천변만화하여 시인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인간사회에서 실망한 시인들도 자연에 대해서는 만강(滿腔)의 환희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니 하물며 중국문인의 데다수가 관계생활의 낙오자였으니 인사에 실망한 그들이 산수자연에 위로를 받은 바는 큰 것이었다. 그는 어떠한 자연을 구하였다?

그가 바라보는 자연은 장대한 자연도 아니고 도험과 기절(險怪奇絕)한 자연도 아니었으며 실로 한미(閑美)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것, 한정(閑靜)하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자연이었다. 만일 그의

榆柳蔭後圖

桃李羅堂前

暖暖遠人村

依依墟黑煙

버들은 후원을 들려싸고

도리(桃李)는 앞뜰에 즐비하네

멀리 바라보이는 마을은 흐리고

인가는 연기에 감쌓이었네

狗吠深巷中

鶴鳴桑樹巔

戶庭無塵雜

虚室有餘閒

개는 깊은 골목에서 짖고

닭은 뽕나무 위에서 우네

뜰에는 먼지 하나 없고

빈 방에는 한가로움 만이 있네

하고 읊은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여기에 한가하고 고요한 전원의 자연미와 기분으로서의 평화스러운 아름다움이 감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의 이상사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도화원기」(桃花源記)에는 그 선경(仙境)의 자연미를 「남여려지(언덕)」를 들려싸기 수 백보, 속에는 잡목은 없고 꽃다운 풀의 성성함과 아름다움은 낙영이 빈분한 것 같더라」고 했다.

이와 같은 자연을 즐긴 그는 자연의 한 경취로서의 풍우(風雨)를 묘사함에 있어서도 역시 그 경지를 벼리지 않은 것처럼 시에서도 그가 읊은 바람은 부드러운 남풍(南風)이고 비는 한가한 보슬비인 것이 많다.

동쪽 달 밑의 국화를 캐고

늠늠히 낭산을 바라 보니

산기(山氣)와 일식(日夕)은 아름답고

날새들은 쌍쌍이 돌아오네

여기에 친정한 듯이 있어

한마디 할려고 하였드니

어느듯 할 말을 잊었네

정온(靜隱)한 자연 속에서 만 감지 할 수 있는 심경이다.

이와 같이 그가 구가하는 자연은 한가하고 조용한 자연미이며 그곳에는 만상(萬象)의 총화를 얻은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고 모든것이 청초(清楚)한 것이다. 따라서 구가하는 곳도 만상이 청진하고 기상이 충만한 아침이라든가 모든 추함이 감추어지고 다시 고요하여지며 한가하여 칠

려고 하는 저녁때가 시에서 자연미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 많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읊은 자연의 태반이 한가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연도 중국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선인(仙人) 취미에 가득찬 그런것이 아니고 사양의 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자기의 철학적인 사색에 뿐 밖고 읊은 명상적인 그것도 아니다. 원래 중국시인은 자기의 심정을 자연물에 달기는 일은 있지만 자연을 자기와 대립 시켜서 이것을 바라보는 일은 적다. 그들은 대번에 자연속으로 자기를 투입시킨 후에 이것을 바라보았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경은 자연과 융합되어 있다. 유종원(柳宗元)이 말한 「조물주와 명합(冥合) 한다」는 경지도 이와 같은 태도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들은 공리적으로는 자연을 보지 않는다. 봄이 좋고 겨울이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대번에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속으로 들어가고 천지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국시인은 이 경지를 즐기는 것이다. 도연명도 역시 자연을 바라봄에 있어서 흔히 이와 같은 태도였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중국시인은 순로서 그 정도를 알맞게 하는 수가 많았다. 그들의 신인 대다수는 애주가이고 또 자연의 품속에 안겨서 애음하는 것을 즐겼던 것이다. 자연의 품속 내지는 자연을 배경으로서 좋아하는 술의 애용은 그들로 하여금 자연과 빈틈없이 융화시키는 기연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이 이미 소박한 것처럼 그 음주의 경지도 또 낙천적이다. 자연속에서 담담한 이술의 애호에는 염세의 거구(舉句)에 나타난 것 뿐은 어두운 그림자는 없고 서양의 술의 시가 그야말로 인간생활의 고뇌에서 생기고 그 곳에는 심각 퇴폐함이 뒤범벅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또 서양에서는 인간을 떠나서 술을 마실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중국시인이 인간을 잊고서 자연속에서 술을 마신다는 태도는 그 얼마나 청초하면 서도 물아직(沒我的)이고 그 실정은 담담한 뿐이니. 그리고 이 물아의 경지야 말로 그들로 우여금 마음이 내키는데로 자연과 명합시킨 것이다.

(中國文學研究家)

祝 創 刊

文化放送株式會社	東洋放送局	基 督 教 放送局	東 亞 放 送 局	서울 國 際 放送局	서울 텔레비죤放送局	서울 中央放送局
社長 曹會出	局長 韓洙學	局長 金相基	局長 甘義道	局長 李永上	局長 金振英	局長 金在寅



速記關係冊子一覽



(外國은 言語가나斗頃, 國內는 著者가나斗頃)

書籍名	言語別	著者	發行年度	備考
朝鮮語速記法詳解	韓國語	姜駿達	1935年	
速記法要覽(大學教材)	"	"	1959	
" (")	"	"	1966	
速記講義錄(6卷)	"	金天漢	1957	
速記教本	"	南相天	1955	
簡化速記	"	朴喜善	1957	
速記學辭典	"	申鉉富	1957	
朝鮮速記術講義	"	嚴正友	1948	
解放速記	"	李東根	1948	
速記學講義	"	"	1952	
速記學講義錄	"	"	1954	
逸波式速記學概論	"	張基萬	1960	
스트리트速記法	獨逸語	Winkler	1966	
Gregg Shothaud	語英	Gregg	1929	
Gregg 原理教本	"	"	1955	
機械速記의 字盤의 理論	"	Stenotipe社	1950	
速記史	"	Leslie	1963	
獨佛語 速記法	佛語	Lang Lege	1965	
에스語 速記法	"	Collee	1932	
記音 速記法	英語	Pitman	1837	
英語 速記法	"	Lang Lege	1966	
新式日本語速記術	日本語	Ganddlet	1890	
新式速記術獨習	"	熊崎健一郎	1914	
超中根式速記法	"	森卓明	1931	
速記講座	"	國字常弘	1932	
漢字音と略字法則研究	"	安田勝藏	1937	
獨習學生速記	"	武部良明	1941	
速記 type 教本	"	日本速記研究會	1953	
日本速記概說 上·下	"	武部良明	1951	
衆議院式速記法	"	西來路秀男	1955	
速記完全獨習	"	田嶋源	1961	
日本速記80年史	"	日本速記研究會	1962	
早稻田速記研究	"	川口晃玉	1965	
王怡速記學	中國語	汪怡	1961	
中華速記	"	許師慎	1963	

大韓速記協會定款

第1章 總 則

第1條 本會의 名稱은 大韓速記協會라 稱한다

第2條 本會는 速記人의 總集結體이다

第3條 本會는 本部를 서울에 두고 必要한 地域에 支部
을 둘 수 있다

第4條 本會의 目的은

1. 速記學・術의 研究發展
2. 速記人의 資質向上
3. 速記人의 權益擁護及 地位向上
4. 速記人의 相互協力及 親睦을 圖謀함에 있다.

第2章 會 員

第5條 本會의 會員은 下의 3種으로 構成한다

1. 名譽會員
2. 正會員
3. 庫會員

第6條 正會員은 本會會規에 依한 資格審查에 合格된者
로 한다

本會에 加入된 速記法式을 習得한 者나 習得中에
있는 者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增會員이 될 수 있다.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理解하고 物心兩面으로
後援하는 人士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名譽會員으로
推戴할 수 있다.

資格審查에 關한 事項은 會規로서 定한다.

第7條 正會員은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會員으
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權利를 平等하게 行使
한다

第8條 會員은 定款」 또는 總會議決事項의 尊守와 會費
를 納付한 義務를 진다.

第3章 機 關

第9條 本會에 下의 機關을 둔다.

1. 總 會
2. 理事會

第10條 總會는 正會員만으로 構成한다.

第11條 總會는 每年 4月中에 會長이 召集한다

但 正會員 3分之 1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王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臨時總會를 召集한다.

前項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長은 그 要求
한 날로부터 1個月以內에 臨時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12條 總會는 本會의 最高機關으로서 그 機能은 下에
과 같다

1. 名譽會員의 推戴
2. 指導委員의 推戴
3. 會長과 副會長의 選出
4. 理事 및 監事의 選出
5. 豈算 및 決算의 承認
6. 會務에 關한 報告處理
7. 定款의 改正

第13條 理事會는 加入法式에서 3人以內로 選出된 理事
로서 構成하며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但 總會後 最初의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한다

第14條 理事會는 本會의 執行機關으로서 그 機能은 下
과 같다

1. 理事長 所屬各部長 및 各支部長의 選出
2. 顧問 및 名譽會員의 推戴
3. 會務一切의 執行決議
4. 各部에서 提出하는 會務報告의 處理와 總會에 對
한 報告案 其他 議案의 決定
5. 定款改定案의 提出
6. 會規의 制定 및 改定

但 總會의 事後 承認을 얻어야 한다

7. 會員加入承認의 決定

第15條 理事會에 下의 部署를 둔다

1. 總務部
2. 研究部
3. 宣傳部
4. 事業部
5. 資格審查委員會

第16條 各部의 事務分擔은 下과 같다

- 一. 總務部
 1. 印章, 文書, 什器, 其他 財產管理에 關한 事項
 2. 庶務, 會計, 連絡에 關한 事項
 3. 組織에 關한 事項
 4. 他部에 所屬되지 않은 事項
- 二. 研究部
 1. 會務調查 및 統計資料蒐集과 研究에 關한 事項
 2. 速記學 術研究에 關한 事項
- 三. 宣傳部
 1. 宣傳 出版에 關한 事項
- 四. 事業部
 1. 速記學 術普及에 關한 事項
 2. 會員就業斡旋 및 福利增進에 關한 事項

3. 本會發展을 爲한事業의 實踐事項。

五. 資格審查 委員會

1. 會員懲戒 및 資格審查에 關한 事項

.. 遠記士資格檢定에 關한 事項

但 各部의 業務分擔에 關하여 相互異議가 生할
경우에는 理事會가 決定한다.

第17條 本會의 모든 會議는 在籍會員의 過半數出席으
로 成立되며 出席員數의 過半數로서 議決한다

但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司會者が 決定한다.

第18條 地方會員은 總會出席을 他會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但 前項의 委任은 成員을 爲한 手續以外의 效力
은 發生되지 않는다.

第4章 任 員

第19條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 1人
2. 顧 問 若干名
3. 指導委員 若干名
4. 會 長 1人
5. 副 會 長 2人
6. 理 事 長 1人
7. 理 事 若干名
8. 監 事 3人

第20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를 統轄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會
長이 指名하는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理事長과 名部의 部長 및 資格審查委員長은 理事
中에서 選定하여 所管事務를 擔當한다.

監事는 總會에 提出한 決算報告를 監查한다

第21條 本會의 發展을 爲하여 諮問役으로 顧問을 두고
學術指導를 爲하여 指導委員을 둔다

第22條 各種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連任할 수 있다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の 残餘期間으로
한다

第5章 財 政

第23條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入會金 會費 및 其他收
入金으로 完當한다

第24條 入會金과 會費에 關한 事項은 會規로서 定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일부터翌年 3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26條 本會의 會計監査는 年1回를 原則으로 하되 會
規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時는 隨時로 監
査를 行할 수 있다

第6章 會員에 關한 實罰

第27條 本會의 目的와 事業을 爲하여 特別한 功勞가
있다고 認定되는 會員 및 本會에 有功한 人士는
總會의 決議로서 그 功勞에 相應되는 表彰을 할
수 있다

第28條 定款 또는 會規에 違反하여 會員으로서의 義務
를 履行치 않거나 本會의 櫛面을 損傷하는 所行
을 한 會員은 理事會의 議決로서 下記의 懲戒에 處한다

1. 謹 賞
2. 停 權
3. 除 名

但 除名處分은 總會의 事後承認을 얻어야 한다

附 則

第29條 이 定款은 創立總會에서 議決함으로서 그 效力
이 發生한다

第30條 創立總會에서 報告接受한 者는 本會 最初의 正
會員이 된다

大韓速記協會
任員名單

名譽會長	李 孝 祥	國會議長
名譽顧問	金 鍾 誠	共和黨議長
顧 問	裴 泳 鎭	國會事務總長
	李 鎭 賢	國會專門委員
	權 孝 優	國會議事局長
指導委員	張 南 基	黃 重 秀
	相 天 銘	
名譽會員	李 強 鍾 咏	金 震 照
	李 韓 澤	
會 長	李 威 翟	議 員
副 會 長	金 宗 焕	李 東 根
理 事 長	金 基 植	
總務部長	崔 龍 植	
研究部長	宋 植 龍	
宣傳部長	宋 植 龍	
事業部長	金 源 尤	
資格審查委員長	金 奉 永	
理 事	郭 永 秀	宋 基 炳
	申 永 秀	尹 崇 高
	李 賢 永	李 東 淳
	林 鎭 永	崔 龍 鍾
監 事	金 永 善	朴 夏 烈
	全 國 守	

會務日誌

1966. 7. 26. 創立準備委員會開催，委員長이 姜駿遠
氏選出 小委員會構成 및 部署決定
7. 30. 第2次小委員會開催，定款草李審議
8. 6. 創立準備委員會2次會議開催 發起人選定基準採擇定款採擇，
8. 16. 創立準備委員會三次會議開催 發起人(法式別) 및 會員資格者，名單接受
8. 20. 發起人大會開催 定款修正採擇，會員資格審查委員會構成、創立總會準備、入會金決定
8. 24. 創立總會準備委員會部署分擔 準備委員長이 韓奉永氏選出
9. 10. 準備委員會開催 創立趣旨文法式創案者 및 功勞者表彰議決
10. 13. 會長候補이 李源万議員決定，事業計劃書草案採擇
11. 14. 準備委員會 開催，創立總會日字 및 摄所決定
11. 28. 準備委員會 開催 琢算案・創立總會會頤・對議案件・定款等 最終案採擇
12. 10. 新聞會館에서 大韓速記協會 創立總會開催(15時50分)
- ①臨時議長이 韓奉永氏選出
 - ②國會事業總長祝辭
 - ③創立趣旨文 採擇
 - ④定款採擇
 - ⑤名譽會長推戴
 - ⑥指導委員推戴
1966. 12. 10. 一次理事會開催 委員長司會 理事長選出
12. 12. 二次理事會開催，部署決定
12. 17. 三次 ··· 基金確立을 為社協賛運動採擇
12. 21. 四次 ··· 會規制定
1967. 1. 7. 五次 ··· 資格審查委員會構成
1. 21. 六次理事會開催，理事會權限全任員會議(部長級)及 委任
1. 23. 一次任員會議開催，4月總會까지의 事業計劃討議決定
1. 28. 二次任員會議開催 公開講座準備
2. 4. 三次任員會議開催 顧問名譽會員推戴
2. 11. 四次任員會議開催
- ①協賛結果入金毛 180,000—預金
 - ②協會登錄問題報告
 - ③會誌發刊中間報告
3. 6. 五次 任員會議 開催
- ①會誌發刊費選定，內定檢討
3. 11. 七次理事會開催
- ①任員會議決議事項追認
 - ②資格審查規程草案提出討議
3. 14. 六次任員會議開催，資格審查規程通過

祝創刊

經濟通信社	社長 蔡中현	東洋通信社	社長 金成坤	同和通信社	社長 鄭載護	貿易通信社	社長 李活	時事通信社	社長 金희종	合同通信社	社長 李源京
-------	-----------	-------	-----------	-------	-----------	-------	----------	-------	-----------	-------	-----------

編 輯
後 記

◎ 眞理의 울음소리가 오랜 陣痛 끝에 우리 귀에 들려 온지가 어오래 같은데도, 藏月이 如流水라는 옛 사람의 말대로 於焉間 5箇月이라는 時間이 헛렸다. 이렇다 할 두었한 索續을 내세우기도 어렵지만 幹部一同은 눈부신 活躍을 繼續해 왔다.

남모르는 劳苦는 덮어 두고라도 于先 表면에 대세를 수 있는 것이 「速記文化」라고 命名한 이冊子다.

이것이 눈의 器官을 通하여 社會와 協會, 幹部와 會員사이를 더욱 短縮시키고 情과 熱을 한군데 묶는 役割을 맡게 되는 意味에서 自祝하여 마치 諸君이다.

『언제 이만한 것이나마 우리 速記社會에 있었느냐』고...

◎ 이번號에는 法院速記問題을 特輯으로 다루어 볼 만한 것이 되겠고, 專門的인 論說이 先輩와 同僚들의 손으로 珠玉篇을 이루고 있다.

各法式의 詳介도 무게 있는 資料가 될 것이며 이번號에 따른 法式은 다음번에 크게 다루게 되기를 꼭 期約한다.

◎ 입에 맞는 떡이 없다더니 이만한 것이나마 世上에 내놓는데는 적지아니 障路도 있었다는 것을告

白해 둔다. 아직 갖날아기니 놀러보아야 되겠고 기워야 되겠다. 子息은 내 子息이 예쁘다하니 速記人の 速記誌가 예뻐야 될 것이다.

◎ 국은 비가 풋샘을 부르고 山野의 사삭이 자못 물먹어 오르는 時節이라면 閑暇롭게 들리지만 이땅의 요지 음은 選舉로 奔走한 나날이 繼續되고 있다.

깨끗한 한표가 墓上의 善良을 뽑을 것이며 善良들의 獅子吼가 Short-hand의 손을 더욱 바쁘게 할 것을 생각하면 「速記文化」의 第 2 號가 여기서 움터오를 것이豫想된다.

◎ 歷史는 봄에 이루어진다! 4·19가 봄에 있었고 5·16이 봄에 있었고 選舉도 봄에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보니 「速記文化」가 봄에 이루어진 것도 偶然이 아닌상 같다.

會員 여러분의 自愛가 있기를 빈다. 봄가을이나 여름 겨울이 우리에게 무슨 感傷을 달리 주리오만 봄에는 또한 健康의 危機인 때문에 間安으로 엊쯤은 말이니 責望하지 마시라.

◎ 끝으로 높으신 분들의 黃重한 글과 激勵의 人事 말씀을 주신에 對해 敬意를 表하고 이것으로 後記를 代身한다. (ㄱ·ㄴ·ㄷ一同)

速記文化 創刊號 (非賣品)

1967年 5月 1日 發行

發行 大韓速記協會

創 祝 刊

大韓石炭公社

總裁職務代理 李 祥 圭

大韓石油公社

社長 朴 元 錫

韓國貨物自動車株式會社

社長 鄭 致 甲

